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제11권
제1호
2025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 제1호 ■ 2025

■ 기획논문 <미디어와 인격권> 10년 특집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격권 보호의 쟁점

1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43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 초상권을 중심으로 -

노현숙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KU글로벌혁신대학 조교수)

■ 연구논문

77 언론인의 번아웃과 대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구문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박사)

유영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29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이수중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 부록

172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184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191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 Contents

- 1 **A Decade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Trends and Academic Impact -
Kim, Minjeong
Ph.D.,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43 **Examining Personal Rights Violations Due to Deepfake Technology**
- A Focus on Portrait Rights -
Roh, Hyeon Sook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KU Glocal Innovation,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 77 **Exploring the Burnout, Coping, and Recovery Experience of Journalists**
Gu, MoonSun
Ph.D., Counseling and Coaching,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Yonsei University
You, Young Gweon
Professor, Counseling and Coaching,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Yonsei University
Lee, Jae Ji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 129 **A Study on the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in German Courts as a Criterion for Judging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Lee, Soo Jong
Ph.D., Executive Adviser,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의 지난 10년간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해당 학술지가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바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2015년 창간 이후 2024년까지 게재된 총 102편의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계량학(bibliometric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명예훼손·모욕·협오표현(15.7%), 프라이버시(14.7%),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11.8%), 미디어 규제법(10.8%) 등이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였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음을 시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해석학적 접근(법 규정 중심, 판례 중심, 법 규정+판례 분석)이 65% 이상 차지하여 법리적 분석이 주된 연구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전문 분야(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언론학 연구자들은 미디어 규제법 주제 및 양적연구방법을, 법학 연구자들은 프라이버시, 신기술 관련 주제 및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협업을 보면, 공동연구 비율이 13.7%에 불과하고 법학자-언론학자의 공동연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을 토대로 학문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미디어와 인격권>은 신문방송학과 법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들

* 이 연구는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mkhufs@gmail.com

과 긴밀한 인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학과 언론학의 융합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학술지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가 최근 하락했고 <미디어와 인격권>의 자기 인용비율이 높다는 점은 연구 확산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술지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서는 법사회학적 접근 확대, 학제 간 협업 강화,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 연구 심화, 학술적 영향력 확대 노력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 연구동향, 메타 분석, 문헌계량학, 내용분석, 인용분석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1. 연구동향 분석의 중요성 및 방법론
 - 2.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연구된 주제 및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 2. 활용된 연구방법
 - 3. 연구자 속성 및 협업
 - 4.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 V. 결론

I. 서론

학술지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학문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언론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발간하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법 분야 주요 학술지 중 하나로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 창간된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8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20년 1월에 등재 학술지가 되어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의 학문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다. 하나는 미디어학, 법학, 윤리학이 교차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언론법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법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언론과 법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법학자 중에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

지 않고 언론학자 중에는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언론법은—독립된 연구 분야로서의 중요성과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관련 연구자 수가 많지 않고 연구 성과물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조연하, 2019). 융합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로서 〈미디어와 인격권〉은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고도로 매개된 사회로 진입한 이후 인격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언중위는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 목적을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¹⁾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윤리적 쟁점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미디어와 인격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창간호부터 가장 최근(2024년 12월)에 발간된 제10권 3호까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총 102편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술 연구의 경향과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등을 알아본다.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학문적 담론을 진전시키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디어와 인격권〉이 이끌어야 할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동향 분석의 중요성 및 그러한 작업에 활용되는 연구방법들을

1) 여기 서술한 학술지 발간 목적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 소개 페이지(<https://www.pac.or.kr/kor/pages/?p=221>)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에는 학술지 발간 목적이 별도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학술지 발간 목적을 온라인상의 학술지 소개 페이지뿐만 아니라 예규에 공식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짚는다. 아울러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도출하고 본 연구가 활용한 연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제4장은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한 주요 연구주제,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연구방법, 연구자 간의 협업 및 연구자의 전문 분야 등에 대해 살핀 후, 문헌계량학을 통해 파악한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을 논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학술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도 함께 짚는다.

II. 이론적 논의

1. 연구동향 분석의 중요성 및 방법론

과학적 연구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토머스 쿤(Kuhn, 1962)이 주창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에 따르면, 학문적 연구는 크게 점진적 발전(일반 과학, normal science)과 혁신적 변화(과학 혁명, scientific revolution)의 단계를 반복하며 진화한다. 점진적 발전 단계에서는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누적되며, 혁신적 변화 단계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그런데 개별 연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특정 학문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방법론과 주요 연구결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 학문이 현재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연구 패러다임이 학계에서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ranfield et al., 2003).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메타 분석(meta-analysis), 문헌계량학(bibliometric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방법은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 각각의 개념과 주요 기법을 간략히 짚어본다.

첫째, 메타 분석(meta-analysis)은 특정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Galss, 1976). 개별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함으로써, 단일 연구보다 더 강력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Borenstein et al., 2011). 메타 분석은 주로 의학, 심리학, 사회과학에서 실험 연구나 임상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는데 활용된다(Borenstein et al., 2011). 가령 의학 분야에서는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임상 연구를 분석하는 메타분석을 수행해 개별 연구들이 제시한 치료 효과를 통합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한다. 메타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은 효과 크기(effect size) 계산(Cohen, 1988),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과 변량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Hedges & Vevea, 1998), 이질성(heterogeneity) 분석(Higgins & Thompson, 2002),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평가(Egger et al., 1997) 등이 있다.

둘째, 문헌계량학(bibliometrics)은 학술 논문의 출판 및 인용 패턴을 분석하여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Pritchard, 1969). 도서관학, 정보학, 과학기술정책 연구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Van Raan, 2005),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Bhunja & Singh, 2025; Farzam et al., 2025; Yadav et al., 2024). 문헌계량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에는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참고문헌 분석(reference analysis), 공인용 분석(co-citation analysis), 연구 협력 네트워크 분석(co-authorship & citation network analysis), 저널 영향력 분석

(journal impact analysis) 등이 있다.

인용분석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분석하여 연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고(Garfield, 1979), 참고문헌 분석은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반을 파악한다(Small, 1973). 공인용 분석은 논문들이 함께 인용되는 빈도를 분석하여 연구 분야 간 연관성을 조사하는데(Small & Griffith, 1974) 반해, 연구 협력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자 및 기관 간 협력 관계를 시각화한다(Newman, 2004). 저널 영향력 분석(journal impact analysis)은 특정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및 h-지수(h-index)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셋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연구 논문의 텍스트 데이터를 정성적(qualitative) 또는 정량적(quantitative)으로 분석하여 연구주제, 방법론, 연구결과의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Krippendorff, 2004). 문헌계량학과 달리, 논문의 내용 자체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Neuendorf, 2017). 주요 기법으로는 주제 분석(topic analysis), 코딩 분석(coding analysis),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 있는데, 주제 분석은 연구주제를 분류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고(Blei et al., 2003), 코딩 분석은 논문의 텍스트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코딩하여 패턴을 도출한다(Krippendorff, 2004).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활용하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과 구조를 분석한다(Feldman & Sanger, 2007).

요약하면, 메타분석은 동일한 연구주제를 다룬 개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 문헌계량학은 학술 논문의 출판 및 인용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반면, 내용분석은 연구 논문의 텍스트 내용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는 단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진행한다. 따라서 개별 연구의 통계적 효과 크기를 종합하는 메타 분석 기법은 본 연구대상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계량

학과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미디어와 인격권>에 나타난 연구동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언론법은 헌법상 언론 자유의 이념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성낙인, 1994). 언론법 연구는 학제 간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언론과 법의 관계를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언론의 자유와 법적 규제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연하, 2019).

현재까지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 성과물만을 대상으로 한 언론법 연구동향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으나,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이승선, 2005; 이재진·이승선, 2008; 이승선·이재진, 2011; 이승선, 2014; 이재진·박성순, 2015; 김민정, 2017; 이승선, 2018; 조연하, 2019; 최영재, 2021 등).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이한 분석 대상(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기반으로 진행된 관계로, 연구결과를 비교하거나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일관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언론법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대표 연구로 이승선(2005)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출간된 언론법 관련 박사 학위 논문 97편과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언론중재>에 게재된 논문 195편을 분석했다. 연구 목적은 언론법 연구 영역을 범주화하고 연구주제, 연구자 속성, 연구방법론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법학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간의 갈등,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주요 연구영역으로 삼았고, 언론학자들은 방송 관련 정책 제도 연구나 저널리즘 영역에 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약 60%의 연구들이 법학 전공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승선, 2005).

이승선은 2005년 연구 이후에도 단독연구(이승선, 2014; 이승선, 2018)와 공동연구(이재진·이승선, 2008; 이승선·이재진, 2011)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해 왔다. 연대순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이재진·이승선(2008)은 2007년에 발표된 서적,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 97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학술논문의 57.7%는 법학전공자들에 의해, 42.3%는 언론학 전공자들에 의해 발표되었고 언론학자들은 판례에 대한 양적분석과 실증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법학 전공자들은 전통적인 법학연구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연구주제로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명예훼손 등 인격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재진·이승선, 2008). 이승선·이재진(2011)은 2007년~2010년에 발간된 법학 및 언론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 논문과 2009년~2010년에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및 학위논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문 간 교류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고, 연구주제에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승선·이재진, 2011). 이승선(2014)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07년~2010년 게재 논문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제 관련 논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언론법 연구는 여전히 법학 기반의 언론법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기반 학자들은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표현자유기본권’ 관련 주제를, 언론학 기반 학자들은 ‘미디어정책’, ‘표현자유기본권’, ‘심의자율규제’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이승선, 2014).

이승선(2018)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2015~2018년에 게재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논문 326편과 2010년 이후에 나온 학위논문 125편을 분석했는데, 해당 연구가 파악한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판례분석 및 개별 사례 평가가

주로 활용되었고, 연구자의 전공 배경은 법학 전공자가 지배적이며, 언론학 기반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법학 기반 연구자들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 명예훼손 및 인격권 보호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반면, 언론학 기반 연구자들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연구주제가 미디어 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분야 연구가 집중적으로 게재된 학술지는 <미디어와 인격권>과 <언론과 법>이었는데, 인격권 관련 주제 가운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중요 연구주제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성범죄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비범죄화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다루는 연구, 가짜뉴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였다(이승선, 2018).

김민정(2017)은 2016~2017년 사이에 총 18개의 저널에 발간된 82편의 미디어법 논문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연구동향을 파악했는데, 분석 결과 가장 활발히 연구된 주제는 프라이버시(자기정보결정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포함)였다. 절반 이상의 연구가 법해석학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연구자의 속성과 연구방법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학자는 법해석학적 접근을 언론학자는 법사회학적 접근을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김민정, 2017). 최영재(2021)는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400편의 논문과 학위논문 54편을 분석했다. 연구주제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었으며,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재, 2021).

특정 학술지/전문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는 이재진·박성순(2015)과 조연하(2019)가 있다. 이재진·박성순(2015)은 언론위가 발행하는 <언론중재>에 실린 학술적 성격의 논문 508편을 분석하여,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주

제는 시대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1980년대(도입기)에는 명예훼손 관련 개념 정립 및 판례 소개가 두드러졌고 1990년대에는 연구주제의 세분화와 방법론의 다양화가 이뤄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보급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중재 관련 개념 정의의 변화, ADR(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잊혀질 권리 등 새로운 주제가 등장했다(이재진·박성순, 2015). 조연하(2019)는 1999~2018년 기간 동안 <한국언론학보>에 게재된 언론법제 연구 25편을 분석한 후, 연구방법은 법사회학적·법해석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밝혔고, 연구주제가 국내 사례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국내 언론법 연구는 법해석학적 연구가 강세를 보이며, 법사회학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구자의 속성(전공 분야)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주요 연구주제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프라이버시,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의 새로운 주제들의 약진이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 모두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일종인 토픽 모델링과 휴먼 코딩 분석을 결합한 최영재(202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휴먼 코딩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코딩 분석의 주요 항목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 속성 등이었고, 연구의 지역적 초점이나 연구대상이 된 미디어의 유형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제3장에서 설명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및 제2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 연구문제 1.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에 지난 10년간 게재된 논문들은 어떤 연구주제, 연구대상(미디어 유형)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연구문제 2.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들은 어떠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의 사용은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며 연구주제와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 연구문제 3.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저자들은 어떠한 전문성과 협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속성에 따라 연구주제나 연구방법 선택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미디어와 인격권〉의 학문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피인용 지수와 타 학술지와의 인용관계를 통해 어떤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2. 연구방법

가. 분석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창간호(제1권 제1호, 2015년 11월 발간)부터

연구 진행 시점 기준 가장 최신호(제10권 제3호, 2024년 12월 발간)까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학술 논문 전체로 총 102편이다. 논문 전문은 언증위 사이트를 통해 얻었고,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관련 지표 및 데이터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사이트를 통해 얻었다. KCI는 인용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용 데이터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내용분석: 휴먼 코딩

내용분석은 연구의 제목, 초록, 본문 등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진행했다. 분석틀의 설정은 국내 언론법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역적(deductive) 관점에서 시작한 후, 내용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토대로 항목을 추가하는 귀납적(inductive) 관점을 더해 내용분석 변수(variables) 및 각 변수별 속성(attributes)을 완성했다. 내용분석에 활용한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표 1> 내용분석 분석틀

변수(variables)	속성(attributes)
연구주제	①법적 체계의 이해(사법제도, 언론법체계, 언론법 사조, 제정사 등) ②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언론/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헌법, 국가안보와 기밀, 사전억제, 가상표현) ③알 권리, 엑세스권, 정보공개청구 ④취재·보도의 자유와 책임(취재원 보호, 언론사 압수수색, 편집권 독립) ⑤선거표현(공직선거법), 재판, 범죄 보도(피의자 신상 공개) ⑥명에 훼손·모욕·혐오표현 ⑦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⑧반론권(정정·반론·추후보도) ⑨저작권(저작권,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 등) ⑩성표현물(음란·저속, 가상 성표현물 등) ⑪미디어 규제 제도(내용심의, 자율규제 등) ⑫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⑬미디어 정책 ⑭미디어 윤리 ⑮광고규제 ⑯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 ⑰기타

연구 방법	법해석학 (전통적 연구)	①법 규정 중심 ②판례 중심(판례평석, 판례/사례분석 등-부분적 양적 통계도 포함) ③법 규정+판례분석
	법사회학 (사회과학 연구)	④양적방법(내용분석, 서베이, 실험연구 등) ⑤질적방법(심층인터뷰, FGI, 문화연구 담론분석 등) ⑥제도/정책연구
	그 외	⑦역사적 접근(법 제도와 법사상이 어떻게 생성·발전·소멸하였는지를 역사적, 사실적으로 분석, 파악, 전망) ⑧철학적·이론적 접근(법현상에 대해 도덕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심리학 등 학술 이론을 적용해 논증) ⑨기타/복합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①신문/잡지 ②방송/통신 ③영화 ④인터넷(SNS, 모바일 등 온라인) ⑤ 복합 및 비매체(특정 매체로 국한되지 않거나 매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논문 형태	①기획논문 ②연구논문 ③판례평석	
참여 연구자 수	(참여 연구자 숫자 기재)	
연구자 속성 (전문 분야)	①언론학자 ②법학자 ③언론실무 ④법실무(판사, 변호사)	

주: 이승선(2005); 이재진·이승선(2008); 이승선·이재진(2011); 이승선(2014); 이재진·박성순(2015); 김민정(2017); 조연하(2019) 참조.

다. 문헌계량학: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등

인용지수를 토대로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 중심성지수(SCImago Journal Rank, 이하 SJR), 통시적 학술지 영향력지수(Diachronous Journal Impact Factor, 이하 IMP), 즉시성지수(Immediacy Index), 피인용반감기(Cited half-life), FWCI(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등이 있다. 세계 양대 학술지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클래리베이트(Clarivate Analytics)는 IF, IMP, 즉시성지수, 피인용반감기 수치 등을 제공하며, 엘스비어(Elsevier)는 FWCI 수치와 SJR 수치를 제공한다. KCI는 클래리베이트와 엘스비어에서 개발, 활용해 온 이러한 지표들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적용해 KCI 인용지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KCI가 제공하는 KCI 인용지수들²⁾ 중 IF를

2) 각 인용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KCI 인용지수 설명>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ci.go.kr/kciportal/po/citationindex/explanation.kci>).

활용한다. 다른 지수들은 학문 분야별 평균값을 제공하지 않아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최근 몇 년의 수치만 제공하는 등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 IF와 함께 타 학술지들과의 인용관계를 살폈고, 논문별 피인용 횟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된 주제 및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가. 전체 동향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들이 빈번하게 다룬 상위 5개 주제는 1)명예훼손·모욕·혐오표현(이하, ‘명예훼손 등’으로 표기), 2)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3)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이하,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로 표기), 4) (공동4위)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5)(공동4위)‘기타’ 주제였다(〈표 2〉참조).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두 분야는 명예훼손 등(16편)과 프라이버시(15편)다. 비율로는 15.7%(명예훼손 등)와 14.7%(프라이버시)로 둘을 합하면 전체의 약 1/3을 차지한다. 인격권 관련 대표 주제 영역인 명예훼손 등과 프라이버시가 그 중요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가 대표 연구주제라는 점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 문제, 사적 정보의 공개 범위, 잊힐 권리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많이 다뤄진 연구주제는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였다. 이들

연구는 인터넷 플랫폼, 가상 인간, 인공지능, 드론 등이 제기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 개관, 논의한 것으로 12편(11.8%)이었다. 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쟁자면, 이 주제로 분류된 연구들만이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제기되는 법적 이슈들을 다룬 것은 아니었다.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이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제기되는 법적 이슈들을 다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령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논의하면서도 저작권 영역에 국한해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저작권’ 연구로 분류했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를 여러 주제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 연구로 분류했다.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라는 항목은 내용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납적(inductive)으로 추가할 필요가 생겼을 만큼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획논문 대주제의 영향(다음 절의 논의 참고)이 일정 정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이 인격권과 법제 연구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법적 규제 방식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기술이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한 편의 논문에서 다양한 주제 분야에 걸쳐 다층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증가했음을 방증한다.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수 (전체, 2015년~2024년)

순위	연구주제	논문 수(%)
1	명예훼손·모욕·협오표현	16 (15.7%)
2	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15 (14.7%)
3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	12 (11.8%)
공동4	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11 (10.8%)
공동4	기타	11 (10.8%)
6	선거표현(공직선거법), 재판, 범죄 보도(피의자 신상 공개)	9 (8.8%)
7	미디어 규제 제도(내용심의, 자율규제 등)	7 (6.9%)
공동8	저작권(저작권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6 (5.9%)
공동8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헌법 등)	6 (5.9%)
10	반론권(정정·반론·추후보도)	3 (2.9%)
11	미디어 윤리	2 (2.0%)

공동12	취재 보도의 자유와 책임(취재원 보호, 언론사 압수수색, 편집권 독립)	1 (1.0%)
공동12	알 권리, 액세스권, 정보공개청구	1 (1.0%)
공동12	성 표현물	1 (1.0%)
공동12	광고 규제	1 (1.0%)
(합계)		102 (100%)

상위 5개 주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명예훼손 등을 주제로 한 연구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평소보다 관심이 높아지는 연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모든 연도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논문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형태였다. 두 주제가 그 중요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규제법을 다룬 연구와 기타 주제를 다룬 연구는 특정 연도에 논문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해당 연도의 기획연구 대주제와의 관련성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미디어 규제법을 다룬 연구는 총 11편이 있었는데, 이 중 4편이 2021년에 발간되었다. 이는 2021년도 기획논문 대주제 3개 중 2개가 ‘언론중재위원회 사회적 기능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검토’와 ‘언론중재제도 POST 40’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설정한 기획논문 대주제는 개별 논문의 연구주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기획논문 대주제를 고려해 연구주제의 동향을 짚는다.

나. 기획논문 대주제를 고려한 동향

<미디어와 인격권>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매 호 대주제에 따른 기획 논문을 공모해 오고 있다. 분석 대상 논문 102편 중 기획논문에 해당하는 것은 58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57%를 차지했다. 이 외에 연구논문 38편(37.3%)과 판례평석 6편(5.9%)이 발간되었다. <표 3>은 총 22개의 기획논문 대주제를 학술지 발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기획논문 대주제 (2015년~2024년)

년도	권	호	기획논문 대주제
2015	1	1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보호’ (학술지에 명시 안 됨, 2편의 기획 논문 주제로 추정하면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보호’ 정도로 요약 가능함)
2016	2	1	초연결사회와 인격권
2017	3	1	뉴스 플랫폼 다변화와 인격권 보호
2017	3	2	기술주도 미디어 시대와 인격권
2018	4	1	현 미디어 법제 진단과 개선방안
2018	4	2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면적 접근
2019	5	1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디어 역할
2019	5	2	탈진실 시대의 페이크뉴스(또는 허위조작정보·디스인포메이션)와 팩트체크, 그리고 인격권
2020	6	1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
2020	6	2	디지털시대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2021	7	1	언론중재위원회 사회적 기능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검토
2021	7	2	명예훼손과 피해구제
2021	7	3	언론중재제도 POST 40
2022	8	1	유튜브(YouTube)의 자유와 한계
2022	8	2	선거와 언론
2022	8	3	초상권과 피해구제
2023	9	1	미디어 윤리와 인격권
2023	9	2	AI와 인격권
2023	9	3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경계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피해구제
2024	10	1	미디어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24	10	2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널리즘과 인격권
2024	10	3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의 현실과 쟁점

기획논문 대주제들은 새로운 뉴스 플랫폼의 개념 정립,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균형 유지, 제도적 수용 방안 등 언중위가 표방하고 있는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많은 대주제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다. 이로 인해 대주제의 명확한 방향성을 알기 어렵다. 달리 말해, 기획논문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론적, 개념적 논의를 반복할 경우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새

로운 뉴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논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연구와의 학제 간 융합을 고려한 대주제가 부족하다.

기획논문을 제외한 일반논문—연구논문 38편과 판례평석 6편—이 다른 연구주제별 논문 수와 비율은 <표 4>와 같다.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파악한 연구주제별 논문 수에 따른 순위(<표 2> 참조)와 비교해 보면, 명예훼손 등과 프라이버시는 양쪽 모두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양쪽을 비교할 때 순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연구주제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전체논문에서는 8위였으나 일반논문으로 한정하면 2위로 올라섰다. 미디어 규제법,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미디어 규제 제도도 일반논문에 한정해 분석했을 때 그 순위가 올라간 주제들이다. 저작권을 주제로 한 연구는 이승선·이재진(2011)의 연구에서 국내 언론법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파악된 바 있고,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미디어 규제법, 미디어 규제 제도를 주제로 한 연구도 이승선(2014)의 연구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파악된 바 있다. 즉, 기획논문을 제외하면 <미디어와 인격권>에 발간된 논문들의 연구주제는 선행연구들이 밝힌 국내 언론법 연구주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를 다룬 연구는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파악했을 때는 3위였으나 일반논문에 한정해 분석하면 9위로 떨어졌다. 이는 기획논문 대주제들이 ‘디지털 시대’, ‘뉴스 플랫폼 다변화’ ‘기술 주도 미디어’, ‘AI’ 등을 화두로 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차이로 보인다.

<표 4> 연구주제별 논문 수 (기획논문 제외, 2015년~2024년)

순위	연구주제	논문 수(%)
1	명예훼손, 모욕, 혐오표현	8 (18.2%)
공동2	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5 (11.4%)
공동2	저작권(저작권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5 (11.4%)
공동2	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5 (11.4%)
공동5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헌법 등)	4 (9.1%)
공동5	미디어 규제 제도(내용심의, 자율규제 등)	4 (9.1%)
공동5	기타	4 (9.1%)

8	선거표현(공직선거법), 재판, 범죄 보도(피의자 신상 공개)	3 (6.8%)
공동9	반론권(정정·반론·추후보도)	2 (4.5%)
공동9	새로운 기술과 연계해 여러 주제 영역 개관	2 (4.5%)
공동11	취재 보도의 자유와 책임(취재원 보호, 언론사 압수수색, 편집권 독립)	1 (2.3%)
공동11	미디어 윤리	1 (2.3%)
(합계)		44 (100%)

다.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논문들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미디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대상은 ‘복합 및 비매체’였다. 즉, 61편(59.8%)의 연구는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대상 매체가 하나의 특정 매체로 명확히 한정되지 않거나, 혹은 매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였다. 부연하면, 본 연구에서 ‘복합 및 비매체’로 설정한 범주는 두 가지 하위 유형을 포함한다. 하나는 논문에서 여러 매체 유형(예: 방송, 인터넷 등)을 동시에 다루거나 비교하면서 특정 매체 하나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는 경우로 ‘복합 매체’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비매체(non-media)’로 인격권 일반, 이론적 논의 등 논문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미디어와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다. 본 연구에서 ‘복합 및 비매체’로 분류한 연구의 예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산권 개념의 사상적, 경제적, 법적 측면을 논의한 논문, ② ‘현저한 상당성’ 법리 등 공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검토한 논문, ③ ‘중복’ 관련 판례를 분석한 논문, ④ 매체물 심의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논문 등.

‘복합 및 비매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대상은 ‘인터넷’이었다. 총 33편(32.4%)의 논문이 인터넷(SNS, 모바일 등 온라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 ‘방송/통신’을 다룬 연구가 7편(6.9%), ‘신문/잡지’를 다룬 연구가 1편(1.0%)이었다.

기획논문 대주제가 연구자들의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선택에 일정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기획논문을 제외하고 일반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전히 ‘복합 및 비매체’를 다룬 연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44편의 일반논문 중 30편(68.2%)이 ‘복합 및 비매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그다음은 ‘인터넷’을 다룬 연구로 9편(20.5%)이었고, ‘방송/통신’을 다룬 연구는 5편(11.4%)이었다. 즉, 비율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든, 기획논문을 제외하고 분석하든 연구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한 미디어는 ‘복합 및 비매체’와 ‘인터넷’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 변화의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면 관계상 추가 논의는 생략한다.

2. 활용된 연구방법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들이 빈번하게 활용한 상위 3개 연구방법은 모두 법해석학적 접근이었다. 1위는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로 25편(24.5%)이었고, 2위는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로 22편(21.6%)이었으며, 3위는 법 규정과 판례분석을 동시에 진행한 법해석학 연구로 19편(18.6%)이었다. 즉, 102편의 약 65%에 해당하는 66편의 연구들이 법해석학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사회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방법을 택한 연구가 11편, 질적방법을 택한 연구가 6편으로 총 17편, 즉 전체의 약 17%가량의 연구가 법사회학적 접근을 취한 연구였다.

법해석학 연구는 법률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실제 사회에서 법이 미치는 영향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 법과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인격권 보호 조치(명예훼손 피해 구제, 기사 삭제 요청

등)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나, 시민들이 미디어 규제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표 5〉 연구방법별 논문 수 (전체, 2015년~2024년)

순위	연구방법	논문 수 (%)
1	법해석학(법 규정 중심)	25 (24.5%)
2	법해석학(판례 중심)	22 (21.6%)
3	법해석학(법 규정+판례분석)	19 (18.6%)
공동4	기타/복합	11 (10.8%)
공동4	법사회학(양적방법)	11 (10.8%)
6	법사회학(질적방법)	6 (5.9%)
공동7	역사적 접근	4 (3.9%)
공동7	철학적·이론적 접근	4 (3.9%)
(합계)		102 (100%)

빈번하게 활용된 상위 5개 연구방법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방법은 2015년부터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특히 2018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외 연도에도 매년 2편에서 3편 사이의 논문이 안정적으로 발표되었다.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 역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4편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법 규정과 판례를 함께 분석한 법해석학 연구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를 보였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며 2024년에는 5편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끝으로, 법사회학 접근 중 양적방법을 활용한 연구와 기타/복합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연도별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0년이라는 분석 기간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의 수 자체가 적어 이러한 변동성에서 뚜렷한 추세나 유의미한 해석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간의 상관관계, 즉 특정 연구주제에서 특정 연구방법론이 더 자주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명예훼손 등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이었고, 기타 연구주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양적방법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접근이었다. 이처럼 연구주제 별로 특정 연구방법이 선호되는 경향도 발견되었지만, 교차분석에서 각 셀(cell)의 빈도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할 수 없었다.

3. 연구자 속성 및 협업

가. 참여 연구자 수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의 절대다수는 단독연구였다. 총 102편 중 88편의 연구는 1인 저자에 의한 단독연구로 비율로는 86.3%에 달한다. 2인 공동연구는 14편이었고, 3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총 14편의 공동연구 중 13편은 언론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였고 1편만이 법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였다. 언론학과 법학자가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법학 연구는 전통적으로 단독연구 중심의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다. 법률 조항 및 판례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미디어와 인격권> 게재 논문의 86.3%가 단독 저술이라는 점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14편의 공동연구가 같은 전공 분야 내에서만 이뤄졌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학문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언론법 연구의 본질이 법학과 언론학 간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문 간 교류와 협업이 부족한 것은 중요한 한계이다.

나. 연구자의 전문 분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전문 분야에 기반해 크게 4가지로 나눴다: ①언론학자(언론학 교수,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언론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언론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등) ②법학자(법학 교수, 법학 전공 대학원생, 법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등) ③언론 실무 전문가(기자 등) ④법 실무 전문가(판사, 변호사 등). 논문 제1저자의 전공 분야에 따른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 언론학자에 의한 연구가 47편(46.1%), 법학자에 의한 연구가 46편(44.1%)으로 비슷했다. 판사, 변호사 등 법 실무 전문가에 의한 연구는 9편(8.8%)이었고, 기자 등 언론 실무 전문가에 의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연구자의 전문 분야를 크게 언론학(언론학자 및 언론 실무 전문가)과 법학(법학자 및 법 실무 전문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언론학 전문가에 의한 연구 47편(46.1%) vs. 법학 전문가에 의한 연구 55편(53.9%)으로 법학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의 비율이 7.8%포인트 높았다. 공동연구가 이뤄진 14편의 연구에서 제2저자의 유형은 언론학자가 13명이었고 법학자가 1명이었다. 따라서 102편의 연구에 참여한 총 116인의 연구자를 기준으로 하면 언론학 전문가가 60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한다.

다. 연구자의 전문 분야에 따른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

연구자의 전문 분야를 크게 언론학과 법학으로 나눈 후,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차분석 대상 데이터는 논문 빈도수 기준 상위 5개의 연구주제와 상위 5개 연구방법으로 제한했다.

우선, 연구주제 선택을 보면, 연구자의 전문 분야(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주제 선택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언론학자들은 미디어 규제법(23.3%)과 기타(33.3%)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

하고 있는 반면, 법학 배경의 연구자들은 프라이버시(37.1%)와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22.9%)를 더 많이 연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 연구자 모두가 집중한 주제는 명예훼손 등이었다.

<표 6> 교차분석: 연구자의 전문 분야 x 연구주제

연구자 전문 분야	연구주제	명예훼손 등	프라이버시	미디어 규제법	신기술 연계 복합주제	기타
언론학		7 (23.3%)	2 (6.7%)	7 (23.3%)	4 (13.3%)	10 (33.3%)
법학		9 (25.7%)	13 (37.1%)	4 (11.4%)	8 (22.9%)	1 (2.9%)

($\chi^2 = 17.55, df=4, p < .01$)

다음으로, 연구자의 전문 분야(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방법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자의 전문 분야는 연구방법 선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언론학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한 방법은 양적 방법(내용분석, 서베이, 실험연구 등)으로 나타난 반면, 법학 전문가들은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38.0%)와 판례 중심의 법해석학 연구(30.0%)를 주로 진행했다는 차이가 있었다.

<표 7> 교차분석: 연구자의 전문 분야 x 연구방법

연구자 전문 분야	연구방법	법해석학 (법규정 중심)	법해석학 (판례 중심)	법해석학 (법규정+ 판례)	법사회학 (양적방법론)	기타/ 복합
언론학		6 (15.8%)	7 (18.4%)	8 (21.1%)	11 (28.9%)	6 (15.8%)
법학		19 (38.0%)	15 (30.0%)	11 (22.0%)	0 (0.0%)	5 (10.0%)

($\chi^2 = 19.97, df=4, p < .01$)

4.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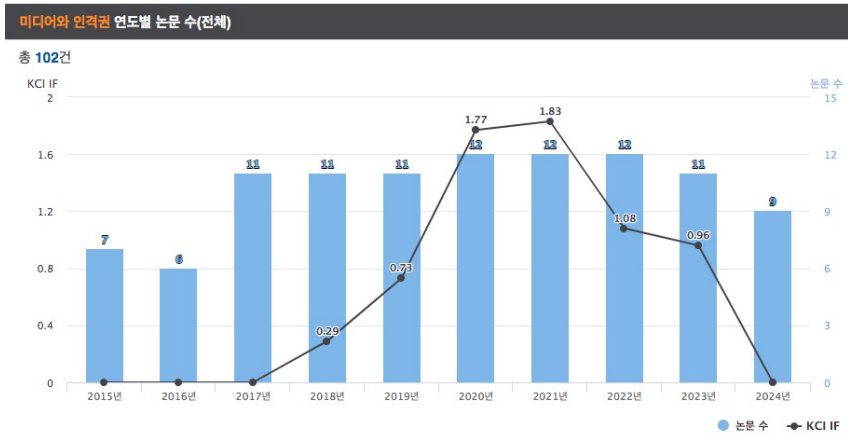
가. 피인용 횟수 및 저널 영향력지수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의 학문적 영향력을 피인용 횟수와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에 기반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인용 횟수는 고정값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며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KCI 인용보고서 데이터 셋(data set)을 2025년 2월 13일에 다운로드했을 때는 총 피인용 횟수가 425회였으나 약 2주 후에는 총 피인용 횟수가 21회 증가해 있었다.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102편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2025년 2월 26일 기준 446회이고 자기인용(self-citation) 제외 시 384회이다.

총 피인용 횟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총 피인용 횟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학술지 게재 논문이 타 학술지 게재 논문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인용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연도별 비교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인용지수가 저널 IF다. 저널 IF는 특정 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피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KCI가 제공하는 저널 IF는 매년 7월 말일에 계산되며 직전 연도까지 2년간의 평균을 반영한다.

가장 최근 계산/제공되는 KCI IF는 ‘2023년도 IF(계산일: 2024년 7월 31)’로 〈미디어와 인격권〉의 경우 0.96이다. 이는 해당 학술지가 속한 신문방송학 분야의 평균 KCI IF(2023년도 기준 1.91)보다 낮은 수치이며, 법학 분야(1.14)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미디어와 인격권〉에 발간된 논문의 숫자와 연도별 KCI IF 수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2024년의 IF가 0으로 나타난 것은 KCI IF가 계산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학술지 발간 초기에는 피인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가 된 이후 저널 IF가 점차 증가해, 등재

학술지가 된 2020년(1.77)과 그다음 해인 2021년(1.83)에 KCI IF 수치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KCI IF는 하락세를 보인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와 KCI IF 지수 (2015년~2024년)

나. 논문별 피인용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102편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2025년 2월 26일 기준 446회로 논문별 평균 피인용 횟수는 4.37회다. 피인용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5.03으로 분포가 넓게 퍼져있고, 중앙값은 3회로 전체 논문 중 절반은 3회 이하의 인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댓값은 29회로 일부 논문이 매우 높은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높이고 있었다. 이처럼 소수의 논문이 큰 영향을 미치는 롱테일(long-tail) 패턴은 학술 논문 피인용 횟수 분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포다.

논문이 다룬 연구주체에 따라 피인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주체별 피인용 횟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했다. 먼저, 연구주체별 평균 피인용 횟수를 확인했다. 다만, 특정 연구주체를 다룬 논문

수가 적을 경우, 평균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문 수 기준 상위 5개 연구주제에 한정하여 평균값은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 등(16편, 평균 4.88회), 2) 프라이버시(15편, 평균 4.13회), 3)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12편, 평균 3회), 4) (공동4위) 미디어 규제법(11편, 평균 3.73회), 5) (공동4위) 기타 주제(11편, 평균 6.73회). 이들 수치를 보면, 연구주제별 평균 피인용 횟수에서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논문 발간 연도에 따라 인용 누적 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를 산출했다. 이는 동일한 발간 연도 내에서 해당 논문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혹은 덜)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주제의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가 2.0이라는 것은, 해당 주제의 논문들이 같은 연도에 출판된 논문들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더 많이 인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상위 5개 연구주제에 한정해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 값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명예훼손 등(0.91), 2) 프라이버시(0.83), 3)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1.12), 4) (공동4위) 미디어 규제법(0.96), 5) (공동4위) 기타 주제(0.99).

즉, 시간 경과에 따른 인용 누적 효과를 제거하고 살펴본 결과,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의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가 1.12로 동일 발간 연도 게재 논문보다 약간 더 자주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고 나머지 주제들의 ‘조정 평균 피인용지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다. 따라서, 연구주제에 따라 피인용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연구주제에 따른 피인용지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0개 논문의 목록은 <표 8>과 같다. 가짜뉴스(fake news) 관련 연구가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를 기록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리터러시(3위), 성별 갈등 보도 분석(4위)과 같이 전통적인 언론법 연구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주제를 다룬 연구들도

피인용 횟수 기준으로는 최상위권에 있었다. 또한, 상위 10개 논문을 기준으로 보면, 언론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법학자들이 진행한 연구보다 빈번하게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0개 논문(피인용 횟수 기준 시점: 2025년 2월 26일)

순위	년도	권(호)	논문명	저자	피인용 횟수
1	2019	5(2)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김민정	29
2	2018	4(2)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	이완수	24
3	2017	3(2)	인격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양정애	16
4	2019	5(1)	미투 운동 이후 한국 신문에 나타난 성별 갈등 보도 분석	김수아	15
공동5	2017	3(1)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양재규	13
공동5	2018	4(1)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정필운	13
7	2018	4(2)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란	12
공동8	2018	4(2)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홍남희	11
공동8	2019	5(1)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윤성욱	11
공동10	2021	7(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이승선	10
공동10	2021	7(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박아란 / 김현석	10

다. 학술지 간 인용관계

KCI에서 제공하는 ‘인용색인상제’를 통해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많이 인용한 학술지와 <미디어와 인격권>을 많이 인용한 학술지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었다.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학술지는 <언론과 법>으로 총 133회 인용, 비율로는 10.8%였다. 이는 신문방송학과 법학의 접점에 있는 학술지인 <미디어와 인격권>이 유사한 성격의 학술지인 <언론과 법>을 핵심 참조 저널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와 인격권> 자체도 3위(4.7%)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미디어와 인격권>에 실린 기존 연구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디어와 인격권>이 많이 인용한 상위 10개 학술지 가운데 신문방송학 분야 저널과 법학 분야 저널이 거의 반반씩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9〉 참조). 신문방송학과 법학이 모두 <미디어와 인격권>의 중요한 연구 기반이며 해당 학술지가 융합 학문 성격을 띠는 점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해당 학술지가 하나의 분야에 고립된 채 연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학과 법학이라는 서로 다른 학문 분과 사이의 학제적 접점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단서로 해석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법학 저널 중에서도 공법 관련 학술지, 특히 <공법학연구>와 <공법연구>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미디어와 인격권>이 개인의 권리 보호(헌법)와 공적 규제(공법)라는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인용비율 측면에서도 특이점이 있다. 최고 인용률(10.8%)을 기록한 <언론과 법> 외에는 대부분의 저널이 5% 미만의 인용률을 보인다. 이는 특정 학술지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디어와 인격권>이 비교적 다양한 학문적 기반 위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아직 학문적 중심을 고정하기보다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9> <미디어와 인격권>이 인용한 횟수 기준 상위 10개 학술지
(인용 횟수 기준 시점: 2025년 2월 26일)

순위	학술지명	주제분류	인용비율(%)	인용횟수(건)
1	언론과 법	신문방송학	10.8	133 / 1,218
2	한국언론학보	신문방송학	5.1	62 / 1,218
3	미디어와 인격권	신문방송학	4.7	58 / 1,218
4	공법학연구	법학	3.5	43 / 1,218
5	한국방송학보	신문방송학	3.1	41 / 1,218
6	공법연구	법학	3.1	35 / 1,218
7	저스티스	법학	2.5	29 / 1,218
8	한국언론정보학보	신문방송학	2.1	26 / 1,218
9	세계헌법연구	법학	1.9	23 / 1,218
10	헌법학연구	법학	1.8	21 / 1,218

다음으로 <미디어와 인격권>을 많이 인용한 학술지들을 살펴보면, 이 학술지가 스스로를 인용한 비율이 13.9%로 가장 높았다(<표 10> 참조). 이러한 높은 자기 인용비율은 해당 학술지가 지속적인 연구 흐름을 내 부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학술지 고유의 문제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자기 인용비율은 신생 학술지들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자기 인용비율이 과도할 경우 학술지의 영향력이 특정 집단 내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외부 인용 확장 여부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을 많이 인용한 상위 10개 학술지 중 6개가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이고, 특히 상위권에 더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은 미디어 연구자들이 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디어, 젠더 & 문화>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젠더 이슈, 온라인 문화 등을 다루는 저널들 역시 <미디어와 인격권>을 참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술지가 전통적인 언론학·법학 범주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조명하는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미디어와 인격권〉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0개 학술지
(피인용 횟수 기준 시점: 2025년 2월 26일)

순위	학술지명	주제분류	인용비율(%)	피인용 횟수(건)
1	미디어와 인격권	신문방송학	13.9	62 / 446
2	언론과 법	신문방송학	6.3	28 / 446
3	한국언론정보학보	신문방송학	4.7	21 / 446
4	미디어, 젠더 & 문화	신문방송학	3.1	14 / 446
5	헌법학연구	법학	2.7	12 / 446
6	공법학연구	법학	2.2	10 / 446
7	언론정보연구	신문방송학	1.8	8 / 446
8	한국언론학보	신문방송학	1.6	7 / 446
9	공법연구	법학	1.6	7 / 446
10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학제간연구	1.6	7 / 446

이처럼 학술지 간 인용관계 분석은 단순히 인용 빈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와 인격권〉이 어떤 학문 분야와 주제 영역에서 활발히 참조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어떤 학문적 기반 위에서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신생 학술지의 경우, 자주 인용되는 외부 저널과 내부 자기 인용비율, 그리고 인용되는 저널군의 학문적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학술지의 정체성, 주요 독자층, 학문적 확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학술지 편집 전략 수립, 연구 자군 확장, 타 학문 분야와의 협업 가능성 탐색 등에도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의 지난 10년간 연구동향과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해당 학술지가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바를 종합

적으로 고찰했다. 연구 결과, 명예훼손·모욕·협오표현, 프라이버시(사생활,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성명권 등),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 미디어 규제법(언론중재법 전반, 방송법 등), 기타 인격권 관련 주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 미디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특정 매체에 국한되지 않은 ‘복합 및 비매체’(59.8%)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SNS, 모바일 포함)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이 32.4%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법해석학적 접근(법 규정 중심, 판례 중심, 법 규정+판례분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언론법 연구에서 법리적 분석이 핵심적 연구 방식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법사회학적 접근(양적분석 및 질적분석)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방법의 다변성 확보가 향후 과제임을 시사한다.

연구자 간의 협업을 분석한 결과, 게재 논문의 절대다수가 단독연구(86.3%)로 이뤄졌고 2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13.7%(14편)에 불과했다. 공동연구 총 14편 중 13편은 언론학자들 간의 협업이었고, 법학 연구자들 간의 협업 논문은 1편뿐이었다. 법학 연구자와 언론학 연구자가 공동연구한 경우는 단 한 편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미디어와 인격권>이 언론법이라는 융합적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에서는 학문 간 협업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전문성(언론학 vs. 법학)에 따라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언론학자들은 미디어 규제법 및 기타 주제를 더 선호하는 반면, 법학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및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도 언론학자들은 양적연구방법(설문조사, 내용분석 등)을 선호한 반면, 법학 전문가들은 법 규정 중심의 법해석학적 접근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방법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와 인격권>의 2023년도 KCI IF

수치는 같은 해 신문방송학 분야 학술지 평균 KCI IF 및 법학 분야 학술지 평균 KCI IF보다 낮았다. 또한 <미디어와 인격권>의 2023년도 KCI IF는 2020년도와 2021년도의 IF에서 하락한 수치였다. 타 학술지의 인용관계를 살핀 결과, <미디어와 인격권>은 법학과 언론학의 교차점에서 연구의 장을 마련하며, 신문방송학과 법학의 대표 학술지들과 긴밀한 인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 인용비율이 높고, 특정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과 전술한 KCI IF 수치 하락은 <미디어와 인격권>이 외부 학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연구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들에서는 법해석학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반면, 법사회학적 연구(양적·질적연구)의 비율은 낮다.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강화하고, 정성적 연구(심층 인터뷰, 담론 분석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학제 간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연구 중 언론학자와 법학자가 함께 연구한 사례가 한 편도 없었다. 또한 기획논문 대주제를 보면, 기술 분야 연구와의 학제 간 융합을 유도하는 주제들이 부족했다. 날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법학과 언론학 연구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아울러 기술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업도 유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학술지 차원에서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 속한 연구자 간 협업을 촉진하는 연구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심화된 연구 역시 요구된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다. 빈번하게 연구된 주

제 분야(대표적으로, 신기술 연계 복합 주제) 및 피인용 횟수 기준 최상위 논문들이 다른 주제(대표적으로 가짜뉴스, 혐오표현, 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디어와 인격권>의 학문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피인용 횟수가 높다는 것이 논문의 질이나 학술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논문/학술지라 해도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잊힐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외부 학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지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학자들과의 협업,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구축, 영문 논문 게재 추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해당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리한 접근법이지만, 한국 언론법 연구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디어와 인격권>이 국내 언론법 연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계량학(bibliometric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지의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개별 연구의 심층적인 질적 해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논문별 연구성과의 질적 차이나 논문의 실제 정책적·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학문적 연구동향 분석에서 자연어처리(NLP) 기반의 텍스트 분석기법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연구주제의 변화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논문 저자의 전문 분야를 언론학과 법학으로 이분화하여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자들은 법학과 언론학을 동시에 연구하거나, 언론학 내에서도 저널리즘, 미디어 정책, 방송법 등 세부 전공이 다를 수 있다. 연구자의 세부 전공을 보다 정교하게 분류해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연구 성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인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학술지의 영향력을 단순히 피인용 횟수나 저널 영향력지수(IF)로만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논문의 실제 정책적·사회적 영향력, 즉 연구결과가 법 제정, 정책 변화, 공적 담론 형성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술적 인용뿐만 아니라 정책보고서, 법원판결문, 정부 및 언론 보도에서 해당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학문적·사회적 영향을 보다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디어와 인격권> 학술지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동향을 입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미디어와 인격권>이 언론법 및 미디어 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학문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민정 (2017). 미디어법의 연구동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이론의 변화 트랙 발제문, 2017.4.21.
- 김영환 (2014).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 <법철학연구>, 17권 3호, 5-43.
- 상윤모, 박소영 (2023).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 동향 분석. <미디어와 인격권>, 9권 1호, 1-38.
- 오세혁 (2008). 우리나라 법학방법론의 전개. <법철학연구>, 11권 2호, 227-258.
- 이승선 (2005).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 227-262.
- 이승선 (2014).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2011~2013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1호, 1-27.
- 이승선 (2018).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전문 학술지 및 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와인격권>, 4권 2호, 87-134.
- 이승선·이재진 (2011).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언론과 법>, 10권 1호, 153-188.
- 이재진·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3호, 213-260.
- 이재진·이승선 (2008).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언론과 법>, 7권 1호, 105-133.
- 조연하 (2019). 언론법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언론학회(엮음). <한국 언론학 연구 60년 성과와 전망> (337-375쪽). 서울: 나남.
- 채이식 (2015). 법학 교육 및 연구 방법론에 관한 소고. <고려법학>, 76호, 1-26.
- Bhunia, S., & Singh, P. K. (2025). Producer organizations in the last 25 years: A bibliometric analysis and meta-review of the literatur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2. [DOI: <https://doi.org/10.1057/s41599-025-04526-3>]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11).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315(7109), 629-634.
- Farzam, Z., Dhume Shinkre, P., Borde, N. and Hegde Desai, P. (2025). Exploring the interplay between foreign capital, institutional quality and financial development: a comprehensive bibliometric 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Managerial Finance*, 51(2), 321-336. [DOI: <https://doi.org/10.1108/MF-07-2024-0563>]
- Feldman, R., & Sanger, J.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field, E. (1979). *Citation indexing—Its theory and applic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Glass, G. V.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10), 3-8.
- Hedges, L. V., & Vevea, J. L. (1998). Fixed- and random-effects models in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3(4), 486-504.
- Higgins, J. P. T., & Thompson, S. G. (2002). Quantifying heterogeneity in a meta-analysis. *Statistics in Medicine*, 21(11), 1539-1558.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uendorf, K. A. (2017).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Newman, M. E. J. (2004). Coauthorship networks and patterns of scientific

- collabor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 1), 5200-5205.
- Pritchard, A. (1969). Statistical bibliography or bibliometrics? *Journal of Documentation*, 25(4), 348-349.
- Small, H.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4), 265-269.
- Small, H., & Griffith, B. C. (1974). The structure of scientific literatures I: Identifying and graphing specialties. *Science Studies*, 4(1), 17-40
- Tranfield, D., Denyer, D., & Smart, P. (2003). Towards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evidence-informed management knowledge by means of systema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4(3), 207-222.
- Van Raan, A. F. J. (2005). Measurement of central aspects of scientific research: Performance, interdisciplinarity, structure. *Measurement: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Perspectives*, 3(1), 1-19.
- Yadav, S., Koushik, K., & Kishor, N. (2024). The state of country-of-origin research: A bibliometric review of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DOI: <https://doi.org/10.1016/j.apmr.2024.12.001>]

■ ABSTRACT

A Decade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Trends and Academic Impact -

Kim, Minjeong

Ph.D.,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and academic impact of th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over the past decade, shedding light on its evolving contributions to media law scholarship in South Korea. Since its launch in 2015, the journal has become a key platform for academic discussion on legal issues surrounding media practices. The study examines a total of 102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from 2015 to 2024 and employs bibliometr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as the primary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s include defamation, insult, and hate speech (15.7%); privacy (14.7%); multiple domain legal issues related to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gital platforms (11.8%); and media regulation laws (10.8%). These results suggest that legal issues aris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s continue to attract academic interest.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over 65% of the analyzed studies relied on a legal interpretative approach, focusing on statutory analysis and judicial precedents. Meanwhile, a notable disciplinary distinction was observed in research preferences:

media and communication scholars tend to favor media regulation topics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hile legal scholars focused more on privacy, technology-related issues,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analysis also revealed a low level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Only 13.7% of the studies were co-authored, and there were no instances of joint research between legal and media scholars. This suggests a critical lack of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which may limit the journal's potential to bridge the divide between legal theory and media practice. An analysis of the journal's academic impact shows that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maintains strong citation linkages with leading journals in both journalism and law, thereby confirming its crucial role in fostering interdisciplinary legal studies. However, the journal's impact factor has declined recently, and its high self-citation rate suggests limitations in the scope of its research dissemination. Moving forward, efforts should focus on expanding socio-legal approaches, strengthen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deepening research on legal challenges in the digital era, and enhancing the journal's academic impact to further advance the field of media law research. Such efforts are essential in strengthening the journal's relevance and advancing the field of media law in an increasingly complex information society.

Keywords: research trends, meta-analysis, bibliometrics, content analysis, citation analysis

[논문투고일 2025. 03. 03. 논문수정일 2025. 03. 24. 게재확정일 2025. 03. 28.]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 초상권을 중심으로 -

노 현 숙*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KU글로벌혁신대학 조교수

국문 초록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이미지 등을 정교하게 생성해 낼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사람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실이 아닌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초상권을 보호하여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을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명확하게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고 국가마다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사안마다 어느 권리에 중점을 둘 것인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는 가운데, 국내법의 경우에는 공익인 경우와 공익이 아닌 경우, 사실인 경우와 허위의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근거하면서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제한이 있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사실에 기반한 공적 인물의 초상 이미지나 과거 사실의 재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에 우선하여 보호될 여지가 있다. 반면, 공적 인물이 아닌 인물의 딥페이크 결과물이나 공적 인물과 관련한 허위 사실의 딥페이크 결과물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여 보호할 근거가 없고

* sunnylaw@gmail.com

초상권이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초상권이 인권의 하나이고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딥페이크 기술, 인공지능, 기계학습, 심층학습, 허위사실, 인격권, 초상권, 표현의 자유

목 차

- I. 서론
- II. 딥페이크 기술의 개관
 - 1. 딥페이크의 정의
 - 2. 딥페이크의 기술적 개념
 - 3.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 양상
 - 4. 딥페이크 확산의 문제점
- III.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법적 쟁점
 - 1.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연구현황
 - 2. 초상권의 의미 및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 3. 딥페이크와 표현의 자유
 - 4.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
- I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기반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활용은 쉽고 편리하게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한 권리 침해가 단순하지 않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앱 등을 통해서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되어 딥페이크 침해물이 손쉽게 제작되고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023년 7,187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급증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침해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¹⁾

딥페이크 기술은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각²⁾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간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3.2배 급증 - 상시·중점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 대응 성과 -, 2025.2.12.

2) 시각은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발달 된 감각으로서 영상(image)은 인간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Gonzalez, Rafael C & Woods, Richard E. Digital image processing, 4th edition, 2019, 18.

성과 감성에 모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이용되기 시작한 초기에 정치지도자나 연예인 등의 사진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영상이나 포르노 영상을 합성하였던 것에 기인하여³⁾ 딥페이크 기술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재현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생성해 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인격권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바탕으로 변형된 초상을 제작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해당 주체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고 동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⁴⁾

딥페이크 기술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의 모습을 이용하여 실체가 아닌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에 위반이 되는데,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제작되는 초상이 정교할수록 진짜와 구별이 어렵게 되어 부정적 또는 불법적 허위 이미지에 의한 영향력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 침해되는 권리인 초상권은 신체를 가지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근원적인 권리이다.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될 때 동반되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기 때문에 동시에 모두 보호하기는 어렵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관계를 고려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표현에 대하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고⁵⁾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

3) Hasan, Haya R. & Salah, Khaled. (2019). Combating Deepfake Videos Using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IEEE Access, 74, 1596.

4) 딥페이크 창작물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거나, 유명인 초상의 사용은 패러디(parody)나 오마주(hommage) 등으로 정당화되거나 승화될 여지도 있다.

5) 김재현 (2021).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호되는 가치 있는 딥페이크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⁶⁾ 또한,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생성물이 가짜의 이미지나 영상임을 미리 밝힌다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짜 이미지를 밝히지 않고 마치 진짜 영상인 것처럼 유포될 경우에는 초상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되어 더욱 문제가 된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생성물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지만, 인격권 가운데 특히 초상권과 관련한 연구가 미미하며, 딥페이크 기술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딥페이크 창작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충돌과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인격권 가운데 초상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딥페이크의 개념 및 기술적 원리를 알아보고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 양상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초상권의 문제와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딥페이크 기술의 개관

1. 딥페이크의 정의

인공지능은 자체적인 학습 알고리즘(algorithm)을 활용하여 영상이나 오디오 녹음 위에 다른 얼굴이나 모습을 입히고 음성을 넣어 사실적인 새로운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기술은 딥페이크 기술로써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고,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딥페이크’라는 표현은 인공지능의 심층학습(deep learning)이라는 단어와 가짜(fake)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인공지능의 심층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가짜 결과물을 의미한다. 딥페이크의 정의 및

대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55.

6) 허순철 (2022). 유튜브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허위사실공포.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21.

범위와 관련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의 기존 미디어나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의 내용이 진실로 포장된 정보⁷⁾ 또는 진짜처럼 보이는 조작된 이미지나 오디오 또는 영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밖에 딥페이크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조작 및 제작 기술로 정의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오디오 등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일반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딥페이크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한다.⁸⁾

2. 딥페이크의 기술적 개념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자동암호기 즉, 오토인코더(autoencoder) 방식과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이하 “GAN”이라 한다) 방식이 주로 적용된다.⁹⁾ 자동암호기 방식에서는 영상이 오토인코더를 통과하여 잠복 영상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영상이 디코더를 통과하여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난다.¹⁰⁾ 오토인코더를 사용해 얼굴을 바꿔치기하는 딥페이크에서 더욱 진화하여 완전히 새로운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경망을 이용한 GAN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¹¹⁾ 딥페이크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도 여러 국가와 단체들에 의해서 개발되

7) 최중선 (2020).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1권 1호, 367.

8) 조원용 (2022).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악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공법연구>, 제50집 제3호, 155.

9) Maksutov, Artem A., Morozov, Viacheslav O., Lavrenov, Aleksander A. & Smirnov, Alexander S. (2020). 2020 IEEE Conference of Russian Young Researcher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IConRus), 408-411.

10) Zucconi, Alan. (2018). Understanding the Technology Behind DeepFakes. URL: <https://www.alanzucconi.com/2018/03/14/understanding-the-technology-behind-deepfakes/>

11) Karras, Tero, Laine, Samuli & Aila, Timo (2019). A style-based generator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4401-4410.

고 있으며 딥페이크를 탐지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의 눈이나 입 모양 등에서 포착되는 비정상적 움직임이나 이미지의 특징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의 탐지 등에 의한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¹²⁾

GAN은 2014년에 이안 굿펠로우(Ian Goodfellow) 등이 제시한 새로운 기계학습 체제로서¹³⁾ 생성적 적대 신경망들이 서로 대립하는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만들어진 결과물 형상을 말한다.¹⁴⁾ GAN은 생성자를 통해 원본과 구별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고, 판별자를 통해 생성자가 생성한 데이터에서 원본과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복실행되는 인공지능 심층학습 기술 또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한 종류이다.¹⁵⁾¹⁶⁾ 즉, 생성자가 실제와 가까운 영상을 생성하면 비판자가 생성물에 대해 계속

12) 박준·조영호 (2019). 딥페이크 영상 탐지 관련 기술 동향 연구. <한국소프트웨어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725-726.

13) Goodfellow, Ian, Pouget-Abadie, Jean, Mirza, Mehdi, Xu, Bing, Warde-Farley, David, Ozair, Sherjil, Courville, Aaron, Bengio, Yoshua (2014). Generative Adversarial Ne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672-2680.

14) Koeniga, Alexa. (2019). Half the Truth is Often a Great Lie”: Deep Fakes, Open Source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1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Unbound 250, 252.

15) Maksutov, Artem A., Morozov, Viacheslav O., Lavrenov, Aleksander A. & Smirnov, Alexander S. (2020). 2020 IEEE Conference of Russian Young Researcher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IConRus), 408-411.

16) 심층학습이란 인간에 의한 자료의 입력(input)이나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가리킨다. 심층학습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망을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다. Marr, Bernard. (2018). What is deep Learning AI?, A Simple Guide with 8 Practical Examples, Forbes, URL: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8/10/01/what-is-deep-learning-ai-a-simple-guide-with-8-practical-examples/?sh=330bb8a58d4b>.

또한, 심층학습은 컴퓨터가 다양한 훈련사례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한 임무 수행 방법을 학습하는 일종의 기계학습 방식이다. Larry Hardesty. (2017). Explained: Neural networks, MIT News, URL: <https://news.mit.edu/2017/explained-neural-networks-deep-learning-0414>.

해서 비판적 피드백을 제공하다가 더는 가짜로 판별하지 않는 단계에 이를 때 최종적인 결과물이 된다.¹⁷⁾ 심층학습 과정에서 GAN의 생성자와 판별자가 랜덤의 원본 데이터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어서 생성된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인지를 판별하고, 판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더 진짜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판별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철학적 논증 과정인 정(正), 반(反), 합(合)의 변증법 양상과도 유사하다.¹⁸⁾ 변증법적인 결과물 생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결과물은 그 완성도가 매우 정밀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딥페이크 영상의 내용이나 상황을 통해 그 진위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결과물은 그 진위를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의 딥페이크 기술은 비디오 영상에 유명인의 얼굴을 추가하는 정도이었지만,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이전보다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컴퓨터나 간단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만으로 누구나 진짜와 쉽게 구별이 어려운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 자체보다는 어떤 영역에 무엇을 위해 적용되고 얼마나 정교하게 결과물을 도출하는지가 관건이다.

17) Guarnera, Luca, Giudice, Oliver & Battiato, Sebastiano (2020). Deepfake detection by analyzing convolutional traces.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Workshops 2020, 666-667.

18) 변증법의 목적은 사물의 존재와 움직임을 반대개념과 연결하여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개념을 GAN에 적용하면 생성자의 결과물에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고 가짜를 진짜와 연결하여 진짜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 양상

GAN 기술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특성상 영상 및 미디어 산업, 가상현실, 의료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특수효과나 얼굴 편집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잠재력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다. GAN을 기반으로 하는 딥페이크 기술은 기존의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 CG)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고 이미지를 고품질화하며 영상을 고화질화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사진에 연못을 추가하기도 하고 촬영 시간을 밤이나 저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¹⁹⁾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질병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배우의 목소리를 대신하거나 미 편집본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목소리를 생성하기도 하고 사망한 인물을 영화에 등장시키거나 특수한 효과로 정교하게 얼굴을 편집할 뿐만 아니라 연설자의 연설 통역과 함께 시각적으로 연설자의 입 모양을 수정하여,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동시에 각자 자신의 언어로 연설을 시청하게 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²⁰⁾

딥페이크 기술 이전에도 영상 간 변환 기법(Image-to-image translation)은 오랫동안 연구됐고, 종전에는 수동이나 반자동적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나²¹⁾ 딥페이크 기술의 활성화로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게 되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수행되었던 시각 효과(visual effects; VFX) 작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구현이 어려운 영상도 새롭게 구현해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이나 비용, 제작 환경에 의한 제한을 적게 받으면서 영상의 완성도는 높이게 되었다.

19) 황솔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는 ‘진짜’일까? URL: https://www.samsungds.com/kr/insights/220720deepfake_4.html

20) Westerlund, Mika (2019). The Emergence of Deepfake Technology : A Review, 9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39, 41.

21) Rafael C Gonzalez and Richard E Woods. Image proces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2, 2007.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와 구별되지 않는 많은 이미지를 합성하여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한다.²²⁾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MRI), 엑스레이(X-Ray) 자료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암, 질병, 이상 징후를 발견하도록 훈련된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하여 질병과 관련한 충분한 양의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GAN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분야 인공지능의 딥러닝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합성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²³⁾ 딥페이크 GAN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적은 분량의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되어²⁴⁾ 의료 부문 인공지능 딥러닝의 훈련을 돕는 등 의료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나 소리는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등에 악용되기도 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이 파괴적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다.²⁵⁾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가짜 음성이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파괴적 이용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2) 김보라·권오연 (2020).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 의료데이터” : GAN 기술 중심으로. <보건산업브리프>, Vol. 315.

23) Hao, Karen (2019). A new way to use the AI behind deepfakes could improve cancer diagnosis.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19/07/05/134286/ai-deepfakes-gans-medical-cancer-diagnosis/>.

24) 이미 수년 전에 대상 인물의 사진과 음성 파일만으로도 ‘가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가 있었다. Chung, JS, Jamaludin, A, & Zisserman, A (2017). You said that? Oxford: University of Oxford. 이 연구에 의하면 사진 한 장만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여 대상이 인식하지 못하게 사진을 입수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합성이 가능하다.

25) Chesney, Robert & Citron, Danielle Keats (2019).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alifornia Law Review, 107, 1753.

4. 딥페이크 확산의 문제점

딥페이크 기술은 온라인에서 기술 시현이나 풍자(satire), 밈(meme),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기만(deception) 등에 활용되는데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고 진위 분별이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 상호작용이나 인증 서비스에서 얼굴은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에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국가 보안을 위협하기도 한다.²⁶⁾ 국가안보 및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만 목적의 이용은 특히 우려되는 측면으로²⁷⁾ 조작된 영상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결과를 바꾸거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²⁸⁾ 딥페이크에 의한 선동적인 주장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사이버보안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²⁹⁾

또한, 딥페이크 기술로 인하여, 허위조작정보와의 구별에서 사실임이 검증된 정보도 그 진위가 의심되기도 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초상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소통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허위 영상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영상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신뢰성의 약화나 상실은 소통을 약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소통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통이 왜곡될

26) Shahzad, Hina Fatima, Rustam, Furqan, Flores, Emmanuel Soriano, Mazón, Juan Luis Vidal, Diez, Isabel de la Torre & Ashraf, Imran, A Review of Image Processing Techniques for Deepfakes, Sensors 2022, 22, 4556. p 2. URL: <https://doi.org/10.3390/s22124556>.

27) 박준·조영호 (2019). 앞의 논문, 724.

28) 위의 논문, 724.

29) Westerlund, Mika (2019). The Emergence of Deepfake Technology : A Review, 9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39, 40.

수 있다. 소통의 왜곡은 가짜뉴스의 등장과 혐오표현 및 이미지 왜곡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미지 왜곡은 딥페이크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³⁰⁾

인간의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생성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에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인 대중은 허위사실 그대로를 수용하고 타인과 공유하기도 하여 허위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할 수 있다.³¹⁾ 이렇듯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는 비교적 빠르게 전파되는데, 한번 잘못 인식된 사실을 다시 바로잡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오늘날 SNS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의 수신 및 발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질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해서도 단기간에 여론 형성이 가능하므로³²⁾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하다.

30) 양천수 (2022).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인간연구>, 제46호, 58.

31) 2021년 러시아의 이동통신회사 메가폰(MegaFon)은 실어증으로 은퇴한 할리우드 배우 월터 브루스 윌리스(Walter Bruce Willis)가 등장하여 폭탄 실린 요트에 묶인 채 러시아 억양을 섞어 “미시시피”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광고를 내보냈다. 메가폰 광고에 등장한 브루스 윌리스의 초상권을 러시아의 딥페이크 회사인 딥케이크가 사들였다고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The Telegraph)가 보도하자 브루스 윌리스의 대변인은 영국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딥케이크와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있다. 브루스 윌리스가 광고에…은퇴·작고 배우도 신작 출연 ‘딥페이크 논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ttp://heri.kr/index.php?mid=heri&document_srl=978126

32) 박주일 (2020).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위협 - 이미지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상 팩트체크 필요성. <언론중재>, 156권, 62.

Ⅲ.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초상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법적 쟁점

1.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연구현황

딥페이크 기술이 긍정적으로나 건설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용되거나 범죄와 관련될 경우, 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주로 형법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됐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형법 분야의 연구로서,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김두상, 202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법개정론 - 2차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정당한 균형 검토(김한균, 2025),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안(이경열·송승헌, 2025) 등이 있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배상균, 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배상균, 2019), 인공지능(AI)·딥페이크 생성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구(박준우, 2024),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연구(김재현, 2021), 딥페이크 합성물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장우정·김주찬, 2020),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형사법적 수용문제 -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를 중심으로 - (장우정·김주찬, 2020), 이슈관심 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김명훈·이상진, 2020),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신성원, 2023),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처벌(송창훈·도성용, 2024),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장응혁, 202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류부곤, 2024),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염건웅, 2024),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강주영, 홍준호, 2024), 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 (주현경),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법정정책적 시사점 - 외국의 법정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 (김희정),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김수아, 2024),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형사법적 문제와 대응방향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음란물을 중심으로 - (류부곤), 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김호기, 2024) 등 형사법적 연구가 진행됐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과 민사책임(석지윤, 2024),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가짜 동영상 유튜브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연구(허순철, 2022)와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선거에 이용한 경우에 대한 대응의 문제(조원용, 2022), 인공지능(AI)·딥페이크 생성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구(박준우) 등이 진행됐다.³³⁾ 반면,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인격권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딥페이크 기술이 다루는 초상과 관련한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초상권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상권의 문제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한 법적 쟁점 가운데 특히 초상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33) 딥페이크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의 형사책임 -일본의 판례 및 논의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2호; 배상근 (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 중심적으로 -.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장우정·김주찬 (2020).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국내의 입법동향과 형사법적 수용문제 -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2호; 김두상 (2021).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김재현 (2021).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제18집 1호 등의 형사법적 연구가 있다.

2. 초상권의 의의 및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딥페이크 기술은 초상이나 신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시청각 감각에 호소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초상의 이용이나 신체적 특징의 부각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생성물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에 기반하여 영상과 오디오에 다른 얼굴이나 모습을 합성하고 음성을 넣어 진짜에 가까운 사실적인 다른 영상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사람의 초상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적 문제의 하나인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된다.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 또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정의되기도 한다.³⁴⁾ 헌법재판소는, 초상권을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특징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되지 아니할 권리라고 판시하였다.³⁵⁾ 얼굴이나 신체적 형상의 이용을 둘러싸고 여러 법적 문제나 권리가 주장될 수 있지만, 초상권은 인간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와 관련한 권리로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명확한 헌법의 명문 조문이 없음에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³⁶⁾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언론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격적 가치의 하나로서 초상에 관한 권리를 들고 있어, 초상권을 인격권의 하나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인격권으

34) 안용교 (1982).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2권 2호, 10; 서울지방법원 1997. 8. 7. 97가합8022판결.

35)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2헌마652 전원합의체 결정.

36) 권영준 (2009).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제31집, 525.

로부터 초상권,³⁷⁾ 성명권,³⁸⁾ 사생활권³⁹⁾ 등의 개별적 인격권이 파생된다고 보기도 하고⁴⁰⁾ 이러한 인격권 내의 분류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⁴¹⁾ 초상권이 인격권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인격권의 하나로 분류되는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을 통해서도 그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에서 파생된 경제적 권리로서, 권리 주체의 이름, 초상(likeness), 이미지, 목소리, 정체성 등 전반적인 개인의 외형적 정체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⁴²⁾ 즉,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의 인적 속성에 관한 경제적 가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과 초상, 외형적 특징이나 정체성 자체보다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권리 및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법리와 관련이 있지만, 이름, 초상에 관한 재산적 이익과 관련하여 등장한 권리로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가 침해되어 인격권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실재 인물을 묘사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해당 인물에게 손해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름이나 초상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었고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이 도용당해도 권리를 주장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나 오늘날 경제적 이익이 관련된 이름이나 초상의 실질적인 사용은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

3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38)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39)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40) 권영준 (2009).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제31집, 525.

41) 김재형 (1999). 제1절 인격권 일반-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1집, 638-639 (권영준, 2009 재인용).

42) Toffoloni v. LFP Publ'g Grp., LLC, 572 F.3d 1201, 1205 (11 th Cir. 2009).

반에 해당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초상이나 이미지, 목소리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패러디 등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풍자 등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인격권에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파생되었고,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에서 퍼블리시티권이 파생되었으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모두 인격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⁴³⁾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프라이버시권은 독일의 인격권에서 파생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이 사생활의 권리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이 구별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이 인간의 타고난 권리를 바탕으로 한 권리라는 점에서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다. 또한, 초상권은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과 관련한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지만, 사람의 초상과 관련한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되어 해석이나 적용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진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을 통해 보호되지 않는 경제적, 상업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을 통해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의 빈틈이 채워진다고 보인다. 요컨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각각 인격권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면서 초상 등 정체성의 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이고 두 권리가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서 두 권리를 적용함으로써 초상과 관련하여 거의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

43) 양천수 (2011).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3호, 11-12.

3. 딥페이크와 표현의 자유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제작된 이미지나 영상은 일차적으로는 초상권이 문제가 되고 초상권의 문제는 다른 권리와 충돌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과거의 인물이나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물을 생성해 내기도 한다. 이 경우 딥페이크 기술은 창작의 방편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재현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딥페이크 생성물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허위사실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도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⁴⁴⁾ 미국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허위사실의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으나⁴⁵⁾ 허위사실의 표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⁴⁶⁾ 의도적인 거짓말은 이미 확정된 거짓의 상황을 알고 발언하는 것이고, 후에 상황이 변화하여 거짓의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짓말을 발언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 그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될 뿐이므로, 참과 거짓의 가치 판단이 결부되는 상황에서의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및 의사에 적용이 되었으나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의 제공도 국민의 의사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표

44) 허순철(2022). 유튜브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허위사실공포.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31.

45)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0, (1974);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 U.S. 46, 52 (1988); Brown v. Hartlage, 456 U.S. 45, 60-61 (1982); Virginia B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Inc. 371 U.S. 447, 464 (1963);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75 (1964).

46) United States v. Alvarez, 567 U.S. 709 (2012).

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데, 이때의 정보는 진실의 정보를 전제로 하고 허위의 정보는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왜곡시키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⁴⁷⁾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또는 조직적 사실의 은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어지던 것이 허위로 밝혀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표현 자체를 절대적인 악으로 분류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⁸⁾ 헌법재판소 판시의 의미는, 진실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내용이 나중에 허위의 내용으로 밝혀지거나 허위라고 믿어지던 것이 나중에 진실한 것이라고 밝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에 진실이나 허위로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거짓 또는 진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거짓인 표현 자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표현을 무조건 보호한다는 것은 마치 타인에게 해가 되는지를 막론하고 사회에서 어떠한 행동이든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사회적으로 제재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또는 거짓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권의 서열이나 이익형량을 고려하더라도, 진실하지 않은 거짓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보다 우위에 있기는 어렵다. 현재 거짓으로 판단될뿐더러 나중에도 확실한 거짓의 내용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다면,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보여주는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존엄한 가치 존중과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에 조화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확정된 허위사실의 가치가 진실된 표현과 같은 가치 수준에서 다

47) 문재완 (2011).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134-136.

48)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루어져, 명확하게 거짓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근거 조항인 헌법 제21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표현의 제한 사항인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보호는 중대한 상황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것인데, 사소한 거짓말이나 허위의 사실은 그 자체로는 중대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거짓말들이 누적되거나 확산하거나 확대된다면 결국 사회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사소한 거짓말과 중대한 거짓말의 경계를 나누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짓말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이 특정한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며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에서 의미하는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⁹⁾ 즉, 내용이 사회윤리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하지 않는지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인 표현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인 상태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허위사실이 후에 진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고, 윤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표현의 자유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확한 허위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한다고 본다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특정 인물의 왜곡된 이미지, 즉,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사실이 아닌 이미지나 영상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49)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범위에 속하기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딥페이크 규제법에 따르면 풍자나 패러디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⁵⁰⁾ 이 법에서는 중대하게 허위인 악의적인 오디오나 영상을 배포하여 선거 후보자의 평판을 손상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거나 반대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⁵¹⁾ 패러디나 풍자를 표현하는 딥페이크 생성물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하지만, 특정인을 가리키는 악의적인 가짜 오디오나 영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고 배포도 금하기 위한 것이다. 풍자나 패러디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악의적인 가짜 이미지에 의한 패러디 또는 풍자는 이미 허위사실이고 이러한 허위사실의 표현을 보호한다면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의도적인 거짓의 내용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하는데⁵²⁾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하여 풍자나 패러디가 허용될 수는 있으나 의도적인 악의적 거짓 내용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왜곡하여 생성된 이미지는 아직 그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이미지의 생성 및 변형 단계에서부터 허위사실을 생성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허위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생성된 이미지가 허위인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로 왜곡되거나 변형된 특정 인물의 이미지나 영상은 명확하게 허위임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이미지나 영상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가짜 이미지나 영상에 사용된 초상권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딥페이크 결과물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0) Cal. Elec. Code § 20010(d)(5).

51) Cal. Elec. Code § 20010(a).

52) 허순철(2022). 유튜브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허위사실공포.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31.

4.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

오늘날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특히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창작 및 인류의 진보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기 어려운 표현을 생산할 수 있다. 비록 책임을 의식하고 표현하는 경우라도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다른 권리들이 침해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 초상권과 대립하는 대표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하는 헌법의 수준에서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초상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보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는 일종의 사회조직원리라고 볼 수 있어서⁵³⁾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이나 충돌은 해결이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쉽게 제한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에 대한 책임은 권리만큼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⁵⁴⁾ 책임을 무시하거나 망각한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초상권과 같은 권리가 침해되기도 하고 책임을 의식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표현도 초상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점이나 충돌의 해결점을 명확하게 찾기 쉽지 않다.

53) 박경신 (2012).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89.

54) 언론 등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잘못된 보도나 거짓 정보에 대한 정정 보도나 사과문을 내는 등의 사후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후적으로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내더라도 독자에게 충분히 사과문이 전달되도록 조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각국에서 대부분 중요하게 보호되는데,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에서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법을 제정하기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국가의 하나이다. 각 사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법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여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⁵⁵⁾

독일의 경우 인간 존엄을 중요한 가치로 보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은 인격권을 일신전속적 권리로 인정하는데⁵⁶⁾ 일신전속적인 인격권 가운데 하나인 초상권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초상권 보호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예술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⁵⁷⁾ 제22조⁵⁸⁾와 제23조⁵⁹⁾에서 초상을 공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

55) Time, Inc. v. Hill, 385 U.S. 374, 87 S.Ct. 534, 17 L.Ed.2d 456, 1 Media L. Rep. 1791 (1967).

56) 권상로 (2010).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7권 제3호, 94.

57)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58) § 22 Bildnisse dürfen nur mit Einwilligung des Abgebildeten verbreitet oder öffentlich zur Schau gestellt werden. Die Einwilligung gilt im Zweifel als erteilt, wenn der Abgebildete dafür, daß er sich abbilden ließ, eine Entlohnung erhielt...(생략)

59) § 23

(1) Ohne die nach § 22 erforderliche Einwilligung dürfen verbreitet und zur Schau gestellt werden:

1. Bildnisse aus dem Bereiche der Zeitgeschichte;
2. Bilder, auf denen die Personen nur als Beiwerk neben einer Landschaft oder sonstigen Örtlichkeit erscheinen;
3. Bilder von Versammlungen, Aufzügen und ähnlichen Vorgängen, an denen die dargestellten Personen teilgenommen haben;
4. Bildnisse, die nicht auf Bestellung angefertigt sind, sofern die Verbreitung oder Schaustellung einem höheren Interesse der Kunst dient.

(2) Die Befugnis erstreckt sich jedoch nicht auf eine Verbreitung und Schaustellung, durch die ein berechtigtes Interesse des Abgebildeten oder, falls dieser verstorben ist, seiner Angehörigen verletzt wird.

는 등 초상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제22조에 의하면, 초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초상 인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제23조에 의하면, 공개적인 행사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초상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초상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초상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판례도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이 충돌하는 경우 초상권 보호 요건이 충족된다면 표현의 자유보다 초상권이 우선하여 보호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 사안별로 초상이용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⁶⁰⁾ 일률적으로 초상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초상권이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여 보호된다.

한국의 경우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각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확인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초상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해석된다.⁶¹⁾ 또한, 한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다른 권리들보다 반드시 우선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21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여(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다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초상권이 침해될 수 없고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60) 유인근·홍선기 (2024).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에 관한 소고 - 독일 초상권 법리와 유럽인권법원 Bild GmbH & Co. KG v. Germany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46호, 224.

61) 권영준 (2009).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제31집, 525.

한편, 초상권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 경우,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적 인물의 초상이 사용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 의한 것이고 중대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의 지위에서 사진의 노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가 사진의 노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크거나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⁶²⁾ 또한, 개인의 사생활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공개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⁶³⁾ 딥페이크 결과물에 적용하면, 딥페이크 영상이 공적 인물에 관한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초상의 주체가 공적 인물인 경우라도 해당 인물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이미지는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 공개와는 구별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

요컨대 국내법은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호하고 양 권리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여 보호될 수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여 보호할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공적 인물과 관련한 것으로 공공이익과 관련이 깊은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고, 공적 인물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상황에서는 초상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내용이 아닌 이미지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문제에서는 초상권이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인물과 관련한 경우라도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의도를 가진 허위 결과물에 대해

6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54047 판결.

6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내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나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는 가치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요건이 아니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행복한 생활 등이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서 초상권의 보호 가치가 앞설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현실에서 재현하거나 생성하기 어려운 이미지나 영상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제의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생성해 낼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성이 있으나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활용으로 인하여 대중의 부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딥페이크 결과물은 주로 인간의 시각적 감각에 호소하여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성과 감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합성되고 제작된 이미지나 영상이 정교할수록 진짜와 구별이 어려운 가짜 이미지에 의한 영향력은 더욱 크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하여 생성되는 이미지나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와 관련한 이미지가 종종 등장한다는 점에서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딥페이크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고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된다. 국내의 경우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모두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초상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나 공적 인물과 관련된 경우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수 있고, 공적 인물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초상권이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딥페이크 결과물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초상권이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문제의 해결 기준이 제시된다고 해도, 딥페이크 결과물을 판별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 인력 및 법조 인력이 부족하고, 딥페이크 기술은 날로 정밀해지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은 감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초상권의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딥페이크 결과물과 관련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초상권이 인권이라는 인식의 부족이 있다고 보인다. 초상권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핵심이고 일차적인 권리이다.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초상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향유하는 근원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초상권이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관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문제의 또 다른 배경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전제된다는 인식의 부족이라고 보인다. 현재 딥페이크 기술이 일부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누구나 딥페이크 결과물 생성이 가능하고 대중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대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딥페이크 기술이 일부 전문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딥페이크 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딥페이크 규제를 전문 인력만의 책임으로 국한하기보다 딥페이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인공지능에 의한 딥페이크 기술의 다양한 활성화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가 제기되지만, 초상권이 중요한 인권이라는 인식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간 충돌문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하여서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허위내용의 표현은 엄밀히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요컨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초상권의 침해가 인권의 침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대중적 책임이 인식됨으로써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환경의 정화가 필요하다.⁶⁴⁾ 이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초상권 등의 권리 침해 이후의 분쟁 해결에 주력하기보다는 사전에 침해를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딥페이크 기술의 선택 및 딥페이크 환경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64)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계몽이 부족하였던 시기에는 표절이나 무단복사 등 저작권 침해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그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적극적인 계몽과 교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상당한 부분 자율적으로 저작권법이 준수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강주영·홍준호 (2024).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113-138.
- 권상로 (2010).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7권 제3호, 81-101.
- 권영준 (2009).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제31집, 519-565.
- 김두상 (2021).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57-74.
- 김명훈·이상진 (2020). 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7-40.
- 김수아 (2024).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3호, 187-224.
- 김재현 (2021).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43-276.
- 김한균 (2025).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법개정론 - 2차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정당한 균형 검토 -. <형사정책>, 제36권 제4호, 215-240.
- 김호기 (2024). 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서울법학>, 제32권 제3호, 143-183.
- 김희정 (2024).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증범죄에 대한 범정책적 시사점 - 외국의 범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제48권 제2호, 49-84.
- 류부곤 (202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3호, 29-56.
- _____ (202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3호, 29-56.
- _____ (2024).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형사법적 문제와 대응방향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음란물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125-166.

- 문재완 (2011).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113-142.
- 박경신 (2012).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87-121.
- 박주일 (2020).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위협 - 이미지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상 팩트체크 필요성. <언론중재>, 156권, 52-69.
- 박준·조영호 (2019). 딥페이크 영상 탐지 관련 기술 동향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724-726.
- 박준우 (2024). 인공지능(AI)·딥페이크 생성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구. <산업재산권>, 제79호, 315-354.
- 배상균 (2019).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169-187.
- 석지윤 (2024).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과 민사책임. <연세법학>, 제46호, 269-303.
- 송창훈, 도성용 (2025). 국내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 발전 방향.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제11권 제2호, 447-460.
- 안용교 (1982).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2권 2호, 1-11.
- 양천수 (2022).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인간연구>, 제46호, 37-75.
- _____ (2011).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3호, 11-12.
- 염건웅 (2024).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35-66.
- 왕소영·김성철 (2011). K-pop 아이돌의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연구. 22-02 Vol.47 No.02, 375-386.
- 유인근·홍선기 (2024).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에 관한 소고 - 독일 초상권 법리와 유럽인권법원 Bild GmbH & Co. KG v. Germany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46호, 209-245.
- 이경열·송승현, (2025),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안. <입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59-90.
- 장우정·김주찬 (2020).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국내의 입법동향과 형사법

- 적 수용문제 -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ography)를 중심으로 - .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2호, 273-306.
- 장응혁 (2042).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3호, 5-24.
- 주현경 (2024). 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 <가천법학>, 제17권 제3호, 261-306.
- 조원용 (2022).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악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공법연구>, 제50집 제3호, 153-187.
- 최종선 (2020).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1권 1호, 363-391.
- 허순철 (2022). 유튜브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허위사실공표.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1-47.
- 황솔비 (2022).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는 '진짜'일까? URL: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220720deepfake_4.html
- Chesney, Robert & Citron, Danielle Keats (2019).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alifornia Law Review*, 107, 1753-1820.
- Hao, Karen (2019). A new way to use the AI behind deepfakes could improve cancer diagnosis. URL: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19/07/05/134286/ai-deepfakes-gans-medical-cancer-diagnosis/>.
- Delfino, Rebecca A. (2019). Pornographic Deepfakes: The Case for Federal Criminalization of Revenge Porn's Next Tragic Act, *Fordham Law Review*, 88, 887-938.
- Hasan, Haya R. & Salah, Khaled. (2019). Combating Deepfake Videos Using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IEEE Access*, 74, 41606-41606. URL: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8668407>.
- Gonzalez, Rafael C & Woods, Richard E. *Image proces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3rd edition. 1-976.
- Goodfellow, Ian, Pouget-Abadie, Jean, Mirza, Mehdi, Xu, Bing, Warde-Farley, David, Ozair, Sherjil, Courville, Aaron, Bengio, Yoshua (2014). Generative Adversarial Net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IPS*, 2672-2680. URL: <https://proceedings.neurips.cc/paper/2014/file/5ca3e9b12>

2f61f8f06494c97b1afccf3-Paper.pdf

- Guarnera, Luca, Giudice, Oliver & Battiato, Sebastiano (2020). Deepfake detection by analyzing convolutional traces.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Workshops*, 2841–2850.
- Karras, Tero, Laine, Samuli & Aila, Timo (2019). A style-based generator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4401–4410.
- Koeniga, Alexa. (2019). “Half the Truth is Often a Great Lie”: Deep Fakes, Open Source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1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Unbound* 250–255.
- Maksutov, Artem A., Morozov, Viacheslav O., Lavrenov, Aleksander A. & Smirnov, Alexander S. (2020). *IEEE Conference of Russian Young Researcher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IConRus)*, pp. 408–411, doi: 10.1109/EIConRus49466.2020.9039057.
- Marr, Bernard. (2018). What is deep Learning AI?, A Simple Guide with 8 Practical Examples, *Forbes*, URL: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8/10/01/what-is-deep-learning-ai-a-simple-guide-with-8-practical-examples/?sh=330bb8a58d4b>.
- Porup, J. M. (2021). How and why deepfake videos work—and what s at risk, *CSO*, URL: <https://www.csoonline.com/article/3293002/deepfake-videos-how-and-why-they-work.html>.
- Ramsey, Lisa P. (200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vertising.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12, 188–263.
- Shahzad, Hina Fatima, Rustam, Furqan, Flores, Emmanuel Soriano, Mazón, Juan Luís Vidal, Diez, Isabel de la Torre & Ashraf, Imran. (2022). A Review of Image Processing Techniques for Deepfakes, *Sensors*, 22(12). URL: <https://doi.org/10.3390/s22124556>.
- Westerlund, Milka (2019). The Emergence of Deepfake Technology : A Review,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9(11), 39–52.
- Zucconi, Alan. (2018). Understanding the Technology Behind DeepFakes. URL: <https://www.alanzucconi.com/2018/03/14/understanding-the-technology-behind-deepfakes/>

ABSTRACT

Examining Personal Rights Violations Due to Deepfake Technology

- A Focus on Portrait Rights -

Roh, Hyeon Sook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KU Glocal Innovation,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Deepfake technology, which can generate images through the deep learning sub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ful in various fields. However, owing to its negative application, it may lead to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including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nd infringement of author's moral rights. Deepfake technology primarily raises portrait rights issues by creating misleading images of human likenesses. However, protecting these rights may limit freedom of expression if deepfake generation is restricted. Both portrait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but their relative importanc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us, different judgments may be made regarding which right to prioritize in each case. While the United States places a high value on freedom of expression, domestic law seems to require different judg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 case involves public interest, truthfulness, or falsity. Portrait rights are grounded in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hereas freedom of expression is based on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and is limited

only when i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or social order. In cases involving deepfake technology, freedom of expression may take precedence over portrait rights when the images involve public figures based on factual contents or representation of past events. However, deepfake content that deals with false information about non-public figures or public figures may 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thus, in such cases, portrait rights can be prioritized. To alleviat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ortrait and freedom of expression,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that the right to one's image is a human right and that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exercised with responsibility.

Keywords: deepfake technology, AI(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false information, personal rights, portrait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논문투고일 2025. 03. 04. 논문수정일 2025. 03. 26. 게재확정일 2025. 03. 28.]

언론인의 번아웃과 대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구 문 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박사

유 영 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언론인들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 특징과 대처 방법에 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언론사에 재직 중인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언론인 중, 번아웃을 경험한 14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개방코딩에서 총 168개의 개념, 40개의 하위 범주, 21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의 특징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한 결과, 자기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번아웃 정도가 심각했고, 대처 방법이 부족할수록 회복 수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언론인들은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 번아웃을 극복했고, 회복 결과 부정적 자기 인식이 개선되고,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은 크게 ‘직업공지형’, ‘대안모색형’, ‘인정추구형’, ‘고군분투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번아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들과 달리, 언론인 번아웃의 대처 방법 및 회복 경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제1저자: moonsunny@naver.com

*** 공동저자: you@yonsei.ac.kr

**** 교신저자: jjlee@hanyang.ac.kr

험에 대해 실제적인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언론인들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혔고,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내적 상태와 대처 방법에 따라 번아웃과 회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언론인의 번아웃, 번아웃 회복 전략, 번아웃 회복 경험, 번아웃 대처 방법, 근거 이론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1. 번아웃과 회복
 - 2. 언론인의 번아웃과 대처 방법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 2. 자료 수집
 - 3. 자료 분석
 - 4. 연구 절차와 결과에 대한 타당성 평가
- IV. 연구 결과
 - 1.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 자료의 범주화
 -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 3. 유형분석
- V. 결론 및 논의

I. 서론

최근 ‘언론계 엑소더스’로 불릴 만큼 언론인들의 이직 현상이 급증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곽희양, 2022, 10, 6).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4.0%가 이직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72.7%에서 1.3%p 상승한 것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언론인들은 이러한 이직 의도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급여 수준, 워라벨 미보장, 불투명한 미래, 기자로서의 명예 실추 등을 지목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번아웃이 겹칠 때는 많은 언론인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희양, 2022, 10, 6). 또한 번아웃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직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나오고 있다(김동률, 2009; 안차수, 2020; 정재민·김영주, 2011).

업무적 특성상 언론인은 마감 시간에 대한 긴장, 사건의 예측 불가능성, 취재 및 기사 작성에서의 민감성, 내·외적 통제와 갈등, 오보와 책임 등 다양한 압박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차수·이건혁, 2020; 정승호, 2019; 정재민·김영주, 2011; Reinardy, 2009). 실제로 언론인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겪는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직업적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김종인, 2010; 안차수·이건혁, 2020; 정승호, 2019). 더욱이 디지털 혁명으로 언론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언론계는 종이신문 구독자의 감소에 따른 매체로서의 경쟁력 약화, 종이신문의 독점적 지위 상실, 광고 시장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 그리고 기사 품질에 대한 독자의 만족도 하락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유용민, 2021; 이상기·이정민, 2020; 이석호·이오현, 2019). 여기에 존경과 지탄을 동시에 받는 직업적 위상의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언론인들이 감수해야 할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번아웃을 질병 표준분류기준(ICD-11)에 포함하며 ‘평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정의하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간주했다(WHO, 2019). 언론인들 역시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번아웃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결과, 이직은 물론이고, 언론인 개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직업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측면과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전오열, 2016). 나아가 이는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업무의 질 저하, 생산량 감소, 정확성 저하, 조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논평과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약화하며, 신문사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저널리즘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진보래, 2021). 따라서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 및 공공의 이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승호, 2019; Reinardy, 2006).

지금까지 언론인의 번아웃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양적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번아웃과 관련된 근무환경, 번아웃 예측요인, 직업 만족도와 직무 인식, 조직의 지원 수준, 운동이나 음악 감상 등의 번아웃 대처 방법 등과 번아웃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번아웃의 원인, 대처 방법, 그리고 결과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동률, 2006; 박상영·조성제, 2015; 박생규·조성제, 2013; 백강희, 2019; 안차수·이건혁, 2020; 장해순·김창남, 2010; 전오열, 2016; 정승호, 2019; 정재민·김영주, 2011; 진보래, 2021; Cook & Banks, 1993; Endres, 1988).

이러한 연구들은 언론인이 경험하는 번아웃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번아웃과 회복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나, 번아웃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최근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번아웃 연구들은 개인이 번아웃을 겪을 때 그 상태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류승민, 2019; 엄광진, 2022; 최혜윤, 2015; 최희아, 2017; 황순옥, 2020). 다만, 이러한 회복에 이르는 요인 즉, 번아웃 대처 방법과 회복 후 양상은 잘 드러나고 있지만, 언론인의 번아웃 회복을 탐색한 연구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론인에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번아웃 증상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인들의 번아웃 및 회복 경험을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분석하여, 언론인들이 자신의 직업 현실 속에서 번아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대처 방법을 사용하여 회복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번아웃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언론인들의 번아웃과 번아웃 회복 경험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언론인들의 번아웃 원인과 대처 방법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검토

1. 번아웃과 회복

프로이텐버거(Freudenberger)가 1974년 번아웃(burnout)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을 당시, 이는 학문적인 개념보다는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용어에 가까웠다. 이후 1980년대에 매슬랙(Maslach)이 번아웃을 평가하는 도구인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번아웃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Maslach & Jackson, 1981; Maslach & Leiter, 2008). 그로부터 50여 년 동안 다수의 학자가 번아웃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용어는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번아웃이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유발하는 업무 환경에서 비롯된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학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임상 번아웃(clinical burnout)은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하는 의학적 질병으로 간주된다(Brenner, 2020; Maslach & Goldberg, 1998; Savicki & Cooley, 1983).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번아웃의 정의는 MBI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차원을 개념으로 포함하며, ‘고갈과 냉소주의(또는 비인간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또는 효능감) 저하’의 세 가지 주요 증상으로 구성된 업무 관련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이해된다(Maslach et al., 2001). 여기서 고갈(exhaustion)이란 신체적으로는 피로와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는 부정적 감정과 함께 지친 느낌의 소진된 상태이다(Brenner,

2020; Maslach et al., 2001). 번아웃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고갈과 번아웃을 동일시하기도 했으나(Leiter, 1989), 이후 연구는 고갈만으로 번아웃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Leiter & Maslach, 2016). 이는 업무량이 많아 피로감을 느낄 때 이를 번아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피로감이 번아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냉소(cynicism) 또는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란 동료, 고객, 업무, 나아가 조직 전체를 물건이나 숫자처럼 여기며 거리감을 두거나 부정적이고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Brenner, 2020; Maslach & Goldberg, 1998). 한편, 개인적 성취감 저하(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또는 효능감 저하(professional inefficacy)는 자기 평가와 연관된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Maslach & Goldberg, 1998).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된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업무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박해경, 2020; Brenner, 2020; Maslach & Jackson, 1981).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거나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질 수 있다(Leiter, 1989). 그 결과 일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며, 이에 따라 업무 자체에 대해 무의미함을 느낄 수 있다(Maslach & Jackson, 1981). 국내에서 수행된 질적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의욕을 잃고 무기력함과 함께 분노나 좌절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으며, 다양한 신체적 문제, 업무에 대한 회의감, 조직에 대한 불만의 증가를 호소했다. 더불어 이들은 이직 또는 퇴사를 고려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류승민, 2019; 최혜윤, 2015; 황순옥, 2020).

이처럼 번아웃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번아웃의 개념, 증상, 번아웃 과정(Freudenberger, 1975; Golembiewski & Munzenrider, 1984; Maslach et al., 2001)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왔다. 이때 번아웃의 원인으로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고려되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이 주로 논의되었고, 직무 특성이나 조직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Arble et al., 2021). 개인의 성격적 요인에는 A형 성격유형(이영만, 2016), 외부 통제소재와 회피적 대처 방법(Maslach et al., 2001), 완벽주의 성향 및 인정 욕구(Schaufeli, 2003), 낮은 자기위로 능력(문동규, 2018; Maslach et al., 2001)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매슬랙과 잭슨(Maslach & Jackson, 1981)은 여섯 가지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업무 과다, 통제력 결핍, 보상 체계의 부족(예: 보수 및 인정 부족), 일의 의미 상실,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조직 내 공동체의 분열 및 가치관 갈등을 포함한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 특성보다 번아웃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박수정 외, 2018).

이처럼 번아웃에 관한 연구는 1974년부터 시작된 반면, 회복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뒤늦은 1990년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초기 번아웃 연구에서는 번아웃 상태를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단 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해 번아웃으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회복의 징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기능이 번아웃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며(Sonnentag & Fritz, 2007), 다른 하나는 번아웃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성장하여 인간적 성숙과 직업인으로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최혜윤·김은하·차지숙, 2017; 황순옥, 2020).

이는 번아웃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번아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번아웃 회복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회복 촉진 요인, 대처 전략, 회복 과정, 회복 후의 양상, 그리고 회복을 위한 개입 방안 등에 대해 다루어 왔다. 특히 회복 촉진 요인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개인 내면의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이나 자기 위로와 같은 긍정적 심리 자원(이승희, 2019), 자

기 성찰과 회복을 향한 강한 의지(최혜윤, 2015)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내적 자원은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번아웃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업무로부터 심리적 거리 두기, 전문성을 강화하는 활동,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최혜윤, 2015; 최희아, 2017; Bernier, 1998; Salminen et al., 2017; Regedanz, 2008). 이 외에도 이직, 부서 이동, 상사로부터의 독립 등 직무 환경의 변화 또한 회복을 돕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최혜윤, 2015; Bernier, 1998; Regedanz, 2008).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과정과 경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질적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베르니에르(Bernier, 1998)의 연구가 있다. 그는 병가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한 전문직 종사자 20명을 심층 면담하여 번아웃의 회복 과정을 밝혔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인정’으로, 개인이 번아웃을 자각하고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퇴직, 휴직, 휴가 등을 통해 업무에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일로부터 거리 두기’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는 심신의 안정을 꾀하는 신체적 휴식을 ‘건강 회복’ 과정으로 정의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다섯 번째 단계인 ‘직업 가능성의 탐색’에서는 새롭게 정립된 가치관에 부합하는 직무나 조건을 탐구하며, 마지막 ‘관점 변화’ 단계에서는 현재 직무 조건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거나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업을 찾는 것이다(Bernier, 1998).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번아웃 회복 관련 연구에 따르면, 놀이치료사, 교사, 상담자 등의 경우 번아웃 상태로 인해 기능 저하를 경험했으나, 자신의 번아웃 상태를 자각하고, 직무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점차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전문성 향상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으며 회복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류승민, 2019; 최혜윤 외, 2017;

허난설, 2015; 황순옥, 2020).

이런 과정과 대처 방법을 실행한 사람들은 회복 후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다. 첫째,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고 신체적 에너지가 회복되었다(최혜윤 외, 2017). 특히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최혜윤, 2015), 이는 번아웃 대처 방법을 터득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중시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류승민, 2019; 최혜윤, 2015; Regedanz, 2008). 이러한 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심리적 한계를 확장하며 인간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고했다(황순옥, 2020). 둘째로, 업무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일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했다. 또한 일을 통해 타인에게 기여하고 조직에 공헌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일에 대한 주체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최혜윤, 2015; Regedanz, 2008; Salminen et al., 2017). 이러한 변화는 업무의 질을 높이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새로운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최혜윤, 2015).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번아웃이 단순한 고통의 경험이 아닌 개인적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gedanz, 2008).

2. 언론인의 번아웃과 대처 방법

언론인의 번아웃에 관한 연구는 1988년 앙드레(Endres)에 의해 최초로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언론인 번아웃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언론인의 번아웃을 유발하는 요인, 번아웃의 결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때 번아웃의 유발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직무 특성 요인, 조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요인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연령과 성별이 번아웃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었다. 즉,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을수록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및 냉소주의, 직업 효능감 저하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전오열, 2016; 정유진·오미영, 2015; Cook & Banks, 1993; Reinardy, 2006).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냉소주의(Reinardy, 2013), 직업 효능감 저하(정재민·김영주, 2011), 정서적 고갈과 더불어 이직 및 전직 의도(안차수·이건혁, 2020), 그리고 번아웃에 대한 인식(정유진·오미영, 2015)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맥도널드 외(MacDonald et al., 2016)는 소규모 신문사에 종사하는 경력이 짧은 젊은 여성이 번아웃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직무 특성 면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김동률, 2009; 박생규·조성제, 2013; 정재민·김영주, 2011), 그리고 역할 갈등과 광고 영업 업무의 압박(진보래, 2021) 등이 번아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언론인은 직업 특성상 취재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참혹한 현장을 접해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안차수·이건혁, 2020; 이정애, 2022). 이러한 경험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언론인의 주요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배정근·하은혜·이미나, 2014; 양영은·이종현, 2023). 조직 환경적인 면에서도 경영 여건이 좋지 않고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김동률, 2006; Cook & Banks, 1993; Reinardy, 2013). 이와 함께 자율성 부재(정재민·김영주, 2011), 권위적인 조직문화(전오열, 2016; 정승호, 2019), 조직과 이념 및 정치 성향 차이(백강희, 2019) 또한 번아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직무만족도, 조직 기반 자긍심, 조직원에 대한 신뢰와 받은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은 번아웃 정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인의 번아웃 정도나 양상은 주로 MBI 척도를 활용해 측정되었다. 번아웃의 세 가지 하위 요소인 고갈, 냉소 또는 비인간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저하나 업무상 비효능감이 번아웃 원인과 어떻게 연

관되는지, 그리고 이 중 어떤 요인이 더 두드러지는지가 논의되었다. 특히, 세 요소 중에서도 정서적 고갈, 혹은 정서적 탈진으로 표현되는 ‘고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김동률, 2006, 2009; 안차수·이건혁, 2020; 전오열, 2016; 정유진·오미영, 2015; 정재민·김영주, 2011). 김동률(2006, 2009)은 냉소나 업무상 비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언론인들이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직무내 성취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더불어 번아웃이 초래하는 결과로는 직무만족도(김동률, 2009), 조직 전념(정재민·김영주, 2011), 자율성이 감소하고 이직 의사(김동률, 2009; 안차수, 202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인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그런데 언론인들이 번아웃을 회복하거나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관련된 주제로 스트레스 인식 및 대처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인들의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에 따른 인식 유형을 분석하거나(정승호, 2019), 규칙적인 운동 수행(김의진, 2003)이나 적절한 프로그램(김동률, 2006), 그리고 예술 활동(박생규·조성제, 2013) 등을 통해 언론인의 스트레스 극복과 정서적 고갈 악화 방지 가능성을 논의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운동 효과, 업무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였던 반면, 언론인의 번아웃과 그에 대한 대처 및 회복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¹⁾ 다만, 연구들은 언론인들의 번아웃이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직무 특성과 조직 환경 등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또한 확인했다.

1) 글로벌 학술논문 DB Scopus에서 2023년 11월 ‘journalists’ AND ‘burnout’을 키워드로 3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회복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했다. 첫째, 현재 국내 언론사에 근무 중인 기자들이다. 소속 언론사는 일반 일간신문(일간지), 경제지와 스포츠지를 포함한 특수일간신문, 뉴스 통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쿡과 बैं크스(Cook & Banks, 1993)는 언론인에 관한 연구에서, 번아웃에 취약한 사람들은 주로 경력 초기에 이직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직에 남아 있는 이들은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번아웃 회복을 연구한 베르니에르(Bernier, 1998)와 레게단츠(Regedanz, 2008)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1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번아웃과 그 회복 경험, 그리고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지속적인 현직 경험을 가진 대상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언론인으로서 근무하던 중에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이다. 회복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으로 정한 이유는 회복 경험의 다양한 양상(충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 낮은 회복 수준에 그친 사람, 번아웃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파악하여 이론적 포화를 시도하고자 함이었다. 참여자들이 번아웃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번아웃의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목적 표집으로 총 14명의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30대 5명, 40대 5명, 50대 4명이었다. 학력은 학사 2명, 석사 재학 2명, 석사 7명, 박사 재학 1명, 박사 수료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언론사 근무경력(년)은 8년에서 32년으로 평균 18년이며, 현재 서울 소재 언론사 근무 중인 연구참여자는 11명, 지방 소재 언론사에서 근무 중인 연구참여자들은 3명이다. 매체의 형태는 일반 일간신문 5명, 스포츠지와 경제지를 포함하는 특수 일간신문 5명, 뉴스 통신사 4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근무 중인 부서는 정치부 1명, 경제부 3명, 사회부 1명, 문화부 2명, 국제부 1명, 편집부 2명, 기타부서 4명이었으며, 근무 형태는 내근직 5명, 외근직 9명이었다. 직급은 부장 5명, 차장 3명, 평기자 6명이었다.²⁾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및 면담 방법

구분	성별	나이	근무경력(년)	면담 방법	면담 시간, 횟수
1	여	50대	30	대면	126분, 2회
2	남	40대	21	대면	139분, 2회
3	여	40대	12	대면	190분, 2회
4	남	50대	32	대면	117분, 2회
5	남	50대	28	대면	82분, 1회
6	여	50대	29	대면	85분, 1회
7	여	30대	11	대면	151분, 2회
8	남	30대	10	대면	165분, 2회
9	여	30대	8	비대면	60분, 1회
10	여	40대	17	비대면	124분, 2회
11	여	40대	17	대면	139분, 2회
12	여	30대	10	대면	164분, 2회
13	여	40대	16	대면	100분, 1회
14	여	30대	13	대면	142분, 2회

2) 참여자를 14명으로 정한 이유는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 중 질적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는 대개 15인 내외(최대한 2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문선, 2024).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되었고, 온라인에 모집 문건을 게시하여 이를 접한 연구참여자들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진행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 등을 자세히 안내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의 이름이나 매체, 지역, 구체적인 부서명, 기사 내용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언급된다면 축어록에도 담지 않고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가 선호하는 시간과 지역을 선택하여 주로 참여자의 사무실 혹은 인근 스터디 카페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1회 혹은 2회 면접을 시행했고, 1회 면접은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다. 질문은 ‘번아웃 상태에 있었을 때 언론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번아웃에 영향을 준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어떠한 시점, 계기, 사건을 통해 회복되었나요?’, ‘번아웃 회복에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번아웃과 회복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번아웃과 회복을 경험할 때 각각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었나요?’ 등을 중심으로 직업의 동기, 직업에서의 경험, 번아웃 및 회복 경험과 그 의미, 일에 대한 의미와 자신의 태도 등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은 주변과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개인의 행위나 사회현상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과정으로 그 의미가 생기는지에 대한 근거를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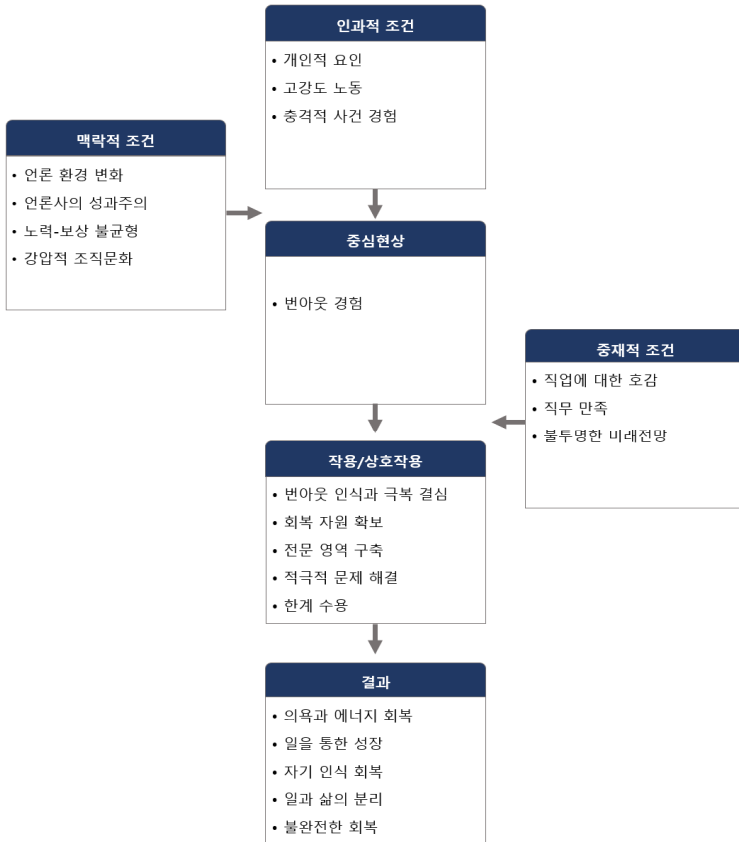
이나 모형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기웅, 2022, 21-39쪽;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들이 번아웃과 회복을 겪으며 갖게 되는 주관적 경험과 의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번아웃 경험은 다차원적인 외부 상황과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개인 내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언론인의 번아웃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개개인이 겪는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징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의 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의 연구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면접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녹취된 모든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참여자의 이야기를 축어록으로 전사했다. 먼저, 개방코딩은 수집한 자료를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지속적 질문과 비교를 통해 개별 사건이나 현상에 이름을 붙여 개념화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분석작업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한 줄씩 분석하는 줄 단위 분석으로 의미를 발견하여 요약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감정이나 뉘앙스, 의도 및 내용의 주요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참여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참여자의 진술 중 핵심 의미를 찾아 169개의 개념을 도출했다.

개념은 개별 사건이나 현상을 호칭하는 것으로 자료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행위, 상호작용 등에 추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명명하는 것을 의미한다(유기웅, 2022, 88쪽). 이후 시행된 범주화 작업에서는 원자료, 개념, 하위 범주 및 상위 범주 자료를 지속적 비교하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도출된 개념 중 유사하거나 공통 속성을 갖는 부류로 묶고 40개의 하위 범주를 형성했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번아웃 경험과 대처 그리고 회복 과정의 유사점을 중심으로 범주화했다. 이 하위 범주

들을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으로 무리 지어 다시 더 추상화된 21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으로 얻은 자료의 범주 분석을 통해 번아웃이라는 중심현상, 중심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번아웃에 대한 대응 방식과 전략을 나타내는 작용/상호작용 및 결과로 분류하고 범주 간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8)으로 제시했고,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패러다임 모형분석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도구적 존재가 되어 번아웃을 경험한 언론인이 자기를 복구하여 일에 내주었던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기’로 밝혔다. 앞서 축코딩 과정분석에서 정리한 각각의 참여자들의 번아웃과 회복 패러다임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묶었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사례별 유형화를 실시했다.

4. 연구 절차와 결과에 대한 타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 1981)이 제시한 질적연구의 평가 기준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먼저,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3명의 연구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보내고 연구 결과가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을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는지, 패러다임 모형에 제시된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패러다임 모형의 표현 중 일부를 현업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나, 그 뜻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 언어들을 추천했다. 이를 토대로 피드백해 준 내용이 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인 중 번아웃과 회복을 경험한 기자 2명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연구 결과가 의미가 있고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도록 했다.

IV. 연구 결과

1.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 자료의 범주화

연구참여자 14명과 면담한 자료를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69개의 개념과 40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2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언론인의 번아웃에서 회복까지 결과가 이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인과적 조건에는 번아웃의 원인인 개인적 요인과 언론직 직무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포함되었다. 맥락적 조건은 번아웃 경험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 등을 말하며, 이는 번아웃의 조직 환경적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원인들이 누적되며 번아웃 경험이라는 중심현상을 낳게 된다. 이때 작용/상호작용은 번아웃 대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후 극복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노력을 나타낸다. 중재적 조건은 번아웃에 대한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과는 번아웃에 대한 대처 과정, 즉 작용/상호작용의 노력으로 얻게 된 번아웃 회복 경험이다.

〈표 2〉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

개념	하위 범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를 써도 안 바뀌는 세상, 바라던 바른 세상은 꿈이었음을 깨달음 • 연차 올라갈수록 기사보다 경영과 출입처 관계 중시 • 블로거-유튜버 등이 더 각광받는 시대, 기자에 대한 명예와 존중도가 하락함 • 공공성 대신 사익 추구하는 조직에 실망 	이상의 좌절	개인적 역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하지 못하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 한 번의 사고가 용납되지 않는 데스크의 책임감 • 어렵고 힘든 기사, 나 아니면 누가 쓰나 • 일과 거리 두지 못하고 소처럼 묵묵히 일함 • 일을 계속 맡는 나는 호구인가 • 번아웃 되어도 업무에는 지장 없는 과하게 성실한 스타일 	완벽주의와 과도한 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느라 가족들과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 기자하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 • 육아 휴직 복귀 후 조직의 냉대와 조직원의 홀대 	일·가정 양립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 새로운 소재와 색다른 이슈를 죽을 각오로 찾아야 함 • 내일은 뭘 쓸까, 다음 기사 발제 고민에 머리는 설 수 없음 • 마감 시간 되면 긴장의 극치 • 휘몰아치는 속보, 퇴근 시간이 무의미한 메신저 귀신 • 기사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나의 창작물, 즉각적으로 평가됨 • 하루에 10개 넘는 기사 작성, 화장실도 못 갈 정도 • 신혼여행도 못 가게 한 직장, 휴가 중에도 기사 작성 호출 	<p>압박과 긴장 속의 기사 작성</p>	<p>직무 스트레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과 위험 지역에서 살아 돌아온 후 가슴을 쓸어내림 • 세월호와 탄핵 정국 취재로 깊은 우울감 • 쏟아지는 ‘미투’ 기사 작성 후 심신이 피폐해짐 • 준비 없이 맞닥뜨린 처참한 사건 사고 취재 현장 • 같은 뉴스를 동료 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 	<p>위험 상황에 잦은 노출</p>	<p>충격적 사건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명감으로 쓴 특종, 악플에 시달려 안면마비 겪음 • 보도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찾아와 항의 시위 • 취재 기사에 대해 소송으로 압박당함 • 유명세 얻으려는 유튜버의 허위 사실 고소 	<p>보도에 대한 부정적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 시간제한 없이 잠들지 않는 뉴스룸 • 주야간 교대 근무로 생명을 깎아 먹음 	<p>고된 온라인 뉴스 생산</p>	<p>언론 환경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극적으로 써야 높아지는 클릭 수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기레기질을 하고 있음 • 기레기 멸칭으로 소명의식 감소 	<p>부정적 관행 스트레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된 매출 실적 압박에 취재 몰입 어렵고 자면서도 광고 걱정 • 성과 중심 문화로 어떻게든 결과 생산이 중요함 • 기사 아닌 수익으로 평가받아 내가 기자인가 싶음 •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 작성, 서글프기도 함 	<p>수익 추구 압력</p>	<p>언론사의 성과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처 타사 기자들과 경쟁하는 스트레스 • 단독기사로 매겨지는 실적 때문에 ‘단독’ 강박 • 하는 일과 전문성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 	<p>기사 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평가 시스템 부재로 일한 성과와 공로가 사라짐 • 불합리하고 더딘 승진 • 밖에선 대접, 안에선 찬밥 • 아부와 즐 서기로 득세하는 것을 보는 괴로움 	<p>부적절한 보상시스템</p>	<p>부적절한 보상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식 의사결정, 개인의 의사 표현 어려움 • 내 의사 무시한 부서 배정과 인력 배치 • 어려움(번아웃) 겪으면 그것도 못 이긴다 생각하는 매정한 사회 • 업무선 남녀평등, 승진은 남성 위주 • 강해야 하는 기자, 약한 모습 보이면 지는 것. 번아웃도 인정 안 함 • 속은 씩는데 겉으로는 밝은 척 	<p>마초적 분위기</p>	<p>강압적 조직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려니 하더라도 기사 킬(kill) 당하면 스트레스 • 회사의 기사 방향에 동의되지 않을 때 마음이 닳는 듯 	<p>자율성 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스크에 의해 부서 생활, 업무 스타일 좌지우지 • 내 어려움과 요구를 무시하며 믿어주지 않음 • 칭찬, 격려, 존중 없이 일만 더 시킴 •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기자를 갈아 넣음 • 요구 사항 많은 후배들이 더 무서운 세상 	<p>위계 관계 스트레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예 부리는 주인처럼 행세하는 데스크의 폭압적 태도 • 강압적 태도로 모욕감 주며 투명인간 취급 • 문제 발생 후 나만 인사상 불이익 	<p>직장 내 괴롭힘</p>	<p>번아웃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낮없이 일했더니 몸도 마음도 힘든 무기력 상태 • 너무 지겨워서 토할 것 같은 느낌 •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고만 싶음 • 꼭지 수만 채우자는 마음으로 최소한도로 일 	<p>의욕 상실로 무기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나고 괴로움. 모멸감이 머리를 떠나지 않음 • 큰 사건 후 밀려오는 허무함의 진동 • 몸의 여기저기 고장 난 것 같은 느낌 • 1년 넘는 소송 겪으며 분노로 몸이 아픔 	<p>신체 및 정서적 고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소홀해져 갈등과 싸움도 생김 • 사람들이 싫어지는데, 회사 사람은 더 싫음 • 취재원에게 기만당한 느낌에 기대를 낮추고 대함 	<p>냉소적 대인관계</p>	<p>번아웃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기사 쓰려고 기자하고 있나, 일에 대한 회의감 • 어차피 알아주지도 않는 일, 열심히 해서 뭐 하나 •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은가 •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족과 건강을 희생하나 • 하루하루 사표 충동, 이직 고민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함 	<p>일에 대한 회의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능률 떨어져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줄 자신이 없음 • 지적받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싶어 힘이 빠짐 • 해야 할 일을 못 하니 쓸모없게 느껴짐 • 또 뽑으면 되는 돈벌이 도구로 느껴짐 	<p>업무 비효능감으로 부정적 자기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잔에 물이 넘치는 듯한 위태로운 느낌을 자각 • 회피만 하다가는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겠다는 절박함 • 내 아픔은 나 스스로 극복해야 함 • 죽을 바엔 죽을힘으로, 원하는 것을 하자고 결심 • 기록을 통한 반성 및 성찰 • 건강 회복 위한 노력 		<p>변아웃 인식과 극복 결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감정은 그 자리에서만 느끼고 말자, 업무와 거리 두기 • 비판만 일삼는 댓글은 아예 안 봄 •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쓰는 시간과 감정 아낌 • (육아) 휴직으로 쉽표 찍음 • 업무와 분리된 시퍼렇게 살아 있는 삶의 영역을 가짐 	<p>일로부터 거리 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라서 볼 수 있었던 넓은 세상은 위로가 됨 • 열망해서 얻은 직업,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부심 • 좋아질 모습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생각 • 회사생활 버티기 위해 취미 부자가 됨 • 여행, 예술, 운동 등 하고 싶은 다른 활동을 하며 스스로 치유 	<p>자기 돌봄과 위로</p>	<p>회복 자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들과 술 마시며 조직에 대한 마음의 울화를 풀어냄 • 비슷한 경험했던 선배, 동료의 위로는 버팀목이 됨 • 상담, 점, 단체 등 외부의 도움 받음 • 나와 같은 고통 느끼며 공감해 주는 동료에게 따뜻한 동질감 느낌 • 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취재원과 인터뷰 	<p>사회적 지지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 영역을 깊이 탐구, 자기 전문 분야로 만들 • 나만의 콘텐츠와 전문성으로 살길을 마련 • 대학원에서 미래 가능성 탐색하며 여벌의 정체성 마련 		<p>전문 영역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들과 연대하여 부당한 인사제도 개선함 • 데스크의 괴롭힘, 회사에 이의 신청 • 내 의지로 부서 변경, 이직 감행 • 승진에서 물먹고 나만의 콘텐츠 개발로 전화위복 • 한직 부서 발령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 		<p>적극적 문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인 수준으로 기대와 이상 조절 • 큰 단독 보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음 • 나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슈퍼우먼이 될 필요 없음 	<p>일 기준 재설정</p>	<p>한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것에 도전, 사람 만나서 배우는 것이 좋음 •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 글 쓰는 것을 좋아함 • 하루 단위로 사는 하루살이의 매력 • 돈 받으며 취미 생활하는 듯 일 자체는 재미있음 • 기자라는 이름으로 누구라도 다 만날 수 있음 • 사회에서 뭐라 해도 기자직을 높이 평가 	<p>높은 직업 동기</p>	<p>직업에 대한 호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로 뛰며 현장 취재하는 양질의 기사 쓰고 싶음 • 꿈에서도 쓰고 싶은 단독, 특종 기사 • 남들보다 돋보이는 기사를 먼저 써서 주도권 갖고 싶음 • 잘하고 싶어서 업무 끝나고도 취재 	<p>좋은 기사에 대한 열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자, 응원 수 등 포털에서 받는 좋은 반응은 마음의 보상 • 엄청난 조회 수의 기사를 통해 파급 효과 실감함 • 기사로 반향 일으켜 개인과 사회, 기업의 움직임 이끌 어냄 • 좋은 기사로 수상, 구독자나 동료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줌 	<p>기사에 대한 사회적 반향</p>	<p>직무만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부서 이동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됨 • 조직문화 민주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됨 • 데스크로부터 받았던 고통,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음 	<p>업무 환경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지만은 않은 미래전망, 진로가 고민됨 • 출구전략을 세워봄 • 이직하고 싶은데 연차 높아 쉽지 않음 		<p>불투명한 미래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태감, 사직 의사 감소되며 의욕이 되살아남 • 연수, 휴직, 대학원, 취미 계기로 시야가 확장되고 일이 재미있어짐 • 하고 싶은 일과 목표 발견, 좌고우면 하지 않음 		<p>의욕과 에너지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상사도 이해가 됨 •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잘해주며 내가 당해줌 • 힘들어하는 후배, 동료에게 실제적인 도움 줌 	<p>조직원에 대한 포용</p>	<p>일을 통한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통해 세상에 대한 넓은 시야 생김 • 경험으로 배운 세상 이치, 여유로운 시각 생김 • 기자를 하며 나에게 긍정적 변화 생김 • 관리자로서 경영과 전체를 보게 됨 • 그래도 의미 있는 일 하는 것에 감사 	<p>일의 의미 되찾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킬러(killer) 콘텐츠 개발로 미래 먹거리 확보 •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 전문기자가 됨 	전문가로 자리매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아웃을 인식할 수 있고 회복 전략을 터득함 • 상사나 조직원에게 적절하게 의견 말하기 • 인간관계 옥석구분. 피아식별하며 걱정선 긋기 • 제삼자적 관점으로 나와 상대방 보며 덜 상처받는 태도 생김 	번아웃 대처법 터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 하는 인정이 더 중요함 • 나를 힘들게 했던 걸림돌이 보이니 삶이 명료해지는 느낌 • 어렵고 힘든 일 버텨온 내가 좋고 기특 • 돌아보니 정도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옴 • 자신을 수용하며 외부 문제에 내 탓 하지 않게 됨 •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자기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속 세상은 북풍한설이어도 내 삶은 안온, 일과 나를 분리함 • 일보다 내가 더 소중, 일의 방향성도 주도적으로 선택 • 인생에서 남는 건 일이 아닌 사람, 주변을 돌아봄 • 인생 큰 그림 생각하며 현실 기반 튼튼히 • 눈앞의 성과보다 소신대로 사는 것이 중요 		일과 삶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와 문제가 남아 번아웃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음 •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는 번아웃, 회복 방법 잘 모르겠음 		불완전한 회복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근거이론상의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으로서 현상의 발생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사건 또는 변수를 뜻한다(박승민 외, 2012, 87쪽). 본 연구에서는 ‘번아웃 경험’이라는 중심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언론인들의 ‘개인적 요인’, ‘고강도 노동’, ‘충격적 사건 경험’ 등 세 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대다수의 참

여자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글로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회사의 상업적 이윤 추구로 인해 공익성이 희생되면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기가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업무에 대한 자기 기준이 높아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 원인 외에도 고강도 노동과 충격적 경험의 직무 특성 요인도 번아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참여자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 위라벨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잠시도 쉬기 힘든 발제와 취재의 복잡함, 마감시간에 대한 긴장감, 기사량에 대한 압박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매일 저희는 또 기사를 생산하잖아요. 작가로 따지면 정말 온 에너지를 하루하루 퍼붓고 하루하루 생산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몸이 이게 항상 텐션이 강하게 있어서 건강에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걱정해요 “엄마 오래 살아야 돼. 엄마 암 걸리면 안 돼”. 그리고 또 저희는 매일 마감하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는 텐션이 극도로 되거든요. (참여자 11)

특히, 참여자 중 일부는 업무 중 위험 사건에 자주 노출되었고,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맞닥뜨리며 처참한 광경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기사 보도 후 악성 댓글, 항의,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같은 뉴스룸에 근무하던 동료의 극단적 선택을 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 즉, 트라우마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채 넘어갔고, 이 같은 것은 번아웃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제가 기자로 ○○ 출입할 때 진짜 생각지도 않은 기사로 엄청나게
 향의받은 적이 있어요. (중략) 회사로 막 저를 죽이겠다고 찾아왔어
 요. 그래 가지고 “너하고 ○○하고 결탁이 돼 있다”고 막 저한테. 전
 혀 생각지도 않은 그냥 간단한 거 썼다가. 그때 진짜 그만두고 싶었
 어요 정말로. (참여자 2)

나.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또는 문화적 배경 그
 리고 상황이나 구조적 조건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언론인들을 둘러싼
 구조적 상황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 언론사의 조
 직문화와 시스템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박승민 외, 2012, 87쪽).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에 관여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언론 환경 변화’, ‘언
 론사의 성과주의’, ‘강압적 조직문화’, ‘노력-보상 불균형’이 도출되었다.

언론 환경이 변화되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뉴스가 보도되는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더 빨리, 더 많은 기사를 생산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근무 형태는 다양해졌고, 그 중 주야간 교대 근무는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 어부징 기사, 낚시성 기사 등 부정적 관행을 사용했고, ‘기레기질’
 을 하고 있다며 자괴감을 표출했다.

클릭 수가 사실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사로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
 하는 때로는 어그로 끄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중략)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인 형태의 업무인 데다가 또 빠른 시간에 쓰죠. 기사량은
 무진장 많고, 또 그리고 약간 선정적인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
 게 소위 말하는 기레기질, 그걸 하고 있죠 지금. (참여자 7)

한편, 언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참여자들은 광고, 행사 유치 그리고 ‘단독’기사 등의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열심히 일해도 급여, 혜택, 인정, 승진 등 보상이 부족하다고 여겨 실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참여자는 언론사의 강압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상명하복의 군대식 의사결정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내에서 약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언론사 내부의 마초적 분위기(배정근 외, 2014)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부 참여자는 상사의 폭언, 불합리한 행동, 조절되지 않은 강한 정서 표현, 비인격적 대우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통화한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태도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중략) 내 기사 제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딱 맞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것부터 써” 계속 참견하고. 어린이집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대놓고 괴롭혔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했는데, 한 두 개 더 어려운 기사 갖다 주고 “이거 써”이런 식으로. (참여자 3)

다. 중심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핵심적 사건이나 심리적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참여자가 자신들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말하거나 행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민 외, 2012, 87쪽). 본 연

구에서는 언론인의 ‘번아웃 경험’이 중심현상으로 도출되었다. 번아웃을 경험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의욕 상실’과 ‘무기력’, ‘신체 및 정서적 고갈’, ‘냉소적 대인관계’, ‘일에 대한 회의감’, ‘부정적 자기 인식’ 등의 문제를 겪었다.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서 분노, 우울,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었고, 이는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 소진으로 이어졌다. 결국, 참여자들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과 만사가 귀찮은 권태감과 무력감에 빠졌다고 응답했다.

소진됐을 땐 활동하기 싫고, 그러면 진짜 어디 출입처에 짱 박혀서...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자료 처리만 하는 거죠. 마지못해 그냥 해야 할 것만 하고, 최소한 면피용... (참여자 2)

이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참여자들은 점차 취재원을 포함한 직장 사람 및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도 관심이 사라져 냉소적인 태도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더 힘든 것은 일에 대한 의미를 잃는 것이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고 보상도 적은데 자신을 갈아 넣으며 일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감을 품게 된 것이다.

정말 이 사회에 쓸모가 하나도 없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중략) 저는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 내가 이 따위 기사를 써야 되나 그런 자괴감. (참여자 1)

또한 업무 효능감이 떨어지니 위축되고, 자신들이 또 뽑으면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점점 회사의 수익 창출만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응답도 나왔다.

제가 이제 용도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 같다. 회사를 위한 것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좀 생각보다 능

력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 감정적으로 항상 우울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자신감도 없고. (참여자 12)

라.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작용/상호작용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주로 중재적 조건과 현상 간의 역동적 반응과정에서 발견된다(박승민 외 2012, 88쪽).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그 대처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작용/상호작용은 ‘번아웃 인식과 극복 결심’, ‘회복 자원 확보’, ‘전문 영역 구축’, ‘적극적 문제 해결’, ‘한계 수용’ 등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의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 참여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결심하며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과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 참여자들은 회복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댓글을 안 보고 업무 관련 사람들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등 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직업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참여자 11)는 다짐과 직업적 자부심으로 자기를 위로했다. 특이한 점은, 참여자들은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던 상태에서도 자기 돌봄을 위해 오지 여행,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악, 미술, 운동 등의 활동성이 높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진짜 뭘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취미 부자예요. 근데 제가 그 취미 부자인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이렇게 탈출구 같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이었다. 자신만의 특화된 콘텐츠 영역을 발굴하거나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 7은 “회사에서 약간 체념하거나 좌절한, 뭔가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대학원을 통해서 상쇄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식으로 대응해 나갔다고 밝혔다.

회사 안에서 공식적으로 좀 클레임 제기를 했었거든요. (중략) 그리고 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렇게 뭔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고. (참여자 7)

마.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변화시키며, 현상의 강도를 완화하는 등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이다. 또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박승민 외, 2012, 87쪽).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호감’, ‘직무만족’, ‘불투명한 미래 전망’이 중재적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조직 환경과 조건을 제외한 일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질과 적성에 맞고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높은 호감도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일에 대한 높은 성취 욕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욕구는 실제로 ‘좋은 기사로 수상’을 하거나 직접적인 사회의 움직임에 이끄는 성취 경험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약간 돈 받고 있고. 제가 정부 ○○부 기자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언론사들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때 했었거든요. 내가 이 중에 1등 해야 된다. (중략) 근데 제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기사를 제가 썼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기분이…. 그때 좀 제 스스로도 행복감이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의미로서도 행복감이 있는. (참여자 8)

하지만 언론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와 직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옛날처럼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들여 쓰는 콘텐츠를 다 무료로 보는 세상에 와서, 그 콘텐츠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회사에서는 기업 광고라든지 행사 만드는데 기자들이 동원되니까. (중략) 딱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죠. (참여자 14)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 중 일부는 실제로 이직이나 전직을 제안받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바. 결과(consequence)

결과는 중심현상에 작용/상호작용이 개입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박승민 외, 2012, 88쪽). 본 연구에서 결과는 번아웃 경험으로부터 회복된 것을 나타내며, 범주는 ‘의욕과 에너지 회복’, ‘일을 통한 성장’, ‘자기 인식 개선’, ‘일과 삶의 분리’, ‘불완전한 회복’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다시 의욕과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하며 해보고 싶은 취재가 생겨 실천에 옮기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외적으로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내적으로는 일과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갈등 대상이던 조직원에게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일에서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은 번아웃을 통과하며 자신의 중요한 가치, 삶과 세상 이치에 대한 교훈적인 시각, 번아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힘든 과정을 잘 지나온 자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자기를 수용하게 되어,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자기 탓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좀 아낄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편견이나 왜곡을 갖는 사람들이 제 자신의 본질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를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분리를 해서 보게 되면, 뭔가 단단해지는 거죠, 점점 더.
(참여자 7)

번아웃 이전에는 주로 기자라는 직업적 정체성으로 자신을 보았다면, 회복 과정을 거치며 일 자체보다 일을 하는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직 시 회사 선택, 일의 방향성 결정, 기사 작성 등에 있어서 외부 평가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번아웃에서 같은 정도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번아웃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되거나 회복되었다가 다시 번아웃을 겪었다고 토로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했나, 되게 실망스러운 거죠. 이런 실망감이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거에 대한 베이스는 그때부터 그냥 쪽. 내일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요 진짜. (참여자 14)

3.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면접 원자료, 코딩 분석자료 그리고 가설적 관계 진술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와 패턴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과정이다(박승민 외, 2012, 94쪽).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례의 내용을 범주와 연결하여 각각 분석하되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 및 작용/상호작용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지속해서 비교하고 확인하여 사례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재적 조건의 ‘직업에 대한 호감’, ‘불투명한 미래 전망’의 차원에 따라 번아웃 양상, 작용/상호작용 및 회복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직업에 대한 호감이 높고 불투명한 미래 전망 정도가 약한 6명의 ‘직업금지형’(참여자 1, 4, 5, 8, 10, 11), 직업에 대한 호감이 높고 불투명한 미래 전망 정도가 심한 3명의 ‘대안모색형’(참여자 6, 7, 9), 직업에 대한 호감이 낮고 불투명한 미래 전망 정도가 약한 2명의 ‘인정추구형’(참여자 3, 12), 직업에 대한 호감이 낮고 불투명한 미래 전망 정도가 심한 3명의 ‘고군분투형’(참여자 2, 13, 14)의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각 유형의 번아웃과 회복 요인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3〉에 요약).

가. 직업금지형

‘직업금지형’은 기자로서 하는 일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기자 직업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언론직의 미래 전망에 대해 고민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직업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적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번아웃의 주된 원인은 취재 중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사건과 사고, 전쟁, 재난 및 시위 현장을 다녔고, 미투 기사 작성, 보도 후 고소, 부정적 댓글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다. 참여자들의 번아웃 강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약한 편이었으며, 번아웃의 원인이 제거되어 사건이나 어려운 취재가 종료되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번아웃 극복을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 운동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번아웃에서 회복된 결과, 참여자들은 의욕과 에너지가 회복되어 다시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목표가 다시 생겨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한, 비록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이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일에 대한 욕심과 기대 대신 한계를 수용하며 업무에 투입되는 노력을 조절하게 되었다.

나. 대안모색형

‘대안모색형’은 기자로서 하는 일에 흥미가 있어 직업에 대한 호감은 높은 편이지만,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다른 대안 직업을 모색하는 중이다. 번아웃은 개인적 원인인 완벽주의적 성향과 과도한 헌신에서 시작되었다. 잠을 줄여 일하거나 퇴근 후에도 취재하고, 휴가지에서도 기사를 쓰는 등 자신을 돌보지 않고 폭주하다시피 일했다. 그 결과, 번아웃을 겪게 되면서 수술,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심한 무력감을 경험했다. 여기에 조직 환경적 원인인 위계관계 갈등이 더해져 그 여파로 급여, 인사, 부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부정적 정서와 큰 좌절을 겪으며 번아웃이 심화되었다. 이들의 대처는 크게 현재 직업 외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돌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유형의 모든 참여자는 언론 및 기타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아울러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계발 워크숍, 다양한 취미 활동, 상담 등을 통해 자기 돌봄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자기 돌봄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되었고, 번아웃의 원인이 되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대처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자신을 위한 미래 계획과 노력을 기울

이는 과정은 삶에 활기를 주어 업무나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다지 개의치 않게 되었고, 이것은 번아웃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심드렁하다’, ‘회사에서는 욕 안 먹을 만큼만 일하고 있다’는 참여자들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업무에 대한 의욕은 번아웃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인정추구형

‘인정추구형’은 기자로서 하는 일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직장과 언론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을 시행하거나 전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위계관계 스트레스’였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인정 욕구가 커서 업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냈다. 하지만, 상사는 기사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실적, 수입, 광고, 및 단독이나 특종 보도에 대해 압력을 주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폭언, 비인격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은 인정을 추구하던 이 유형의 참여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번아웃에 이른 참여자들은 무력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일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수치심, 모멸감을 느끼며 모든 유형 중 부정적 자기 인식을 가장 심하게 경험했다. 이들은 ‘대안모색형’과 유사한 번아웃 경험을 했지만, 자기 인식을 더 부정적으로 한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당 영역에서 회복이 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사회적 자원을 주로 활용했다. 소셜미디어나 친구, 가족에게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도움과 지지를 받았다. 또한 직장 내 갈등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내 기구와 협력해서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번아웃에서 회복된 후에도 참여자들의 일에 대한 의욕은

예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못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 원인은 해결되었어도 번아웃으로 인한 상흔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면서 갈등의 대상이었던 직원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돕고 이롭게 한다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인식했다.

라. 고군분투형

‘고군분투형’은 직업 여건에 불만이 있고, 대체로 냉소적이다. 또한 언론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고 생각하여 직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직이나 퇴사 등의 진로 이동 계획은 없다. 이 유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번아웃 원인은 완벽주의적 성향의 개인적 요인과 노력-보상 불균형 및 수익 추구 압력의 조직 환경적 요인이었다. 참여자들은 일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가정에 소홀해질 정도로 일에 매진했고 실제로 성과나 공로도 있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 연수나 특과원 파견 등의 특혜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조직의 불공정한 평가 시스템 탓이라 생각하며 크게 좌절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더 나아가 각종 행사 개최, 광고 수주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 추구 압력으로 인해 심해 압박감을 느끼면서 기사를 쓸 여력도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도 떨어졌다. 참여자들은 번아웃을 경험할 때 분노와 회의감, 무기력감,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갈된 상태를 겪었다. 점차 취재원이나 출입처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게 느껴졌고, 일하는 구색만 갖추는 ‘면피용’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가족의 일원이나, 조직 구성원으로서도 잘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좋은 기사를 작성하려 노력하거나, 수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 특별한 대처 방법은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통한 성장을 약한 정도로 경

험했지만, 의욕이나 부정적 자기 인식은 회복되지 않아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회복을 보였다.

아래 <표 3>은 네 가지 유형의 회복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경험유형을 겪는가에 따라서 원인과 대처 방안도 다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의 유형별 특징

	직업공지형	대안모색형	인정추구형	고군분투형
특징	•직업에 대한 호감과 자부심 높음	•직업에 대한 호감도 높음 •대안 경로 모색	•직업에 대한 호감도 낮음 •인정 욕구 큼	•직업에 대한 호감도 낮음 •미래전망 어둡게 봄
번아웃 원인	•위험 상황 노출	•완벽주의와 과도한 헌신 (폭주하며 일함) •위계 관계 스트레스	•완벽주의와 과도한 헌신 •심한 위계관계 스트레스	•완벽주의와 과도한 헌신 •보상 부족 •수익 추구 압력
번아웃 경험	정도	•약함	•중간	•심함
	고갈	•무기력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건강 문제
	태도	•긍정적 태도 유지	•부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자기 인식	•변화 경미	•변화 경미	•부정적으로 변함
번아웃 대처	•적극적인 외부 활동 •전문 영역 구축	•대학원 진학 및 대안 직업 모색 •심리적 어려움 극복 위한 자기 돌봄	•사회적 자원 활용 •적극적 문제 해결	•특별한 대처 방법 없음
회복 결과	•의욕 회복 •일을 통한 성장	•중간 수준 의욕 회복 •일을 통한 성장 •자기 인식 개선	•낮은 수준 의욕 회복 •일을 통한 성장 •자기 인식 개선, 상처는 남아 있음	•의욕 회복되지 않음 •자기 인식 낮은 수준 회복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언론인들의 번아웃 및 번아웃 회복 경험의 특징과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언론인들의 번아웃과 회복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번아웃은 양상, 정도, 범위는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언론인들의 번아웃 경험은 크게 고갈,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업무 비효능감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 인식의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험의 비중이 높을수록 번아웃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쓴 기사나 일에 기울이는 노력이 가치가 있는지 회의감에 빠지며 일에 대한 의미가 감소될 때는 조직에 냉소와 불만을 함께 느꼈고, 이로 인해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게 될 정도로 고통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런 과정으로 성취감이 저하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성취감이 저하되면 자신이 한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며 결국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이것은 좌절에 이르게 한다(Maslach & Jackson, 1981; Leiter, 1989). 이처럼 참여자들이 자신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었다고 인식하며, 자신이 대체할 수 있는 도구적 존재로 전락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직, 퇴사, 또는 전직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직업적 좌절감을 경험했다. 이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번아웃의 심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고갈’이 ‘번아웃의 주된 경험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부정적 자기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직업금지형’ 참여자는 고갈을 주요 번아웃 경험으로 보고했으나 다른 유형에

비해 번아웃의 심각성이 가장 낮았으며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모든 연구참여자가 일정 수준의 고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자라는 직업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여기며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언론인 대상의 기존 선행연구(안차수·이건혁, 2020; 정유진·오미영, 2015; 정재민·김영주, 2011)에서 고갈이 번아웃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간주된 점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언론인들이 번아웃을 겪는 과정에서 고갈 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다차원적 측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언론인들에게는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가 가치 있다는 의미 부여와 함께 자신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언론인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배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참여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업무수행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번아웃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고, 일부는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는 번아웃 상태에서 직업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류승민, 2019; 허난설, 2015; 황순옥, 2020)와는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기사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업무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임계치를 넘으면 이직이나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언론인의 번아웃 원인에는 개인적 요인, 직무 특성적 요인, 조직

환경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이 요인 중에서 직무 특성보다 조직 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번아웃의 원인에 관한 탐색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조직 환경 요인에서 비롯된 어려움과 좌절을 훨씬 더 많이 언급했으며, 직무 특성이 주요 번아웃의 원인이었던 ‘직업금지형’의 경우 번아웃의 정도가 가장 약했던 반면, 나머지 유형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번아웃의 정도가 심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언론인들의 번아웃은 업무 환경이나 조직의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정재민·김영주, 2011)와 일치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대다수의 참여자가 위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번아웃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는 사실이다. 일부 참여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며 심각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토로했다. 이는 결국 더 심각한 번아웃 상태로 이어졌고,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깊은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욱 유연하고 강압적이지 않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개개인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언론인이 번아웃 이후 회복에 다다른 결과와 그 과정에서 사용한 대처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자들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개선되었고, 업무적으로는 일하는 방식, 가치관, 조직원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복 양상이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고, 이를 유형분석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요약하면 ‘직업금지형’은 번아웃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대안모색형’과 ‘인정추구형’은 번아웃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히 ‘인정추구형’이 더 낮은 회복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위계관계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부정적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군분투형’은 매우 낮은 회복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번아웃에서 벗어날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었고, 언론업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각종 부담과 압박을 주는 조직을 답답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무기력 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번아웃 대처 방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번아웃 대처 방법 및 회복 요인으로 전문성 강화, 휴식, 자기 성찰, 사회적 지지 요청, 일과 심리적 거리 두기, 자기 돌봄, 긍정적인 시각과 수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 성찰이나 내면 작업에 큰 비중을 두며 이를 번아웃 대처 방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번아웃 이후 성장은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었다(최혜윤·김은하, 2017). 해당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을 겪고 회복 과정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나 외적 환경변화 요인에만 의존하여 번아웃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언론인 연구참여자들은 내면의 숙고나 성찰보다는 외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휴식’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자기 돌봄을 위해 선택했던 활동은 대부분 그룹으로 하는 운동이나 음악 활동, 오지 여행, 그림 소모임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성이 높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적 지지를 구할 때도 대상자와 관계성을 높이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나 조언, 연대감의 발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일을 통한 성장을 경험했는데, 이는 번아웃 회복

과정에서 내적 변화 추구 또는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인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참여자들은 언론인이라는 직업적 맥락 안에서 자신들이 스트레스 대처 행동으로 사용해 왔던 ‘외부 활동’과 ‘자신의 목소리’로 문제를 해결해 온 기존의 방식으로 회복과 성장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복 요인과 그 대처 방법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번아웃은 일회성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지속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Abedini et al., 2018). 최혜윤과 김은하(2017)는 대학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아웃에 처했던 상담자들이 이직이나 조직의 변화만으로 번아웃에서 벗어났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다시 노출되면 바로 번아웃을 재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적절한 회복 전략을 추구한다면 번아웃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윤·김은하, 2017).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 분석을 통해 번아웃 회복을 위해 개인의 회복 전략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차원의 경우, 번아웃 예방을 위해 자신의 직무 태도를 반추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직업적 이상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상이 높은 경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 번아웃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Maslach et al., 2001; Pines, 2002). 언론인들은 대부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직업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성취 영역을 넘어선 웅대한 범위의 목표이기 때문에 더 쉽게 좌절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휴식 없이 과도하게 일하는 등 업무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만의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복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미 번아웃을 겪고 있는 개

인이라면 번아웃 정도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번아웃의 정도가 깊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상담이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 차원의 경우, 번아웃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언론인들에게는 기사작성, 취재 및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장면에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 후유증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과 같은 수준의 트라우마 경험자로 분류되는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소방재난본부, 2023; 손의연, 2023, 10, 5), 언론인에 대한 상담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담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언론인들이 겪는 조직 환경적, 개인 내적 어려움과 트라우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다만, 마초적 문화에 익숙한 언론인들은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MBI 등 번아웃 척도 또는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실시해 보거나 자가 진단을 통해 번아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지연 외, 2021, 262쪽).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자들의 번아웃 경험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참여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연구의 결과로 언론인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의 연령과 경력, 소속 매체는 다양한 편이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경력이나 직급별, 회사 규모별, 매체 종류별, 지역별, 부서에 따

른 번아웃과 회복 경험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특정한 대상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번아웃과 회복의 개념이 더욱 명료하게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도 통용되는 언어로 개인마다 그 뜻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번아웃을 번아웃의 세 가지 하위 구성 요소 중 신체적 무기력과 정서적 피로함을 뜻하는 ‘고갈’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고갈에 해당하는 경험은 기자로서 겪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며, 번아웃의 나머지 요소인 업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나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본인이 일로 인하여 무엇인가 힘들지만, 번아웃은 아닌 것 같다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되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할 경우, MBI나 실제 회복 징후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를 같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면담하며 번아웃과 회복 경험을 탐색했다. 탐색 과정 중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 내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번아웃이나 회복을 오래전에 경험했던 참여자의 경우 진술하는 내용이 덜 생생하고 자세한 사항이 누락 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곽희양 (2022, 10, 6). ‘기렉시트(기레기+탈출)’ 탈출구는 공익·신뢰. <경향신문>. URL: <http://m.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210060600015#c2b>
- 구문선 (2024). <언론인의 번아웃과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률 (2006). 언론직(업)에서 오는 심리적 탈진감에 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3권 2호, 1-17.
- 김동률 (2009). 방송사 기자들의 심리적 탈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3권 1호, 7-49.
- 김의진 (2003). <언론인의 규칙적 운동 수행이 마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인 (2010). 직업별 수명의 차이- 48년간(1963-2010)자료. <보건과복지>, 12권, 9-16.
- 류승민 (2019). <근거이론에 따른 놀이치료자의 소진과 회복 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동규 (2018). 유아교사의 심리적소진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권 11호, 38-52.
- 박상영·조성제 (2015). 뉴스통신사 기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5권 5호, 253-262.
- 박생규·조성제 (2013).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권 12호, 6155-6162.
- 박수정·김민규·이훈재·박봉섭·정지현·김도현·박정열 (2020). 한국형 번아웃 증후군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사회구조적 개입전략의 우선순위 산정. <교육문화연구>, 26권 1호, 201-215.
- 박승민·김광수·방기연·오영희·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 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박해경 (2020). <중소규모 사립대학 교원의 번아웃 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정근·하은혜·이미나 (2014).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 관한 연구 : 세월호 참사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417-446.
- 백강희 (2019). 취재보도 원칙과 정치성향에 대한 인식 차이가 기자의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권 6호, 24-32.
- 소방재난본부 (2023). '내 손 안에 상담센터'...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온라인 비대면 심리상담실 운영. URL: <http://news.seoul.go.kr/safe/archives/512158>
- 손의연 (2023, 10, 5). '마음상담'받는 경찰 5년새 2배↑...전문상담사는 지역에 1~2명. 〈이데일리〉, URL:<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9766635769968&mediaCodeNo=257>
- 안차수·이건혁 (2020). 언론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갈에 관한 연구 -일간 신문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4권 4호, 62-91.
- 양영은·이종현 (2023). 트라우마 경험이 언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취재의 어려움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 자울성 및 소속사 지원의 조절효과. 〈언론과학연구〉, 23권 3호, 88-129.
- 엄광진 (2022).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소진 후 성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웅 (2022). 〈근거이론 방법의 체계적 접근〉. 서울: 박영스토리.
- 유용민 (2021). 언론 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언론 연구자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언론정보연구〉, 제58권 제2호, 136-176.
- 이상기·이정민 (2020). 기자다움에 대한 반문: 기레기.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4권 3호, 124-148.
- 이석호·이오현 (2019). 취재 현장을 떠난 젊은 신문기자들의 직업적 삶에 대한 질적연구: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권 4호, 152-214.
- 이영만 (2016). 교사의 심리적 소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사교육연구〉, 55권 4호, 441-459.
- 이승희 (2019). 〈아동상담자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와 자기수용의 이중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2022). 트라우마 고위험 직종, 언론인. 〈관혼저널〉, 64권 3호, 63-71.

- 이지연·김은석·최아람·장미수 (2021). <기업상담의 이론과실제>. 서울:학지사.
- 장해순·김창남 (2010). 뉴스콘텐츠 제작자들의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10호, 209-218.
- 전오열 (2016). 지역 언론인의 심리적 탈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6권 1호, 263-306.
- 정승호 (2019). <언론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유진·오미영 (2015).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번아웃(burnout: 직무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216-247.
- 정재민·김영주 (2011). 신문사 종사자의 탈진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252-276.
- 진보래 (2021). 언론인의 자율성, 소진, 그리고 오보: 자원 보존 이론과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47-87.
- 최혜윤 (2015). <대학상담센터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윤·김은하 (2017). 심리적 소진으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대학상담자를 대상으로. <인간이해>, 38권 1호, 17-45.
- 최혜윤·김은하·차지숙 (2017). 정신건강전문가가 지각하는 소진 회복의 징후와 회복 촉진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8권 6호, 559-583.
- 최혜윤·정남운 (2003).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권 2호, 279-300.
- 최희아 (2017). <심리치료사의 소진과 자기 돌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2023 한국의 언론인-제16회 언론인 조사. URL: https://www.kpf.or.kr/front/research/reporter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seq=595924&link_g_topmenu_id=&link_g_submenu_id=&link_g_homepage=F®_stadt=®_enddt=&searchkey=all1&searchtxt=
- 허난설 (2015). 근거 이론을 활용한 초등교사 소진 및 대처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원교육연구>, 32권 4호, 73-101.
- 황순옥 (2020). <근거이론에 기초한 영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회복과정 분

석).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edini, N. C., Stack, S. W., Goodman, J. L., & Steinberg, K. P. (2018). "It's not just time off":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factors promoting recovery from burnout among internal medicine residents. *Journa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10*(1), 26-32.
- Arble, E. P., Shankar, S., Steinert, S. W., & Daugherty, A. M. (2021). Mental health in residential health care work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moderating role of self object needs. *Frontiers in Psychiatry, 12* (596618), 1-10.
- Brenner, J. (2020). *Examining the stage progression of employee burnout*. Doctoral dissertation, Hofstra University, Long Island, NY.
- Cook, B. B., & Banks, S. R. (1993). Predictors of job burnout in reporters and copy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70*(1), 108-117.
- Endres, F. F. (1988). Stress in the newsroom at Ohio dail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0*(1), 1-14.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59-165.
- Freudenberger, H. J. (1975). The staff burn-out syndrome in alternative institutions. *Psychotherapy, 12*(1), 73-82.
- Golembiewski, R. T., & Munzenrider, R. (1984). Phases of psychological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variants: A replication using norms from a large population. *Journal of Health and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6*(3), 290-323.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Hoboken, NJ: Jossey-Bass.
- Leiter, M. (1989). Conceptual implications of two models of burnout.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14*, 15-22.
- Leiter, M., & Maslach, C. (2016). Latent burnout profiles: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burnout experience. *Burnout Research, 3*(4), 89-100.
- MacDonald, J. B., Saliba, A. J., Hodgins, G., & Ovington, L. A. (2016). Burnout in journalis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urnout Research, 3*(2), 34-44.

- Maslach, C., & Goldberg, J. (1998). Prevention of burnout: New perspective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7*(1), 63-74.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2), 99-113.
- Maslach, C., & Leiter, M. (2008). Early predictors of job burnout and engag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3), 498-512.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397-422.
- Pines, A. (2002). A psychoanalytic-existential approach to burnout: Demonstrated in the cases of a nurse, a teacher, and a manager.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9*(1), 103-113.
- Regedanz, K. (2008). *Job burnout recovery*. Palo Alto, CA: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 Reinardy, S. (2006). *Beyond the games: A study of the effects of life issues and burnout on newspaper sports edit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MO.
- Reinardy, S. (2009). Female journalists more likely to leave newspap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0*(3), 42-57.
- Reinardy, S. (2013). Boom or bust? U.S. television news industry is booming but burnout looms for some. *Journal of Media Business Studies, 10*(3), 23-40.
- Salminen, S., Andreou, E., Holma, J., Pekkonen, M., & Mäkikangas, A. (2017). Narratives of burnout and recovery from an agency perspective: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Burnout Research, 7*, 1-9.
- Savicki, V., & Cooley, E. (1983). Theoretical and research considerations of burnou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 227-238.
- Schaufeli, W. B. (2003).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erspectives of burnout research. *South African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29*, 1-15.
- Sonnentag, S., & Fritz, C. (2007). The recovery experience questionnaire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for assessing recuperation and unwinding from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3), 204–221.

Strauss, A.,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s Angeles, CA: Sage.

WHO (2019). Burn-out an “occupational phenomen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URL: http://www.who.int/mental_health/evidence/burn-out/en/

■ ABSTRACT

Exploring the Burnout, Coping, and Recovery Experience of Journalists

Gu, Moonsun

Ph.D., Counseling and Coaching,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Yonsei University

You, Young Gweon

Professor, Counseling and Coaching,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Yonsei University

Lee, Jae Ji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coping mechanism, and recovery experiences of journalists who have experienced burnou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4 research participants who are currently employed in a media organization and have more than sev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A total of 168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21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open coding. A review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journalists' burnout and recovery experiences and related factors found that the more negative their self-perceptions are, the more severe their burnout. This also results in lower levels of coping and recovery. Journalists overcame burnout through active external activities. After recovery, negative self-perception improved, and positive changes in work were observed. Four types of burnout and recovery experiences among

journalists were identified: job security, alternative seeking, recognition seeking, and struggle seeking.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burnout of journalis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esenting a substantive theory on how to recover from and cope with burnout based on the journalists' actual experiences.

Keywords: journalists' burnout, coping mechanism of burnout, burnout recovery strategies, burnout recovery experiences, grounded theory

[논문투고일 2025. 02. 20. 논문수정일 2025. 03. 21. 게재확정일 2025. 03. 28.]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이 수 종*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국문 초록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 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을 시사적 인물에서 시사적 사진,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에 따라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초상권 침해여부의 결정적 해결

* sjlee@pac.or.kr

기준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이 유형화를 통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초상권, 단계적 보호개념, 이익형량, 공중의 정보이익, 형량 기준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단계적 보호개념의 형성 과정
 - 1. 개관
 - 2. 과거 독일 법원의 상황
 - 3. 유럽인권법원의 비판
- III.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한 단계적 보호개념의 정립과 승인 과정
 - 1. 배경
 - 2. 사실관계 및 구체적 판결 내용
 - 3. 정리 및 평가
 - 4. 단계적 보호개념의 승인 과정
- IV.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의 체계와 비례원칙
 - 1.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서 단계적 보호개념의 의의
 - 2.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과 비례원칙에 따른 형량
 - 3. 시사적 영역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중의 정보이익
 - 4. 세부적 형량 기준
- V. 결론

I. 문제의 제기

2025년 1월 9일 우리 대법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에 사용된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¹⁾에서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 A 담임목사가 2022년 9월 교회 건물 정면과 측면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현수막 하단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머리 양쪽에 뿔이 달린 사진과 함께 ‘OUT’이라는 붉은색 문구를 적은 것이 문제 되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다툼 과정에서 전광훈

¹⁾ 대법원 2025. 1. 9.자 선고 2024다298639 판결.

목사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²⁾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근거로 그대로 확정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이나 견해를 확인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전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의 판결³⁾을 기초로 최근 우리 법원의 초상권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동향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항소법원인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대법원의 확립된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후략)”라고 적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는 공인으로서 원고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사상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들이 원고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으로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자 다수의 언론사 등이 이를 인용한 바 있고, 더욱이 이는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므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우리 대법원의 초상권 관련 최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으로는 대법원 2013년 4월 13일 자 판결을 들 수 있다.⁴⁾ 여기에서는 모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초대 과정에서 참가학생들의 참가비 문제로 인한 다

2) 법률신문 2025년 1월 27일 자 “[판결] 전광훈 목사, 초상권 침해 손해소 최종 패소 … ‘공인으로 수인해야’ 제하의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205073>.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자 선고 2023나41803 판결.

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틈이 벌어졌고, 이를 사단법인 대표의 얼굴 사진과 함께 공개 보도한 MBC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시 원고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여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 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으므로 이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동시에 문제 된 방송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원고 자신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결국 이러한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 대법원은 이익형량이라는 원칙 하에서 우선적 고려요소로서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된 공적 인물로서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 공표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제 된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여부, 스스로 얼굴을 공개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사진 보도를 통한 초상권 침해관련 법원 실무는 접근 방식에서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7월 7일 자 판결⁵⁾에서 유명 음악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계기

5) ZUM-RD 2020, 642. 해당 사건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초상 보호에 관한 판결로는 비교적 최근의 것에 속한다. 그밖의 최근 판결로는 GRUR 2023, 196 사건을

로 이혼심리기일에 출석한 유명 여배우의 사진 및 기사 관련 사건을 다루었다. 해당 사진 및 기사 보도는 2018년 1월 12일 자 “빌트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소송에서는 관련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여배우가 그녀의 남편 옆에서 모자 및 스카프를 착용하고 외투를 입은 채 고개를 돌린 측면 모습의 얼굴사진이 문제 되었다.

여기에서 연방대법원은 기사 보도와 관련해 이혼절차에 관한 정보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보도는 다름 없이 진실한 사실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반해 사진 보도나 공표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의 “단계적 보호개념(abgestuftes Schutzkonzept)”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보호개념”은 헌법상 기준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확정하였다. 이어서 해당 사진 보도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시사적 초상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⁶⁾

이러한 입장은 이후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2022년 11월 8일 자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집회 지원을 위해 참석한 연방경찰관의 모습을 www.lvz.de에서 공개한 사건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도 재판부는 사진 보도의 허용성은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의 단계적 보호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⁷⁾

이와 같이 사진 보도와 관련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지속적으로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리고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들 수 있다.

6) ZUM-RD 2020, 642;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당시 대기업 부회장의 초상권 및 사생활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대법원이 과연 기사 보도와 사진 보도 사이를 구별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논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7) GRUR 2023, 196.

8) Benjamin Korte, Praxis des Presserechts, 2. Aufl., § 5 Rn 7; Fechner, Medienrecht 21 Aufl., § 2 Rn. 6.

한 인물의 초상은 단지 동의에 의해서만 전파될 수 있고(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로부터 시사적 영역을 비롯한 각각 예외가 존재하며(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제한되는 전파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는 규정체계에 따른 심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⁹⁾ 이러한 결과는 사진 보도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초상권은 특별한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시사성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개념을 통해 일반적 인격권과 표현자유권 사이에 조화를 이뤄야 하고, 이는 단계적 보호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⁰⁾

재판부에 따르면 사진은 기사 보도를 보완하고 보도 내용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진술 내용의 부연설명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울러 사진 첨부를 통해 기사에 대한 독자의 주목을 끈다는 점에서도 출판 자유의 일부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사진 내용 역시 보도의 삽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헌법상 보호를 누린다고 보았다.¹¹⁾ 하지만 한 인물의 초상 공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즉 그의 제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의와 같은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사진 보도에 존재하는 정보이익은 상충하는 법적 지위를 고려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언론의 이익은 보도당사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가능한 한 신중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 연방대법원 역시 관련 문제를 이익형량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견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익형량이 아닌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른 차등화된 심사 구조는 우리 실무와는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 과정

9) GRUR 2023, 196, 197.

10) Obergfell/Herbort, Ulmer-Eilfort/Obergfell/Herbort, 2 Aufl. 2021, Kap.1, Rn. 988.

11) GRUR 2023, 196, 198.

12) GRUR 2023, 196, 197.

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독일 법원이 생각하는 초상권 침해 문제는 기사 보도의 허용 문제와는 달리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의 관점 하에서 독자적인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¹³⁾

이에 이 논문에서는 사진 공표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리로서 독일 단계적 보호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보호개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현재 독일 법원의 실무상 어떠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는지, 나아가 사건 해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 기준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실제 국내 법원의 초상권 침해 사안에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국내 판결¹⁴⁾과 관련해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자유의 충돌을 조정하는 다양한 기준이 국내 법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실무상의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구체적 형량 법리들이 국내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⁵⁾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나 법리 탐구에 머물지 않고,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초상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실무적 형량 기준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자칫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국내 법원이 기본권 보호 과제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엄격한 심사 의무의 강화를 통해 개인이나 미디어의 기본권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3) Engels, BeckOK UrhR/Engels KunstUrhG §23 Rn. 3.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자 95가합13495 판결.

15) 송석윤,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2010. 10.), 249면.

II. 단계적 보호개념의 형성 과정

1. 개관

독일에서는 확정된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는 단계적 보호개념(abgestuftes Schutzkonzept)을 바탕으로 한다.¹⁶⁾ 이러한 보호개념은 궁극적으로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에 적용된 초상 보호의 기본 개념으로만 인식되기도 되지만, 실제 연혁 상 2004년 이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사건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이후 유명인의 초상 보호를 둘러싼 독일 법원의 판례발전 상황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핵심은 다름 아닌 시사적 인물 개념과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즉, 사진 공표는 지금까지 독일 법원이 사용했던 시사적 인물 범리가 아니라 단지 보도가 일반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관심사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이후 독일 법원 내의 수용과정 속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독일 법원은 연방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유럽인권협약을 방법론상 수용 가능한 원칙 내에서 국제법 친화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판결 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기준들을 일치시키고자 했다. 이에 유럽인권법원 판례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연방대법원은 무엇보다 “단계적 보호개념”이라는 핵심어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는 결국 당사자의 이익과 미디어의 이익 사이의 충돌을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속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절대적 내지 상대적 시사적 인물 범리와는 결별하고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원문을 더욱

¹⁶⁾ NJW 2007, 1977.

¹⁷⁾ Engels, a.a.O, § 22 Rn. 12.

강하게 지향함으로써 사진 보도의 허용성 문제는 더 이상 일률적인 인물의 지명도가 아니라 보도가 결정적으로 시사적 사건과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로써 모든 시사적 인물이 시사적 영역에서 초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의 귀속은 당사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중요성을 고려한 언론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정해지게 되었다.¹⁸⁾

또한 이익형량은 과거처럼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23조 제1항의 헌법조화적 해석차원에서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개별적 형량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와 같이 이미 제23조 제1항의 구성요건표지의 심사과정에서 상충하는 의견 및 표현 자유 이익과 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 사이의 포괄적 형량을 요청하는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라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의미는 감퇴할 수밖에 없었다.¹⁹⁾

2. 과거 독일 법원의 상황

독일에서의 초상권 보호는 오늘날까지 1907년 제정된 예술저작권법(KUG)이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이익형량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제1단계로서 초상의 공표는 원칙적으로 피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단계로서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은 동의 없이 전파될 수 있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단계로서 제2단계의 예외적용은 삽화 등을 통해 피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여기에서 제2단계의 “시사적 영역”의 허용구성요건의 구체화를 위해

¹⁸⁾ Engels, a.a.O, § 22 Rn. 12.3.

¹⁹⁾ Engels, a.a.O, § 23 Rn. 1.

지금까지 독일 판례는 절대적 시사적 인물과 상대적 시사적 인물의 범리에 따라 이를 처리해 왔다.²⁰⁾

절대적 시사적 인물이란 국가수반,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배우 등을 말하며 그밖에 상류사회의 저명인사 역시 여기에 속했다. 그리고 이들의 초상은 항상 “시사적 초상”으로 인정되었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두드러진 공적 생활에서 역할로 인해 하나의 공적 정보이익을 정당화한다고 인정되었다. 예컨대 연방대법원은 캐롤라인 폰 하노버와 관련하여 “그녀는 시사적 인물로서 자신이 어디에 체류하고 공중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해 대중들이 알고자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서 쇼핑할 때, 카페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그밖에 일상행위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로 인해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선 인물들은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의 주장하에서만 초상권 보호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 밖에서도 역시 명백하게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위 “장소적 은거상태(örtliche Abgeschiedenheit)”으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 공개가 허용되었다.²¹⁾²²⁾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공중의 정보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써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시사적 사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소위 시사적 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만 결정하는 방식이었다.²³⁾ 당시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민사법상 판결 실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했으며,²⁴⁾ 절대적 시사적 인물의 개념을 대중들이 인물 기준을 통해 그의 초상에 관해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20) Neumann-Duesberg, JZ 1960, 114; NJW 1996, 1128.

21) NJW 1996, 1128.

22) Christoph Teichmann, Abschied von der absoluten Person der Zeitgeschichte, NJW 2007, 1917.

23) Sprech- Riemenschneider, KUG § 23, Drier/Schulze/Sprech- Riemenschneider KUG § 23 Rn. 4.

24) NJW 2000, 1021.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축약된 표현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의 개별적 형량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헌법상 문제없다고 판단했다.²⁵⁾

3. 유럽인권법원의 비판

이러한 독일 내 법적 상황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가 주말 시장에서 쇼핑하는 모습이나 공중 수영장에서 있는 모습의 사진 공표는 사적 영역의 보호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획기적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²⁶⁾

유럽인권법원은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독일 법원들의 판례를 비판했다. 첫째, 시사적 인물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정보이익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 대신 시사적 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과정에서 이미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문제 된 사진 보도가 공적 관심사의 문제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지와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정보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에 기여하고 정치적 인물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보도와 그러한 공직을 차지하지 않은 인물의 세부적 사생활 관련 보도 사이에는 구별이 필요하며, 앞의 경우에만 언론은 자신에게 부여된 민주사회에서의 감시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견 및 출판자유 의 고양된 의미가 부여된다고 판시했다.²⁷⁾

둘째, 독일법원이 제시한 “장소적 은거성”의 개념은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지나치게 좁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법원이 제시한 이 개념은 비록 이론적 명료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언정 실무상 적용에는 부적절하

25) Christoph Teichmann, a.a.O, NJW 2007, 1917.

26) NJW 2004, 2647.

27) Sprech-Riemenschneider, a.a.O, KUG §23 Rn. 9.

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을 단지 장소적 은거성이 인정되는 곳에 있을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공중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²⁸⁾

Ⅲ.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한 단계적 보호개념의 정립과 승인 과정

1. 배경

2004년 유럽인권법원이 일련의 캐롤라인 폰 모나코가 자전거 탈 때, 승마할 때, 쇼핑할 때의 사진 공표가 허용된다고 인정한 독일 판결을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정생활의 존중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무엇보다 독일 판례가 발전시켜 온 형량모델을 배척하였다. 이후 독일에서는 판례와 문헌 간에 유럽인권법원 판결의 이행의무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가 지속되었고, 이에 2007년 3월 연방대법원은 소송상 주요쟁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면서 소위 단계적 보호개념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것이 헌법심사의 기준이 되었다.²⁹⁾

이는 결국 이전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시사적 인물 법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단계적 원형모델에 따라 개별적 이익형량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새로운 보호개념(neue Schutzkonzept)을 발전시킨 것이었다.³⁰⁾

28) NJW 2004, 2647, 2650.

29) Nikolaus Peifer, Öffentliches Recht-Grundrechte, Jus 2008, 1107.

30) Christoph Teichmann, a.a.O., NJW 2007, 1917, 1918.

2. 사실관계 및 구체적 판결 내용

이 판결은 이어서 살펴볼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연방대법원,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법원을 관통하며 다뤄진 일련의 캐롤라인 판례의 핵심 사안에 속한다. 동시에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칙판결이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문제 된 사진은 모나코 영주인 캐롤라인 폰 하노버의 아버지가 심각한 병중에 있음에도 장녀인 그녀가 가족과 스키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의 보도 과정에서 휴양지 생 모리츠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어서 이 부부가 생 모리츠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원고가 생모리츠의 공공도로에서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첨부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어서 임박한 모나코의 로젠볼 행사에 관한 기사에서 원고가 알베르크 쿨르스에서 2인용 스키리프트에 스키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원고의 남편이 케냐 라무에 위치한 빌라를 임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여기에 원고가 휴가 중 공공도로 위에 있는 모습의 사진을 첨부한 것 역시 문제 되었다.³¹⁾

이에 관해 캐롤라인 폰 하노버가 제기한 2007년 3월 6일 자 소위 겨울 휴가 판결³²⁾에서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의 구상에 관해 자세히 논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서 “시사적 인물”이라는 축약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개인의 지위와 역할에만 근거한 개념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적 주목을 받게 되는 인물은 절대적 시사적 인물로 분류될 수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 시사성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에 관한 보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

³¹⁾ Johannes Hager,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JA 2007, 647.

³²⁾ NJW 2007, 1977.

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시사적 인물의 사적 영역 보호의 제한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2004년 6월 24일 자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미 여러 후속 판결³³⁾에서 이미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특히 “시사적 영역”이라는 구성요건표지의 해석 단계 및 이러한 시사적 영역으로의 귀속을 결정할 때, 유럽인권협약 제8조 및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당사자의 사생활권 및 인격권과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출판 자유권의 상충을 형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출판 자유와 더불어 인격보호와 그의 사적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는 규범적 척도가 판단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무엇보다 시사적 사건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얻을 공중의 정보이익이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사성의 개념은 출판 자유를 위해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보이익도 무제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당사자의 개인적 영역으로의 침입은 비례성 원칙을 통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정해져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 사정의 고려 하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⁴⁾ 따라서, 동의의 필수성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단지 보도가 시사적 의미의 사건과 관련될 경우에만 고려되며, 이때 시사적 사건의 개념은 좁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이 2004년 6월 24일 자 판결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참조 하에서 언론자유 의미 역시 강조하면서 언론의 권리를 특정한 한계 내에서만 인정하는 이상, 이러한 제한은 다른 한편의 사적 영역의 보호와의 형량과 관계되며 앞서 언급된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라

³³⁾ NJW 2005, 594; NJW 2006, 599.

³⁴⁾ NJW 2007, 1977, 1978.

요청되는 그러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언론이 출판 자유의 보장을 위해 그리고 검열금지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널리즘적 기준에 따라 자신이 무엇에 관해 보도할지 결정이 허용될지라도 언론이 보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사적 영역의 보호와의 형량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³⁵⁾

따라서 공중의 정보이익과 피사자의 사적 영역의 보호에 관한 이익 사이에 이익형량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익형량에 있어서 정보가치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밝혔다. 즉 공중에게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정보가 수집되는 그런 대상자의 보호이익은 공중의 정보이익 뒤로 후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중에 대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사자의 인격보호가 점점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익형량에 있어서 그러한 비중설정은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출판 자유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의 효과적 보호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³⁶⁾

3. 정리 및 평가

연방대법원의 이 사건 해결구조는 이익형량의 진행이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에서 시사적 영역의 표지 내에서 행해지고, 예술 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또 다른 제한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독일 법원들의 판단 과정과는 구별된다.³⁷⁾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23조 제1항의 단계에서는 시사적 인물 범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를 처리한 반면, 제23조 제2항의 단계에서 비로소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예외적으로 형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시사적 인물의 개념에 근

35) NJW 2007, 1977, 1979.

36) NJW 2007, 1977, 1979.

37) Johannes Hager, a.a.O, JA 2007, 647, 649.

거한 과거 법원의 논증구조는 모든 점에서 판례가 그동안 예술저작권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발전시켜 온 단계적 보호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³⁸⁾ 당사자의 권리 및 기본권과 언론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 관한 형량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의 심사 단계에서가 아니라 이미 제23조 제1항의 시사적 영역의 해석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23조 제1항의 시사적 영역의 해석단계에서 그동안 독일 법원이 취해 왔던 절대적 시사적 인물이라는 고정관념식 개념 사용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변화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개념의 범주에 일단 속한 인물은 자신의 모든 초상이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시사적 영역에 의해 공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일단 절대적 시사적 인물이라는 개념들에 속하기만 하면 단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의 주장이 있어야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심사 구조 역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개 장소에서 생겨난 저명인사의 사진 공표 역시 곧바로 시사적 영역이라는 예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³⁹⁾

오히려 공중의 정보이익이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예외규정을 위한 입법론적 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구성요건표지인 “시사적 영역”의 해석 단계에서 이미 형량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때 초상 공표에 관해 공중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구체적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변화는 방법론상 적절한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어서 언론은 하나의 사안이 공적 관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자신의 저널리즘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을 보유하며, 그럼에도 원치 않는 초상의 공표는 항상 당사자의 개인적 영역의 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례원칙 하에서 그 한계가

38) NJW 2007, 1977.

39) Christoph Teichmann, a.a.O., NJW 2007, 1917, 1918.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높은 지명도를 지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량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긍정하면서 지금까지의 시사적 인물에게도 보도가 단순한 호기심의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안과의 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등한시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⁰⁾

이로써 높은 지명도의 인물에게도 구체적인 공중의 정보이익을 통한 정당화가 요구되었으며,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휴가나 생일 축하 등의 일상생활 중의 사진들 역시 시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이러한 심사에 있어서는 동반된 기사 보도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⁴¹⁾

이러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독일의 저명한 언론법학자 괴팅은 캐롤라인 폰 하노버 및 웰펜가문의 수장과 소위 황색언론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끝없는 다툼의 역사에서 또 다른 장을 연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두 주인공은 현재 수많은 소송 과정에서 유명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이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제1사건⁴²⁾이 독일 국내법원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좀 더 명확한 해명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주장했다.⁴³⁾

그런 점에서 연방대법원에 의해 지도원칙으로 사용된 단계적 보호개념을 유럽인권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아 인격보호와 언론자유에 대척점에 적절한 조화를 위해 발전시킨 혁신적 창조개념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⁴⁴⁾ 이러한 단계적 보호개념은 예술저작권법 제22조

40) Christoph Teichmann, a.a.O, NJW 2007, 1917, 1919.

41) Christoph Teichmann, a.a.O, NJW 2007, 1917, 1919.1920.

42) NJW 2004, 2647.

43) Götting, Anmerkung zu den BGH-Urteilen “Abgestuftes Schutzkonzept” und “Winterurlaub”, GRUR 2007, 527, 530.

44) 이러한 점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Ricker/Weberling, Handbuch

이하의 법 규정 체계에서 생겨난 것이고 판례와 문헌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그 출발점은 항상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제23조 제1호의 “시사적 영역”이라는 구성요건표지의 “시사적”이라는 개념은 목적론적으로도 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를 통해 보호되는 의견 및 출판 자유권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고,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보호되는 당사자의 인격권과 형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유럽인권법원의 절대적 시사적 인물 개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 이제는 본질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저명인사에 관해 보도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회귀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량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이제부터 “시사적”이라는 개념은 용어상으로 기본법 제5조 제1항뿐만 아니라 유럽인권협약 제10조를 통해 보호되는 의견 및 출판 자유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과 동시에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8조 상 보호되는 당사자의 인격권과 형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인정했다.⁴⁵⁾

4. 단계적 보호개념의 승인 과정

이후 해당 사안의 헌법소원을 담당했던 연방헌법재판소는 예술저작권

des Presserechts 6 Aufl., § 43. Rn. 19a.

45) Götting, a.a.O., GRUR 2007, 527, 530. 다만 괴팅은 연방대법원이 모나코 영주의 병환과 관련한 기사 보도에서 문제 된 사진 게재의 정보가치를 도출한 것을 두고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케롤라인 제1판결에서 정해진 기준과는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영주의 병환이라는 사실과 문제 된 사진에서 나타난 가족의 개인적 스키휴가는 주제상으로 어떠한 직접적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유명인의 병환이 그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관련 취재를 위한 면허부를 제공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겪게 되는 파파라치로 인한 고통이 형량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오류를 낳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휴가는 저명인사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호되는 사적 영역의 핵심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GRUR 2007, 527, 530. 531.

법 제22조 이하의 전제조건 판단을 위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자세히 전개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헌법적 차원에서 승인했다. 즉, 연방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판례에서 벗어나서 보호개념을 수정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수정된 보호개념은 헌법상 요청에 부합된다고 판시했다.⁴⁶⁾

아울러 재판부는 절대적 혹은 상대적 시사적 인물 범리의 포기 역시 어떠한 헌법상 우려도 낳지 않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모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례군의 형성이나 다른 유형적 보조개념을 통해 의사소통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형량에 도움을 얻는 것은 연방대법원에게 거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⁴⁷⁾

연방대법원은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적 전제, 즉 시사적 영역에의 초상의 귀속 문제를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문제 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때 연방대법원에 의해 정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서 동원된 기준, 즉 공적 관심사의 토론에 기여하는지 혹은 공적 관심사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요청된 방식으로 인격권 보호이익을 능가하는 정보이익은 단지 비상하거나 이례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형적 상황이나 생활 상태에 관한 표현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이로부터 국가나 정치적 인물 외 저명인사들의 사적 생활이나 일상 생활의 묘사 역시 그것이 공적 관심의 대상인 이상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⁴⁸⁾

한편, 유럽인권법원의 대재판부는 2012년 2월 7일 소위 “캐롤라인 폰 하노버/독일 제2사건”에서 미디어 자유영역의 핵심에 속하는 사생활 존중권(유럽인권협약 제8조)과 의견 및 표현 자유(유럽인권협약 제10조)

46) Nikolaus Peifer, a.a.O., Jus 2008, 1108.

47) Nikolaus Peifer, a.a.O., Jus 2008, 1108.

48) Nikolaus Peifer, a.a.O., Jus 2008, 1108.

사이의 형량에 관하여 근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소송의 대상은 앞서 독일 법원들에서 다뤄졌던 저명인사 캐롤라인 폰 모나코의 사생활에서 유래한 사진의 공표가 쟁점이었다.⁴⁹⁾

이 판결은 당시 많은 주목을 끌었던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판결⁵⁰⁾을 독일 법원이 적절하게 독일 국내에서 실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칙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각계로부터 열렬한 관심을 모았고, 유럽인권법원을 통해 제시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후속 판결의 형량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길 바라는 입장들이 대세였다. 하지만 유럽인권법원은 국내법원의 판단 재량의 고려 하에서 사생활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독일 법원들의 실무적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각계의 기대는 단지 일부만 충족되었고 사생활 보호관점이 도로 약화되었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⁵¹⁾

그럼에도 유럽인권법원은 독일 국내법원들이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적 입장을 수용하여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 내에서 기사 및 사진 보도의 정보가치에 더 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독일 연방대법원이 제시했던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른 심사 구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정했다.⁵²⁾

이러한 유럽인권법원의 승인 이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사진 보도의 허용성 판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 보호개념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일 헌법상 원칙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와 일치시키는 창구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유럽인권법원에서 발전되어 온 세부적 형량 기준에 유념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미디어에서 행했던 이전 행동 그리고 침부

49) NJW 2012, 1053, 캐롤라인 폰 하노버/독일 제2사건, 40660/08과 60641/08.

50) NJW 2004, 2647.

51) Mattias Lehr, Anmerkung zu Veröffentlichung von Fotos aus dem Privatleben Prominenter, GRUR 2012, 745, 750.

52) Mattias Lehr, a.a.O., GRUR 2012, 745, 750.

된 텍스트 보도와의 전체적 맥락 내에서 게재 사진의 정보 내용, 오락적 기사를 통한 저명한 인물들의 롤모델 역할과 대조 기능, 마지막으로 그들의 지명도가 이러한 형량 기준으로 거론되었다.⁵³⁾

이러한 기준들은 특히 2011년 연방대법원의 로젠볼(Rosenball) 판결⁵⁴⁾에서 대체로 확정되었다. 여기에서도 앞선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충돌하는 인격권 보호와의 관계에서 정보이익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 대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이 구체적 경우에 대중들의 정보 청구를 충족시키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 이익의 사안들을 진지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토론하는지 아니면 시사적 사건과의 관련 없이 단지 독자의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사진 보도의 정보 내용은 인물 초상이 배치된 전체적 맥락과 그에 속한 텍스트 보도의 고려 하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인격적 보호이익의 비중에 있어서는 사진 보도의 계기와 촬영이 생겨난 사정들이 함께 참작되어야 하며, 피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포착되었고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⁵⁵⁾⁵⁶⁾

IV.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의 체계와 비례원칙

1.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서 단계적 보호개념의 의의

언제 초상의 공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허용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는 헌법상 의견 및 출판, 예술의 자유를 위

⁵³⁾ Scherz,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2019, 6 Kap, § 12 Rn. 140.

⁵⁴⁾ NJW 2011, 746.

⁵⁵⁾ NJW 2011, 746, 747.

⁵⁶⁾ Scherz, a.a.O, 6 Kap, § 12 Rn. 144f.

해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제23조 제1항에 언급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초상의 공표는 당사자의 우월한 정당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허용된다. 이때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르면 “시사적 사건”의 개념과 같은 규범적 해석을 요하는 구성요건표지의 심사에 있어서 이미 한편으로는 의견 및 출판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일반적 인격권 사이의 충돌 사이에 형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아가 제23조 제2항은 재차 초상 이용을 통해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진 공표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된다.⁵⁷⁾

이러한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3단계를 통한 단계적 보호개념은 비록 헌법상의 규범은 아니지만 개방적 표현을 통해 합헌적 해석과 적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인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일반법에 해당하고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의견표현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상호작용 법리에 따라 의견자유권의 의미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고 의견자유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 재차 자신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일반법으로서 유럽인권협약의 보장,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규정된 사생활 존중권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의견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인권협약의 보장은 국내 법원의 해석보조수단으로서 기본권의 내용과 사정거리의 결정을 위해 동원될 수 있으며, 다만 이것이 기본법에 따른 기본권 보호의 제한이나 저하에 이르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단계적 보호개념은 유럽인권협약의 보장과 유럽인권법원의

57) Fricke, KUG § 23, Wandtke/Bullinger/Fricke KUG § 23 Rn. 1.

판례를 국내 법원에 수용하는 통로로 인정되었다.⁵⁸⁾

2.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과 비례원칙에 따른 형량

연방대법원이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서 초상 보호에 관한 자신의 판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보호개념은 이제 과거와 달리 판단의 중심을 더 이상 인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사진이 게재된 맥락의 참조 하에 보도 대상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구상된 소위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시사적 영역이 존재하는지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반대 이익을 통한 제한 모델로 바뀌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이미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근거한 당사자의 인격권과 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의 언론자유권 사이에 형량(Abwägung)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 시사성 내지 시사적 사건의 개념은 공중의 정보이익에 의해 결정되었다.⁵⁹⁾

하지만 이러한 정보이익은 무제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개인적 영역으로의 침입이 문제 되는 경우 보도 내용에 속한 각각의 정보 내용이 어디까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비례원칙을 통해 제한된다.⁶⁰⁾ 이에 형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 구체적인 경우에 공적 관심사에 관한 진지하고 사안 중심의 토론을 행하며 청중의 정보 요청을 충족시킴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시사적 사건과의 관련 없이 단지 사적 사안에 관한 독자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다. 즉 보도의 정보가치가 결정적인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정보가치가 공중에게 크면 클수록 당사자의 보호이익은 더욱 후퇴해야 하고, 반대로 인격권 보호가 중요하면

⁵⁸⁾ Fricke, a.a.O, KUG § 23 Rn. 2.

⁵⁹⁾ Fricke, a.a.O, KUG § 23 Rn. 8.

⁶⁰⁾ Engels, a.a.O, § 22 Rn. 2.

할수록 정보가치는 더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법원은 정보이익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 보도가 어느 정도로 여론 형성에 기여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심사로 제한되었고, 이후 유럽인권법원⁶¹⁾ 역시 이러한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 존중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했다.⁶²⁾

3. 시사적 영역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중의 정보이익

이처럼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에 따라 이제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 존재하는지(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관해 더 이상 시사적 인물 법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관한 형량 과정에서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⁶³⁾ 이때 연방대법원이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의견 및 출판 자유와 동시에 인격권 보호 및 사적 영역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하는 규범적 척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의 정보이익이 고려된다.⁶⁴⁾

이에 위의 조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사적 인물에 관한 초상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초상의 전파나 공개적 전시가 시사적 뉴스가치를 가져야 하고 정보가치를 지녀야 한다.⁶⁵⁾ 통상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 편집보도 내에서 초상의 전파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보 목적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지만,⁶⁶⁾ 유명인의 동의 없이 광고형태에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정보목적이 부인된다.⁶⁷⁾ 연방대법원 역시 보통 보

61) NJW 2012, 1053.

62) Fricke, a.a.O, KUG § 23 Rn. 8.

63) JUS 2008, 1107.

64) Fricke, a.a.O, KUG § 23 Rn. 5.

65) Wenzel/ v. Strobl-Alberg,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Kap. 8, Rn. 26.

66) Scherz, a.a.O, 6 Kap, § 12 Rn54, 55.

67) BGHZ 20, 345.

호 가치 있는 공중의 정보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초상사용을 통해 자신의 상업적 이익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의 예외규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⁶⁸⁾

한편,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23조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 개념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⁶⁹⁾ 이에 법조문의 원문과 달리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사적 사건이라는 개념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물 그 자체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여론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 분명해지고, 따라서 제2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그 역할에 비추어 공중의 정보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공중의 정보이익과 출판 자유권의 준수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의 행위와 직책이 어떠한 시사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 인물의 초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표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본권의 영향을 반영해야 하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구성요건표지 역시 처음부터 그의 등장, 지위, 행위가 시사적 의미를 가지는 인물로 제한된다.⁷⁰⁾

그런 점에서 시사성 혹은 시사적 사건의 개념은 역사적 혹은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공중의 정보이익과 관련된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이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 대중의 주목을 받은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공중의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사안, 오락적이고 사교지향적인 보도 역시 여기에 속한다. 오락적 기사에서도 의견 형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보보다 더 지속적으로 여론 형성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68) BGH AfP 1992, 149, 150; Scherz,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2019, 6. Kap., § 12 Rn. 56, 57.

69) Engels, a.a.O., § 23 Rn. 2.

70) Wenzel/ v. Strobl-Alberg, a.a.O., Kap. 8, Rn. 27.

71) NJW 2000, 1021, 1025.

마지막으로 공중의 정보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신문과 방송사가 스스로 자신들의 저널리즘적 기준 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⁷²⁾ 왜냐하면 언론이 법적 한계 내에서 자신들의 보도 기준에 따라 무엇이 공적 이익을 말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을 가지며, 여론 형성 과정에서 무엇이 공적 이익의 사안인지 밝혀지는 것이 출판과 의견 형성 자유의 핵심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중의 정보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사적 사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⁷³⁾

4. 세부적 형량 기준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라 시사적 사건에 관한 공중의 정보이익의 존재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에 따른 형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독일 판례들은 그동안 이러한 형량 과정에서 의견 및 출판 자유권이라는 측면과 인격권이라는 각자의 측면에서 참작되어야 할 세부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우선, 충돌하는 인격권 보호와의 관계에서 정보이익의 비중을 결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보도 대상 내지 사진 공표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사진 보도의 정보 내용은 사진 그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일부인 기사 내용을 포함해서 인물 초상이 위치한 전체 맥락에서 조사되어야 하며, 특히 그의 일부인 기사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이 공중의 정보이익을 충족시키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시사적 사건과의 관련 없이 단지 독자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⁷⁴⁾

72) Frank Fechner, Medienrecht 21 Aufl, §4, Rn 53.

73) Wenzel/ v. Strobl-Alberg, a.a.O, Kap. 8, Rn. 28.

74) GRUR 2023, 196, 198.

다른 한편 인격권 보호이익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사진 획득 정황, 즉 비밀촬영 방식의 악용이나 지속적인 스토킹을 통해서 작성되었는지가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포착되었으며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하다.⁷⁵⁾

이처럼 이익형량 과정 내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도의 정보가치, 해당 인물의 지명도에 통상 가장 큰 비중이 부여되고, 그밖에 보도 방식이나 사진의 구체적 획득 정황, 당사자가 포착된 상황 및 묘사 방식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보도의 정보가치

보도의 정보가치는 본질적 형량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도가 공적 이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 혹은 공적 관심사들을 다루는 경우에 형량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치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는 단지 커다란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대표하는 사정이나 생활 상황에 관한 표현 역시 포함되며, 이 가운데 국가나 정치 영역 밖에 있는 저명인사의 사적 생활이나 일상생활 역시 공적 관심의 대상인 이상 제외되지 않는다.⁷⁶⁾ 이는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정보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진술은 사진 그 자체에 내재하여 있을 수도 있지만 사진의 일부인 기사 보도의 맥락에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기사 보도의 허용 여부는 일반적 원칙에 따르며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에 따라 심사될 수 없다.⁷⁷⁾

만약 게재 사진이 그와 결합된 허위의 기사 보도의 설명을 위해 사용된다면 충분한 정보가치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지만, 충분한 정보가치가

75) Engels, a.a.O, § 23 Rn. 3.

76) NJW 2008, 1793, 1799.

77) Fricke, a.a.O, KUG § 23 Rn. 16.

답긴 동반 기사에 부당한 일부 구절이 포함된 경우라면 무방하다.⁷⁸⁾ 아울러 사진 게재의 충분한 정보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진이 보도 대상의 사안에서 제작된 정도로 텍스트와 사진 사이에 내용상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⁷⁹⁾ 보도된 사건에 관여된 인물의 초상사진 첨부를 통해 기사의 진정성을 강조하거나 기사 보도에 대한 주목을 끌어내는 경우에도 정보가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⁸⁰⁾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독자층에게 문제에 관한 관심과 사안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인물의 사진 게재를 위해 모종의 계기를 만들기에만 급급한 기사 보도는 순수한 광고 목적과 같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⁸¹⁾

(2) 인물의 지명도

보도가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리고 보도에 어떠한 정보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의 심사에 있어서는 공중 속에서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⁸²⁾ 이에 유럽인권법원의 형량 기준에 따라 독일 법원들도 이제 정치인, 그밖의 공적 생활의 인물이나 공적 관심 대상의 인물 그리고 평범한 사인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인물그룹에 관한 다양한 정보 요청에 따르면 평범한 사인에 관한 보도는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설정되며, 이때 정치인의 보호가 가장 취약하게 된다.⁸³⁾

이와 같이 보도 대상이 된 인물의 지명도와 그의 공적 생활에서의 지위 역시 본질적 형량 기준에 해당한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에

78) BGH GRUR 2010, 1029, 1030.

79) NJW 2008, 1793, 1801.

80) NJW 2008, 1793, 1797.

81) Fricke, a.a.O, KUG § 23 Rn. 16.

82) ZUM-RD 2020, 642, 644.

83) Sprech-Riemenschneider, a.a.O, KUG § 23 Rn 13.

서 공적 생활의 인물에 대해서는 공중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 논쟁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도 가치를 가지고,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이 이에 대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인물보다 더 커다란 범위에서 보도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이제 공적 생활의 인물 법리를 통해 재차 단계적 보호개념 속으로의 편입을 통해 과거의 절대적 시사적 인물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⁸⁴⁾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실무에 방향 결정의 보조수단⁸⁵⁾으로 이용되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필수적 형량이 항상 중단되지 않는 이상 헌법상 문제없는 것으로 긍정되었다.⁸⁶⁾

이러한 공적 생활의 인물에는 과거에 국가 및 사회에서의 두드러진 지위 혹은 동료 인간 집단 속에서 비상한 행동이나 특별한 업적을 통해 탁월한 것으로 인정된 소위 절대적 시사적 인물과 유사하다.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새로운 판결에서 절대적 시사적 인물의 포기 이후에도 정치인, 귀족 영주 가문의 구성원, 유명 배우, 유명한 텔레비전 진행자 등이 이러한 인물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제계 수장, 뮤지션, 스포츠인, 유명 학자 등도 여기에 귀속가능하다.⁸⁷⁾ 하지만 공적 생활 인물의 주변에 개인적으로 있는 인물들, 특히 연인이나 친척, 지인은 통상 공적 생활의 인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독자적 지위에 근거해 가족구성원 역시 공적 생활의 인물이 가능한데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⁸⁸⁾

한편, 이제는 공적 생활 인물의 경우에도 초상 공개를 위해서는 해당 인물과의 시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

84) Fricke, a.a.O, KUG § 23 Rn. 10.

85) Soehring/Hoene, Presserecht 6 Aufl, § 21 Rn 15.

86) NJW 2008, 1793, 1799.

87) Fricke, a.a.O, KUG § 23 Rn. 11.

88) Fricke, a.a.O, KUG § 23 Rn. 12.

별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형량에 있어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즉, 과거의 상대적 시사적 인물 개념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은 통상 자신과 관련된 시사적 사건과의 시간적·공간적 맥락에서만 촬영되거나 초상이 공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통해 혹은 정치적이나 직업상의 업적을 통해 대중들에게 부각된 경우가 아닌 인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인물들은 공적 생활의 인물들과는 달리 상황이라는 조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초상에 관한 공중의 정보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⁸⁹⁾

이러한 인물들은 평범한 사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진 공표를 감수해야 한다. 가령 사진 게재의 자유는 공적 생활의 인물이 자신의 사회적 직무수행 때 보여 지는 그러한 사진들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종종 우상이나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 자신의 외부 활동과 개인적 행위를 실제로 일치시키는지에 관해 알게 될 정당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저명인사들은 대중들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롤모델 및 대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명인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외부 모습과 개인적 생활 태도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의 폭로 역시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된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민주적 투명성과 통제의 관점에서 독자들의 증가된 정보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상류층 내의 사건들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을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정당한 정보이익이 존재한다. 결국 정당한 정보이익의 범위는 스캔들이나 그밖에 문제 될 수 있는 행동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고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는 저명인사의 행동방식 역시 그것이 공적 관심사의 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때는 공개가 허용된다.⁹⁰⁾

⁸⁹⁾ Soehring/Hoene, a.a.O., § 21 Rn 28ff.

⁹⁰⁾ Fricke, a.a.O., KUG § 23 Rn. 13.

(3) 보도 방식

형량 과정에서는 언론이 구체적으로 공적 관심사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했는지 아니면 단지 사적 사안에 관한 단순한 호기심만을 만족시켰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다.⁹¹⁾ 이때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 방식은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정당한 저널리즘적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청중의 보호이익은 사진 공표가 정보에 기여하든 오락에 기여하든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 오히려 오락 보도 역시 담론의 대상을 제공하고 토론 형성을 자극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충족한다는 점이 긍정된다.⁹²⁾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캐틀라인 제2결정⁹³⁾에서 보도 내용의 오락성은 종종 대중의 주목을 획득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조건이자 미디어의 저널리즘적 성공은 특히 오락기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때 충돌하는 반대 측 법적 지위와 주의 깊은 형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⁹⁴⁾

(4) 사진 획득의 정황 및 당사자에 대한 묘사 방식

인격권 보호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가령 비밀의 악용이나 지속적인 스토킹을 통한 사진의 획득 정황이 형량 내에 참작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고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⁹⁵⁾

91) NJW 2008, 1793, 1797.

92) NJW 2008, 1793, 1796.

93) NJW 2008, 1793, 1796.

94) Fricke, a.a.O, KUG § 23 Rn. 14.

95) NJW 2008, 1793, 1797.

이에 따라 파파라치의 지속적인 스토킹이나 추적 과정을 통해 제작된 유명인의 초상 공표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컨대 한 미결구금상태의 텔레비전 진행자가 교도소 경내에서 산책 중인 모습을 근접한 고층 건물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촬영한 사진 공표는 허용되지 않았다.⁹⁶⁾

또한 당사자가 포착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전형적으로 미디어에 촬영당하지 않을 거라는 정당한 기대 하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이 이뤄졌을 때 인격권 침해의 비중이 증가한다. 가령 사생활로 각인되는 상황, 예컨대 특별히 보호되는 공간 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는 인격권 보호가 강화된다. 하지만 사생활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미디어로부터 촬영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는 반드시 격리된 장소(장소적 은거성)에서 생겨난 정황만을 요구하지 않고 직업이나 일상생활로부터의 구속에서 벗어난 긴장 완화의 순간이나 자기만의 휴식 순간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항상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강도가 형량에서는 중요하다.⁹⁷⁾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연방대법원은 초상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에 따른 사건 해결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단계적 보호개념은 독일 연방대법원이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에 근거해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특유한 법리임을 확인하였다.

사실 출판물이나 보도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출판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사진 보도의 제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의 문제는 출판 자유의 한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동시에 인물 초상의 게재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출판 자유와

⁹⁶⁾ Fricke, a.a.O, KUG §23 Rn. 15.

⁹⁷⁾ ZUM-RD 2020, 642, 644.

인격권의 충돌이라는 갈등 역시 초래하게 된다. 이같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부상하는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적용 과제를 독일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통해 헌법적 권리 및 유럽인권협약의 기준들을 반영하는 창구로써 활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관을 계기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시사적 영역”의 판단을 위해 기존의 시사적 인물 범리에서 시사적 사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 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다. 따라서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초상이 시사적 영역에 귀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원문에 충실하게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 존중권의 관점과 기본법 제5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의견 표현이나 출판 자유권의 관점 사이의 형량 문제로, 즉 충돌하는 법적 지위의 형량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들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대체되었다.⁹⁸⁾

이러한 새로운 독일법원의 심사 구조는 방법론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단계적 보호개념은 초상권 보호를 둘러싼 문제해결을 신중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통해 획일적이거나 일률적인 판단이 아닌 단계적 숙고 과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한편, 실체적으로는 단계별 판단 과정에서 관련된 기본권 지위 간의 충돌 문제를 개별적 사정에 따른 이익형량의 심사라는 전통적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하였다. 다시 말해 엄격하게 설계된 절차적 보호 과정 속에서 초상권 침해 문제를 공중의 정보이익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개별적 이익형량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법론적·실체적 접근방식의 구상은 언론자유와 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⁹⁸⁾ Grabenwarter, GG Art. 5 Abs.1, Dürhig/Herzog/Scholz/Grabewarter GG Art. 5 Abs. 1 Rn. 430.

조화를 위한 독일 법원들의 깊은 고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럽인권법원 판결과의 국제법적 모순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서 발전한 구체적 형량 기준들을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개별적 사건 해결을 위한 형량 과정의 예측불가능성이나 일관되지 못한 결론상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세부적 형량 기준들을 적극 개발하였다. 이러한 세부 기준들은 사진 보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의견 및 출판 자유의 원칙들이 반영된 것들과 당사자의 초상 공개와 관련된 일반적 인격권의 원칙들이 반영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출판 자유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 형량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는 보도 대상에 관한 기준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 보도의 정보 내용은 개인의 초상이 배치된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특히 그에 속한 기사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⁹⁹⁾ 이에 따라 구체적 사례에서는 미디어가 청중의 정보 요청을 충족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결정적 해결 기준으로 떠오른다. 이는 공중에 있어서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 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의 준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도로 보도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지, 어떠한 정보가치가 그에 부여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한 심사에서는 당사자가 공중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의 문제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된다.¹⁰⁰⁾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

⁹⁹⁾ Engels, a.a.O, § 23 Rn. 3.

¹⁰⁰⁾ ZUM-RD 2020, 642, 644.

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이다. 가령 사진이 비밀스러운 촬영 방식의 악용이나 지속적인 스토킹을 통해서 제작되었는지가 판단에 함께 참작되어야 하고, 사진 내용의 주제가 사적 영역을 건드리는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격권 보호가 증가되어야 한다. 반대로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혹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등장할 때 촬영된 경우라면 인격권 보호의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 다만 언론보도에 있어서 시사적 행사 때 작성된 사진의 게재가 인물 묘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용되었는지 아니면 보도가 아무런 여론 형성에의 기여를 나타내는 바 없이 단지 저명인사의 사진 게재를 위한 계기로만 삼기 위해 사진을 이용한 경우인지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¹⁰¹⁾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국내 대법원판결이 보여주는 논증 과정은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우선 대법원이 정립한 판단기준들은 주로 기사 보도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형성해 온 기준들로서¹⁰²⁾ 이러한 것들이 사진 공표를 통한 초상권 침해 문제에도 과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초상권은 현행 헌법 하의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격적 가치의 헌법상 의미가 반영되는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¹⁰³⁾을 고려하면 그 출발선상에서 기사 보도와는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가 공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초상 공개의 허용성을 위한 주된 논거로 끌어온 점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대법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신분적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법원은 공적 인물이나 공인에 어떤 인물들이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간 명확한 인적 범

101) Engels, a.a.O., § 23 Rn. 3.

102) 심석태 초상권 판단 기준의 구조화 가능성,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2023), 13면.

103) 조소영,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2015), 168면; 조소영, 관례에 나타난 초상권 법리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114면.

주를 제시한 바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을 공적 인물로 규정짓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사생활 보호가 사실상 부정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문제 된 내용이 공중의 일반 관심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⁰⁴⁾ 설령 대상 인물의 지위나 역할이 형량 과정 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써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인적 범주에 귀속될 수 있는 합리적 유형화 작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¹⁰⁵⁾

그밖에 표면상으로는 이익형량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형량 과정에서는 인격권 보호이익의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¹⁰⁶⁾ 실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인격권 비중 결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도의 계기, 사진 획득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포착되었으며 어떻게 묘사되었는지가 형량 기준으로 진지하게 참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상이 사진이나 이미지의 편집·조작 등으로 왜곡된 경우, 즉 이미지의 합성과 변경을 통해 왜곡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¹⁰⁷⁾이 앞선 국내 판례에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104) 권태상, 공적 인물의 사생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1권 제4호 (2017. 6), 280면.

105) 우리 대법원은 2002년 ‘공적 인물’의 범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개념이나 지위에 대해 판시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한 논문으로는 이승선, ‘공인’이란 누구인가?,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2020.08), 117면; 우리나라 판결은 “공적 인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으로는 권태상,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69호), 659면.

106) 그런 점에서 언론 및 학계에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위자 관점과 보도 대상자 관점을 나누어 구조화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석태 초상권 판단 기준의 구조화 가능성,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2023), 22면 이하.

107) 문건영,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9권 제5호(통권 제743호), 234면; 합성사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다룬 독일 판결로는 NJW 2005, 3271.

결국 독일 법원들이 유럽인권법원과의 상호 협력 속에서 발전 시켜온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을 각각의 기본권 지위에 따라 유형화해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결국 형량을 통한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권태상 (2015).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비교사법>, 22권 2호(통권 69호), 629-668.
- _____ (2017). 공적 인물의 사생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1권 4호, 241-283.
- 문건영 (2020).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법조>, 69권 5호(통권 743호), 208-247.
- 송석윤 (2010).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공법연구>, 39집 1호, 223-254.
- 심석태 (2023). 초상권 판단 기준의 구조화 가능성. <언론과 법>, 22권 2호.
- 이승선 (2020). ‘공인’이란 누구인가? <언론과 법>, 19권 2호, 1-29.
- 이재진·동세호 (2015).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범리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4권 1호, 101-148.
- 조소영 (2015).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언론과 법>, 14권 3호, 149-172.
- _____ (2018).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범리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19권 2호, 99-120.
- Korte, B. (2014). Praxis des Presserechts (2. Aufl.).
- Teichmann, C. (2007). Abschied von der absoluten Person der Zeitgeschichte. NJW, 1917.
- Engels, J. (2024). BeckOK UrhR/Engels KunstUrhG § § 22, 23.
- Fechner, F. (2020). Medienrecht (21. Aufl.).
- Fricke, J. (2022). KUG § 23. In W. Wandtke, & T. Bullinger (Hrsg.), KUG § 23.
- Götting, H. (2007). Anmerkung zu den BGH-Urteilen “Abgestuftes Schutzkonzept” und “Winterurlaub”. GRUR, 527-530.
- Grabenwarter, C. (2024). GG Art. 5 Abs.1. In Dürhig, Herzog, Scholz, & Grabenwarter (Hrsg.), GG Art. 5 Abs.1.
- Hager, J. (2007). 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 JA, 647.
- Lehr, M. (2012). Anmerkung zu Veröffentlichung von Fotos aus dem

- Privatleben Prominenter. GRUR, 745.
- Peifer, N. (2008). Öffentliches Recht – Grundrechte. Jus, 1107.
- Obergfell, G., & Herbort, R. (2021). In T. Ulmer–Eilfort, G. Obergfell, & R. Herbort (Hrsg.), Verlagsrecht (2. Aufl.).
- Ricker, H., & Weberling, G. (2012). Handbuch des Presserechts (6. Aufl.).
- Scherz, C. (2019).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 Soehring, P., & Hoene, C. (2019). Presserecht (6. Aufl.).
- Sprecht–Riemenschneider, U. (2022). KUG § 23. In Drier, Schulze, & Sprecht–Riemenschneider (Hrsg.), KUG § 23.
- Wenzel, K. E., & Ritter von Strobl–Albeg, J. (2018).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6. Aufl.).

■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in German Courts as a Criterion for Judging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Lee, Soo Jong

Ph.D., Executive Adviser,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Recent rulings have shown that domestic courts adopt legal principles similar to those of German courts; they resolve infringement cases on portrait rights based on the penalty of interest. However, the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adopted by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beneficial sentences according to detailed sentencing standard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omestic situation, when compar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n case law. In 2004, following criticism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veloped a new concept of gradual protection in the *Caroline von Hanover First* case. This idea replaced the judgment criterion of the portrait in the current affairs area in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with the concepts of current affairs figures, current affairs events, and the public's legitimate information interest. This meant that the center of gravity shifted from a uniform and uniform status criterion to the issue of balancing the public's information interest and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yardstick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ltimately, the great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he more the party's protected interest in knowing about it should recede behind the public's demand for information. Conversely, the low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the more important the party's personality rights.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hether the media seriously and objectively discusses matters of public interest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r merely satisfies readers' curiosity about the private affairs of celebrities emerges as a decisive criterion for resolving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Meanwhile, in determining the weight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the occasion of the repor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arty's photo was captured, and how the party was portrayed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f these specific sentencing standards for photo reports can be considered together through classification in the domestic litigation process, practical harmony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media and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personality rights may be achieved.

Keywords: portrait rights,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interest balance, public information interests, information value, balance criterion

[논문투고일 2025. 03. 03. 논문수정일 2025. 03. 25. 게재확정일 2025. 03. 28.]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2. 3.
개정 2017. 8. 23.
개정 2018. 8. 17.
개정 2020. 9. 1.
개정 2022. 4. 7.
개정 2022. 5. 4.
개정 2022. 6.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과 관련된 실무는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발간 주무부서가 담당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대체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편집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되거나, 편집위원이 논문의 저자·저자의 소속기관·심사위원과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논문의 작성·심사 및 발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의 구분) ①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논문: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해당호의 특집 주제에 응모한다고 명시한 논문

나. 연구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해당호의 특집 주제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의 일반에 관한 논문 및 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등

다. 특별논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타 학술대회 및 위원회 주관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된 주제논문 중 저자가 게재를 희망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문

- ② 기획논문에 응모하는 저자는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청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제안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기획논문의 경우, 주제 적합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의 주제를 미리 정하여 청탁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연구논문 및 특별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투고신청서(별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① 논문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 2.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 확인을 위해 투고하는 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려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에 있는 논문
 - 2. 기획논문과 연구논문에 이중 공모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
 - 3. 학문적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논문
 - 4. 동일 저자에 의해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 단, 논문의 저자는 선행 출판물과 투고 논문의 상이성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논문의 상이성 여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④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의 이름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회가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논문의 주제가 학자가 평가하기 힘든 실무적인 분야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실무가 중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투고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교체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투고자에게 중복된 심사위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⑦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심사절차)**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해당호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해당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예규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5단계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1. 현행 게재(A): 85점 이상
2. 부분 수정 후 게재(B): 75점 이상 85점 미만
3. 대폭 수정 후 당호 재심사(C): 65점 이상 75점 미만

- 4. 대폭 수정 후 차기호 재심사(D): 55점 이상 65점 미만
- 5. 게재 불가(E): 55점 미만
- ②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심사결과와 통보 및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에게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3)를 첨부한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②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의견 또는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맡길 수 있다.

제12조(논문의 수정) ①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및 제4호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기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논문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별로 ‘수정’ 또는 ‘수정불가’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수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정된 기획논문이 차기호에 제출된 경우, 해당 기획

논문이 차기호 기획주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구논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13조(게재 논문의 확정) ① 게재 논문은 발간 기한에 맞춰 심사 및 수정절차를 완료한 논문 중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게재를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지급하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게재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6년 10월 10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8월 2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0년 8월 12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4월 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5월 4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6월 21일)

[별지 1]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접 수 번 호		*위원회 기재
제안대상 주제		
성 명	국 문	
	영 문	
소속 및 직위		최종학위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자 택	(우편번호:)
연락처	근 무 처	
	휴대전화	
	전자메일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권 제○호
 기획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를 제안합니다.

제안일자 년 월 일

제 안 자 _____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1. 논문제목

가. 국문:

나. 영문:

2. 연구개요

3. 연구방법론

4. 연구내용

5. 관련 연구실적 목록

※ 응모 주제와 관련된 응모자의 연구실적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별지 3]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

투 고 자		투고일	
논문제목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세부 심사의견은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3. 이의제기 방법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

심사평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②	
심사위원 ③	



-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 Tel / Fax: (02) 397-3042 / (02) 397-3049
- E-Mail: journal@pac.or.kr
- Homepage: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7. 2. 3.

개정 2018. 8. 17.

개정 2019. 11. 29.

개정 2021. 12. 2.

개정 2022. 1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이하 “학술지 예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과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 및 해당 저작물의 심사·게재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또는 누락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별지 1)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연구자는 본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별지 2)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학술지 예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상관없이 학술지 예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원고작성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 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및 제3조 제3항의 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특히 연구자와의 특수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 저자표시 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대상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의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과 관련,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심의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제보자 또는 피검증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10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학술지 예규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와 함께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증인, 참고인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자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9년 11월 29일)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1년 12월 2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11월 25일)

[별지 1]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논문제목

본인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심사를 거쳐 게재된 적이 없는 저자 본인의 지적 창작물입합니다.
2. 본 논문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출판물을 표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증합니다.
3. 본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속 및 직함	연 락 처	서 명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제정일 2015. 4. 17.

개정일 2016. 3. 25.

개정일 2018. 8. 17.

개정일 2022. 5. 4.

1. 논문 작성 일반규칙

-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논문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스 ‘훈글’로 작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pac.jams.or.kr>)으로 제출한다.
- 나.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논문 편집은 A4 사이즈로 위아래 여백 각 35mm(머리말·꼬리말 0mm), 좌우여백 각 30mm, 글자체는 신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11, 줄 간격은 160%로 한다.
- 라. 본문의 각 문단은 한 자 들여쓰기, 참고문헌은 세 자 내어쓰기를 하고 양쪽 정렬을 한다. 단, 블록 인용, 표와 그림의 제목,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마. 논문은 국문 초록(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국문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순으로 한다. 부록의 첨부가 필요할 경우 부록의 위치는 참고 문헌과 영문 초록 사이로 한다.
- 바. 국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600~1200자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영문 초록은 300~500단어로 작성한다. ‘핵심어(영문 초록은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5개를 선정하여 초록 한 줄 아래 나열한다.
- 사. 지원받은 기금의 출처, 학위 논문 등과의 관련성, 저자의 이메일,

교신저자 등의 표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하여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아.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로 1.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사용한다.

2. 각주의 작성

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PA)의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문헌의 인용: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기한다.

(1) 본문 중 저자의 인용

- 국내문헌: 성과이름(출판연도)
- 동양문헌: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성(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예 김수철(2014)은 ...라고 지적했다.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2013)는 ...을 주장하였다.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라고 정의했다.

(2) 저자명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

- 국내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출판연도)
- 동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예) …을 지적한다(김수철, 2014).
- …을 주장하였다(内藤正中, 2013).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2012).

(3) 재인용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우선 표기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표기

- 예) 김수철(2014: 박희수, 2012 재인용)은 … 라고 지적했다.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 이희승, 2012 재인용).

(4) 직접 인용

- 단문의 인용: 인용문은 따옴표(“ ”)로 표시하고, 인용문 끝에 쪽수를 괄호로 쓴다. 번역서는 번역서 쪽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 예) 김수철(2014)은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의 변형이 중요하다”(12쪽)고 주장했다.
-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미디어는 … ”(132쪽)라고 주장했다.

- 장문의 인용: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내어쓰기 한다. 블록의 끝에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예) 분석대상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한수도, 2014, 123쪽).

(5)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본문 중 저자의 인용: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기재
- 저자명이 본문 중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김수철과 박희수(2014)는 …라고 지적했다.

맥루언과 풀리처(McLuhan & Pulitzer, 1911)는 …라고 주장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 2014).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 Pulitzer, 1995).

○ 세 명 이상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저자가 세 명 이상 여섯 명 미만인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는 두 번째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과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또는 ‘외’)이나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철, 박희수, 그리고 최수연(2014)은 …라고 지적했다. 김수철 등은 후속 연구에서 … 주목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최수연, 2014). …라고 한다(김수철 등, 2014).

맥루언, 풀리처, 그리고 허스트(McLuhan, Pulitzer, & Hearst, 1910)는 …라고 주장했다. 맥루언 등은 … 한다고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Pulitzer, & Hearst, 1910). 또한 …도 지적되었다(McLuhan et al., 1910).

(6) 두 편 이상 연구의 인용

○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인용을 표기할 경우, 국내문헌(저자명

의 가나다 순), 동양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문헌(저자명의 알파벳 순) 순으로 배열하고, 각 연구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명은 한 번만 표기한다. 출판연도가 동일할 경우는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관련 연구들(김수철, 2010; 박희수, 2013; 内藤正中, 2010; Hearst, 1910; Pulitzer, 1911)은 이러한 결과를 …
최근 연구들(김수철·박희수, 2012, 2013)은 …
이러한 연구(김수철, 2011a, 2011b)는 …

3. 참고문헌의 작성

가. 일반규정

-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3) 제1저자의 단독연구와 공동연구가 참고문헌에 함께 포함될 경우, 단독연구를 앞에 배열한다.
- (4) 동일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에 출판된 문헌이 두 편 이상일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5)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저자의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Sur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

자는 가운데점(·)으로 구분한다. 저자가 다수인 서양문헌의 경우는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는 ‘&’로 구분한다.

나. 문헌의 종류별 표기

(1) 단행본

저자명 (출판연도). 단행본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저작물 제목은 꺾쇠(< >) 안에 표기하고,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되,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편집서일 경우, 국내 편집서는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는 ‘(Ed.)’ 또는 ‘(Eds.)’를 표기한다. 판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 또는 (2th ed.) 등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미국은 주 포함)와 출판사명을 기재하고, 둘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예 김수철 (2015). <디지털시대>. 서울: 책세상.

박희수 (편) (2013). <세계의 언론법>. 부산: 책고을.

Hearst, W. R., Pulitzer, J., & McLuhan, H. M. (Eds.) (1950). *History of privacy: Arising issues of privacy in public spac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최수연 (2013). <대량 조정처리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조사연구 2015-00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쪽수. 순으로 하되, 국내 학술지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쪽이 여러 면에 걸칠 경우 붙임(-)으로 표기한다. 서양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주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권수 뒤 괄호 안에 기재하되,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호로 이어지는 연속번

호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수를 적지 않는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Hearst, W. R. (1950).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Human Rights*, 18(3), 123-142.

(3)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장의 저자명 (출판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은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 (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Surname)을 기재한다. 마지막 편집자 성 뒤에 ‘(Ed.)’ 또는 ‘(Eds.)’를 쓴다. 이때 국내 편집서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서양 편집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김수철 (2013). 소송의 사회적 비용과 언론중재제도. 박희수·최수연 (편). <미디어법제의 미래> (123-142쪽). 서울: 새미디어.

Hearst, W. R. (1950).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cy. In J. Pulitzer, & H. M. McLuhan (Eds.), *Privacy and Big Data: Surveillance or Public good?* (pp. 703-732). Trenton, NJ: Ablex.

(4) 번역서 또는 편역서

원저자 (원저 출판연도). 원저 제목(출판본). 역자 (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고,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한다.

예 McLuhan, H. M. (2013). *Remedies for damage to reputation* (3rd ed.). 김수철 (역) (2014). <명예의 훼손과 구제>. 서울: 서울출판사.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명 (발표연도, 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발표 도시명(:발표 장

소 표기 가능).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명은 꺾쇠 안에 기재한다.

예 최수연 (2014, 8월).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대전: 언론연구소.

(6) 학위논문

국내 대학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논문제목>. 학위 수여 대학과 학위명. 순으로 한다. 서양 대학의 경우, 학위명, 수여 대학, 국가명(미국은 도시 및 주)을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미출판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명 뒤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를 표기한다.

예 박희수 (2015). <부정적 보도의 강도가 조정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McLuhan, H. M. (1995).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complaints on med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7) 신문, 잡지, 또는 뉴스레터

출판일자가 명확한 경우 저자명 뒤에 출판년, 월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기사는 게재면을 기재하고, 여러 면에 걸쳐 실린 경우는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특정인의 기고문은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한다. 익명의 기고자는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작성자를 대신한다.

예 한국신문 (2014, 2, 28). 미디어 콘텐츠 투자 늘었다. 3면, 4면.

최수연 (2013, 3, 4). 신생 미디어 플랫폼, 부작용 대비해야. <한국신문>, 11면.

McLuhan, H. M. (2013, July 5). Interactive storytelling and multimedia. *The New York Times*, pp. B1, B5.

신생 미디어 플랫폼 (2013, 3, 4). <한국신문>, 11면.

다. 온라인 자료 표기

(1) 정기간행물

학술논문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중 하나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주소(URL:)를 제시한다(외국문헌의 경우 Retrieved from으로 표기). 인쇄본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권, 호수 기입 없이 간행물명과 URL만 제시한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전자매체본].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URL: <http://www.pressandrights.go.kr/reference/journal.jsp>

Achankeng, F (2014).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On-line].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3(2), 11-38.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2) 비정기간행물

저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표기한다.

예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n. d.*).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3) 연구보고서 또는 세미나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와 같이 문서 제공자와 문서 작성자가 구분되는 경우는 기관명을 먼저 기재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쓰고자 할 경우에는 웹 사이트에 문서가 게재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의 이름을 표기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최수진·김정섭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4-19).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재한다. 온라인상에서 읽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표기한다.

☞ 통계청 (2013). 정기간행물 연도별 증감현황.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bCont

금준경 (2015, 1, 14).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클러스터링? 검색기사 막기 힘들 것”.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8>

라. 법률 자료의 표기

(1) 판례

우리 판례는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미국판례는 사건이름, 판례집 권수, 판례집 이름, 해당 판례의 첫 페이지, 판결 연도 순으로 한다.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판례명(연도)’, 또는 ‘(판례명, 연도)’로 표기하고, 외국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대법원, 2013. 2. 14.)

Brown v. Board of Educ., 347 U.S. 483 (1954).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2) 법령

우리 법률은 법률명 다음에 법률시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미국의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 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시행연도)’로 기재한다. 법률개정안은 개정 법률안명 다음에 대표발의자와 발의일자를 기재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재영, 2015. 1. 30.).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 표와 그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목을 붙이고, 표 또는 그림의 상단에 제시한다.

나.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꺾쇠 안에 표기(예시: <표 1> 참조.) 한다.

다.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는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편집위원 강승식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은정 ■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상윤모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심미선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ISSN 2465-9207

2025년 제11권 제1호

2025년 4월 15일 발행

편집·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인쇄 ■ 도서출판 관악사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 연구센터

[전화] 02.397.3041~4

[이메일] journal@pac.or.kr

-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본 학술지의 무단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pac.or.kr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